R 906 | 2020. 10. |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How to Advanc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마상진 안 석 김유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06 | 2020. 10. |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How to Advanc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마상진 안 석 김유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마상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안 석 | 부연구위원 | 전문가 자문, 외국 및 지역 사례조사
김유나 | 연구원 | 농가 및 농업법인 설문조사 및 분석, 외국 및 지역 사례조사

김정호 | (사)환경농업연구원장 |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과정과 시사점 고찰
김현일·김원경 | 지역농업네트워크 | 농업법인 지역 사례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농업법인 설문조사

연구보고 R906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동양문화인쇄포럼
I S B N | 979-11-6149-423-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농업법인은 기존 가족농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1990년대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정책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 왔다. 그에 따라 6만여 개가 넘는 농업법인이 설립되는 양적인 성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양적 성장 이면에 부실 법인 문제와 더불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농업법인 제도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변천 과정과 현재의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변화된 농업여건하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분석된 농업법인 관련 정보와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농업법인 관련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많은 이의 도움이 있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유원상 과장, 이종희 사무관,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송인호 사무총장, 이영 사무국장, 대교회계법인 김태용 회계사, 학사농장 강용 대표, 흙살림 이태근 회장, 지역농업네트워크 김현일·김원경 지사장, 전남·경남의 지자체 농업법인 담당자, 지방 법원 등기소 담당자와 연구원 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농업법인 연구의 선구자로서 소중한 원고와 더불어 연구 전반에 대해 자문해 주신 (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업법인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제도 및 지원 정책의 변천 과정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의 농업법인 제도 관련 선행연구와 최근 정책 자료를 분석하였다.

○ 농업법인 현황과 경영 실태, 재무지표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농업법인조사(2000~2018), 농업총조사(2000~2015),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포락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농업법인의 효율성과 효율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의 농업법인 재무 현황(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관련 문제점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농가 및 농업법인 대상의 설문조사, 지역 농업법인에 대한 사례조사를 하였다. 또한, 시사점 도출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법인 관련 연구자, 법률 및 세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담당자, 지방법원 등기소 관계자, 농업경영컨설턴트, 농업법인 유관단체 관계자 등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 결과

○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농업법인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는 부실 법인이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늘어났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형태 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법인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 위주에서 농업회사법인 위주로 변화하였으며, 사업 유형은 생산 법인 위주에서 가공·유통 등 생산 외 법인 위주로 변화하였다. 운영 주체별로는 대표자 단독 운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인당 출자자 수, 종사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출자자 중 농업인 비중은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법인당 출자금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감소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증가하고 있었다.

○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를 보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하였다. 농업

법인의 재무지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는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 성장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 농업법인의 효율성 분석 결과, 과반수 농업법인이 효율성 0.5 미만이었고, 60%의 농업법인은 투입 증가에 따라 산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규모수익체증의 상황으로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결과는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과 더불어 농업인의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농가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증가 추세이다. 농가 설문조사 결과, 현재 미참여 농가 중에 과반은 참여 의지가 있었는데, 특히 중규모의 영농 규모를 가지고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청년 농가를 중심으로 참여 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농가들은 농업법인 설립·참여 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신감 부족, 함께할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기존 법인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참여에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 농업법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지원 정책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전문인력 지원 채용 및 활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고, 이 밖에도 신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농업 생산 법인과 생산외 법인에 대한 차별적 지원, 농업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미활동 법인에 대한 정리 등의 요구가 있었다.

○ 국외 농업법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 일본은 가계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농가의 법인경영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농 확장 형태로서의 지역단위 공동농업조직을 활성화하여 영농 후계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사회 유지에 힘쓰고 있었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들 경영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농업법인에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구를 두어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뿐만 아니라 조세 문제, 법률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경영 다각화를 위해 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었다.

정책 제언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농업법인"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기반하여 농업구조 정책 및 농촌 정책에 농업법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농업법인만의 구체적인 육성 목표와 육성 계획을 수립하며, 질적인 내실화와 더불어 양적 내실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한 관리체계와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ABSTRACT

How to Advanc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Background and Purpose

○ Since the introduc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1990,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improv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rough collaborative and corporate management. As a result, the number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has increased. However, many problems have emerged, such as an increase in insolvent businesses, management of out-of-purpose businesses, and illegal reception of grants. Against this backdrop, the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update regulations and enhance policy support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sustainable progres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needs of the time.

○ This study reviews changes in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and support policies and inspects current issues. It also analyzes the stat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their management. By inquiring into demand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and policies and exploring other countries' systems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we inte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response to changes in rural conditions.

Research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s, statistical data analysis, surveys,

case studies, and experts‘ advice. We reviewed prior literature to inspect Korea’s system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support policies and analyzed policy data on other countries’ systems, including France, German, and Japan.

○ Regarding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their management, including financial statements, we looked into Statistics Korea‘s various surveys: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urvey (2000-2018), the Census of Agriculture (2000-2015),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and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We also used agricultural corporations’ financial statements (2018) collected by Korea Enterprise Data to analyze agricultural corporations‘ efficiency and factors to determine efficiency based on statistical methods, such as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To analyze the current system’s problems and demands for improvement, we surveyed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studied local agricultural corporation cases. Besides, we depended on advice from related researchers, legal and tax experts, local governments’ officials in charg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court registry offices, farm management consultants, and associated organizations.

Key Findings

○ As the procedure to establish agricultural corporations has become

relaxed with an increase in supports, including tax benefits and favors in public programs, problems have increased: insolvent firms that are not in operation after established for purposes to gain assistance, firms that steal grants, and firms operating businesses not permitted for registration. As there is no clear line between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mpanies, it is hard to implement differentiated policies. Besides, there are complaints about insufficient management support for the firms.

○ The organizational typ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has transformed from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to agricultural companies. The business type has changed from production to non-production, includ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Regarding the management entity type, the number of corporations owned by a single manager has increased,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investors and employees per firm. As to the ratio of farmers to investors, its reduction is outstanding in agricultural companies. The investment collected per firm has decreased in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while it has risen in agricultural companies.

○ As for firms' management state, there has been no change in sizes in assets, liabilities, and capital per firm. Their sales have increased by 2.2% per year since 2000, with a 1% increase per year in operating income. Their financial statements (stability,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show no outstanding gap in stability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t lower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levels.

○ The result of efficiency analysis indicates that half of firms hold less than 0.5 in terms of efficiency. 60% of firms show potentials for hig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requiring more active investments. The analysis of factors to determine efficiency implies that it is critical to focus on assistance before growing to a particular volume, increasing farmers' participation, attraction of external investment, and youth workforce.

○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has grown, despite the continuous reduction in farm households. The survey result targeting farm families indicates that half of the non-participating farmers are willing to participate. Notably, young farmers owning mid-size businesses with plans to expand their business afterward are eager to participate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However, farm households are reluctant to establish or participate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due to insufficient knowledge on merits in establishment or participation, lack of confidence, lack of potential pools for partnership, complicated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and lack of existing firms' openness.

○ Regarding support policies, farmers' opinions in the survey show intense demands for integrated assistance to tackle management problems and hire workers with expertise. Besides, farmers need support for new technology development, training, consulting, differentiated approaches to agricultural production and non-production

firms, tight restrictions against companies operating out-of-purpose businesses, the attraction of external investments to agricultural firms, and non-performing business closure.

○ Our research on other countries' policy trends indicates that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encourage farm households to set up corporations to separate business management from farm families. They also try to promote local joint farming organizations in an extended form of farm families to respond to the absence of young farmers for succession and maintain rural communities. They also tightly manage standards for farming production firms and offer differentiated assistance to the firms. They have agencies to support and supervise firms to provide various consulting services for business setup/ operation, taxation, and legal issues. Lastly, they encourage non-farmers to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diversify business management.

Policy Suggestions

○ Agricultural corporations should work as a driving force to raise rural sustainability and lead innovation in response to rapid changes in the farming environment.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has to re-define the statu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for its policies on the agricultural structure and rural communities based on various merits through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t has to establish specific targets and plans to nurture agricultural corporations. It should achieve

its quantitative goals and solidify the system. It has to encourage farm households to set up individual firms or local business entities to establish joint corporations to realize economies of scale. The government should also attract next-generation farmers through farming business start-ups and implement nurturing plans differentiated for production and non-production firms. It has to set up an integrated platform to deal with agricultural firms' complaints, tightly supervise their establishment/ operation, and enhance regional governance. Through the endeavors, it has to foster agricultural corporations to achieve their business goals and contribute to their communities.

Researchers: Ma Sangjin, An Soek, Kim Yuna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0.
E-mail address: msj@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 내용과 방법 ····· 17

제2장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 **23**

1. 농업법인 제도 ····· 23
2. 농업법인 지원 정책 ····· 36
3. 농업법인 제도 및 지원 정책의 문제점 ····· 44
4. 요약 및 시사점 ····· 50

제3장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 ····· **55**

1. 농업법인 현황 ····· 55
2. 농업법인 경영 실태와 재무지표 ····· 64
3. 농업법인의 효율성과 결정 요인 ····· 73
4. 요약 및 시사점 ····· 79

제4장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요구 ····· **83**

1.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와 요구 ····· 83
2.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요구 ····· 92
3. 요약 및 시사점 ····· 109

제5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 **115**

1. 프랑스 ····· 115
2. 독일 ····· 121

3. 일본 ····· 130
4. 주요 시사점 ····· 144

제6장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 ····· 149

1. 농업법인 내실화의 방향 ····· 149
2. 세부 추진과제 ····· 151

부록

1.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실태 조사지 ····· 193
2. 농업법인 경영 실태 조사지 ····· 197

참고문헌 ····· 201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가 및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 19

제2장

〈표 2-1〉 농업법인 제도 발족의 경과 ····· 24
〈표 2-2〉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 ····· 26
〈표 2-3〉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정 이후 농업법인 관련 규정 개정 경과 ····· 29
〈표 2-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 32
〈표 2-5〉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조치 ····· 36
〈표 2-6〉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추진 경과(1990~2016년) ····· 39
〈표 2-7〉 농업법인 지원 정책 현황 ····· 40
〈표 2-8〉 농업법인 주요 관련 조세 감면 ····· 43
〈표 2-9〉 농업법인 운영 현황 ····· 45

제3장

〈표 3-1〉 농업법인 조직 형태 및 사업 분야별 현황 ····· 56
〈표 3-2〉 농업법인 출자자 현황 ····· 58
〈표 3-3〉 농업법인 출자금 현황 ····· 60
〈표 3-4〉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 61
〈표 3-5〉 생산 농업법인 현황 ····· 63
〈표 3-6〉 농업법인의 경지 및 사육두수 ····· 64
〈표 3-7〉 농업법인 자산·부채·자본 현황 ····· 66
〈표 3-8〉 농업법인 매출·영업이익 현황 ····· 68
〈표 3-9〉 농업법인 효율성 분석 투입·산출 요소 기본통계 ····· 75
〈표 3-10〉 농업법인 효율성 및 규모경제성 현황 ····· 76
〈표 3-11〉 농업법인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결과 ····· 78

제4장

〈표 4-1〉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현황 ····· 84
〈표 4-2〉 농가 특성별 농업법인 참여 여부 ····· 85
〈표 4-3〉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농업법인 활동 목적 ····· 86
〈표 4-4〉 농업법인 참여 여부에 따른 농가의 주요 경영 현황 차이 ····· 89
〈표 4-5〉 농가 주요 특성별 농업법인 참여 의향 ····· 91
〈표 4-6〉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 ····· 93
〈표 4-7〉 농업법인의 설립 계기가 되었던 정부 지원사업 및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 ····· 95
〈표 4-8〉 농업법인의 회사 형태 변경 내용 및 이유 ····· 96
〈표 4-9〉 농업법인의 출자자 구성 ····· 98
〈표 4-10〉 농업법인의 경영주 특성 및 관련자 경영 참여 활동 빈도와 회계관리 현황 ····· 99
〈표 4-11〉 농업법인의 성과와 지역 기여 ····· 101
〈표 4-12〉 농업법인 성과 관련 변인 분석 ····· 102
〈표 4-13〉 농업법인의 경영 애로사항 ····· 106
〈표 4-14〉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분야 ····· 107
〈표 4-15〉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 109

제5장

〈표 5-1〉 프랑스의 주요 농업법인 유형 비교 ····· 118
〈표 5-2〉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별 현황 ····· 119
〈표 5-3〉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별 농지, 생산액 현황(2016년 기준) ····· 120
〈표 5-4〉 독일 농업 조직경영체 유형 ····· 125
〈표 5-5〉 독일의 농업 관련 조세특례 ····· 126
〈표 5-6〉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 127
〈표 5-7〉 독일의 농업경영체별 경지 규모 ····· 128
〈표 5-8〉 독일 농업경영체별 표준 산출 ····· 129
〈표 5-9〉 일본의 농업법인 주요 법적 형태별 특징 ····· 135
〈표 5-10〉 일본의 조직 형태별 농업경영체 변화 ····· 138

〈표 5-11〉 일본 농업경영체 유형별 경지면적과 판매액 규모(2015년 기준) ····· 142

제6장

〈표 6-1〉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경영체, 지역, 국가 차원의 기대 성과 ····· 154
〈표 6-2〉 농업인의 농가 단위 법인화·활성화에 대한 태도 ····· 161
〈표 6-3〉 농업인의 마을 단위 법인 활성화에 대한 태도 ····· 165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 20

제2장

〈그림 2-1〉 농업법인의 설립 및 등록·관리 ····· 34

제3장

〈그림 3-1〉 농업법인의 운영 주체 ····· 57
〈그림 3-2〉 농업법인 출자자 중 농업인 비율 ····· 59
〈그림 3-3〉 농업법인 종사자 연령분포 변화 ····· 62
〈그림 3-4〉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 65
〈그림 3-5〉 농업법인 조직 형태별 자산·부채(5년 이동평균) ····· 67
〈그림 3-6〉 농업법인 조직 형태별 매출·영업이익(5년 이동평균) ····· 69
〈그림 3-7〉 농업법인 종사자·매출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70
〈그림 3-8〉 농업법인 부채비율 변화(5년 이동평균) ····· 71
〈그림 3-9〉 농업법인 영업이익률 변화(5년 이동평균) ····· 71
〈그림 3-10〉 농업법인 매출액 증가율(5년 이동평균) ····· 72
〈그림 3-11〉 농업법인 자산 증가율(5년 이동평균) ····· 73

제4장

〈그림 4-1〉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매출 비중 및 농업법인 활동 내용 ····· 87
〈그림 4-2〉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농업법인의 성과와 지역 기여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 88
〈그림 4-3〉 농업인의 농업법인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찬반 ····· 90
〈그림 4-4〉 농업법인 불참 농가의 불참 이유 ····· 91
〈그림 4-5〉 농업법인의 정부 지원사업 수혜 정도와 내용 ····· 103
〈그림 4-6〉 농업법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 ····· 105

〈그림 4-7〉 농업법인의 조세제도 개선 필요 분야 ····· 108

제5장

〈그림 5-1〉 일본 농업법인 제도의 변화 ····· 133
〈그림 5-2〉 일본 농업법인 유형 ····· 134
〈그림 5-3〉 일본 농지소유적격법인 추이 ····· 139
〈그림 5-4〉 일본의 마을영농 현황 ····· 140
〈그림 5-5〉 일본의 농업 분야 기업 진출 동향 ····· 141

제6장

〈그림 6-1〉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추진과제 ····· 152
〈그림 6-2〉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158
〈그림 6-3〉 농업법인을 통한 농가·지역 조직화와 창업 경로 ····· 163
〈그림 6-4〉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 유형화 ····· 172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어느 나라나 산업화가 진전되며, 농업 분야는 고령화, 인구 공동화, 노동력 부족,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한 시장 실패(소규모·영세성)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고, 1980년대 말 농산물 시장개방 상황이 도래하면서, 기존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영체제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조직의 활성화로 보고, 기존 가족농을 보완할 수 있는 농업법인 경영체 설립을 장려하였다.

그동안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다. 농업법인 제도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세제상의 혜택 제공(1990년), 농업법인의 생산자 단체 규정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1994년), 농업법인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 경영자금 신설(1996년) 등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농업법인 경영 개선을 위

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농기업경영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강화, 사업 규모 확대 및 사업 영역 다각화 지원, 유망 수출 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편 및 관련 지원 사업 확대는 농업법인의 양적 확대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되지 않는 부실 농업법인이 증가하고(농림축산식품부 2016, 2019a), 당초 농업법인에 허락되지 않은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감사원 2016; 한겨레 2016; 한국일보 2016; 나채준 외 2017), 일부에서는 농업법인을 농업 관련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인식하기까지 하고 있다(국민일보 2020; KBS 2020).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족농을 보완하는 농업경영체라는 설립 당시 취지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급변하는 농업·농촌 여건하에 어떻게 건전하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변천 과정과 현재의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변화된 농업여건하에서 농업법인 제도[1]를 내실화[2]하기 위한 개

1) 제도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말한다(국립국어원 2020).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제도를 농업법인 관련 법률제도, 정책 지원제도, 조세 지원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제도를 농업법인 관련 법률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연구 제목, 연구 목적 등에서는 광의의 의미를, 본문 2장, 5장, 6장에서는 법률, 정책 지원, 조세 지원 등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2) 내실화란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짐”(국립국어원 2020)으로,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의 내실화를 양적 성장과 더불어 농가 단위의 과학 경영(가계와 경영의 분리) 및 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지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질적 성장의 관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 변천 과정과 현황을 검토한다.

둘째,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개선 요구를 도출한다.

넷째, 외국 농업법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농업법인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농업법인 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 관련 문제점, 농업법인 발전 방안 연구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1. 농가 조직화 및 농업법인 참여

김동신 외(2016)는 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농업법인 참여 농업인이 불참 농업인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영농 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도 많지만, 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영농 규모가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업인의 적극적인 농업법인의 참여를 유도하되 영농 규모를 고려한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준상 외(2017)는 농촌 관광 마을 대상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에서 조직 형태와 주민 참여율에 따른 리더십과 경영 역량을 분석한 결과, 주민 참여율보다는 마을 조직 형태에 따라 경영 역량과 매출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일반 마을사업과 달리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강조

되므로, 마을 주민의 무조건적인 참여보다는 경영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로 함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을회, 작목반과 같은 비법인에 비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인 형태의 마을 조직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다고 하였다. 법인은 목적과 비전이 명확하고 사업 참여 시 일정금액을 출자하기에 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의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익수(2018)는 단양군 농가의 농업생산자 조직 참여 관련 요인 분석 연구에서 농가의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생산자 조직 참여 확률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완만하게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품목에 따라서 농가의 조직화 참여가 차이가 있었는데,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축산 등의 환금성 작물 농가에서 조직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 겸업소득, 연령, 학력 등(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큰 2종 겸업농가보다는 1종 겸업농의 생산자 조직 참여가 높고, 연령대는 일정 수준까지 높을수록(연령대 제곱은 음의 값), 학력이 높을수록 생산자 조직 참여가 높음)에 따라 농가의 생산자 조직 참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의식·정호근(2008)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농업경영 조직화의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리더를 육성해야 하며, 농업 시설·기계 등 자원이 유휴화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자원 소유자의 기회비용을 보장하고, 전업농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농지 임대차 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을영농조직 활성화와 관련하여서 전업농 육성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생산 주체 및 거래 주체로서 위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2. 농업법인 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박문호·전익수(2000)는 농업법인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수익성이 높은 경영과 낮은 경영을 비교하여 경영성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농업법인들의 전년 대비 수익성은 낮아졌으나, 안정성, 성장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 성공 요인으로는 매출 증대보다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 지출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경영 부진 요인으로는 판로 불안정으로 투하자본에 비해 매출실적이 저조한 경영,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고정자산 취득 경영 등 고정 비용과 금융 비용이 높은 것을 지목하였다.

정양헌 외(2007)는 농업법인의 환경 요인, 정부 지원과 균형 성과 간의 상관 관계 분석 연구에서 시장환경 요인과 재무성과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호의적인 시장상황에서 균형성과가 높은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환경과 균형성과는 모든 요인들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수록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권용덕 외(2008)는 농업법인에 대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분석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단기부채에 대한 자금압박이 빠르게 도래할 위험이 있으며, 위험의 장기화는 농업법인의 성장성 정체 내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농업법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금 부족(61.1%), 경영 및 관리 능력 부족(14.8%), 출자 및 공동자산 부족(9.3%), 조합원 간의 의견 불일치(5.6%) 순으로 많다고 하였다. 농업법인 대부분이 자본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운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자금의 비효율적 이용을 차단하고 운영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대책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실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향상이 시급하다 하였다. 김일곤(2019)은 농업법인의 2000~2017년도 경영 실태 분석 결과, 농업법인 안정성 관련 지표(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가 개선되고 있고, 수익성 관련 지표(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와 성장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호(2010)는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하고(기술효율성 0.78, 순수기술효율성 0.84, 규모효율성 0.93), Tobit 분석을 통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자본 규모가 클수록,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하면

서, 시설 개선 등의 신규 투자보다는 운영 개선을 통한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호 외(2011)는 농업 생산 법인의 경영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농업 생산 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18.06%에 불과하며 효율성 값이 0.5 미만인 비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 30.92%, 순수기술효율성 18.93%, 규모 효율성 3.32%로, 농업 생산 법인의 상당수가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77.9%의 농업 생산 법인이 규모 증가에 따라 수익(return)이 증가할 수 있는 상태로 생산요소 투입을 증대시켜 기술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술효율성은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이, 자본 규모가 클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높다고 보고하였다. 노미현(2014)은 외부감사 대상 농업법인에 대한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경영효율성 분석 연구에서 농업법인의 기술효율성은 0.82, 순수기술효율성은 0.88, 규모효율성은 0.79로 양계, 작물재배, 양돈 순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하였다. 조가옥 외(2015)는 전북지역 유통 관련 농업회사법인 대상 효율성 분석 연구에서 기술효율성 0.86, 순수기술효율성은 0.94, 규모효율성은 0.92로, 규모수익체증 법인이 40.2%, 불변이 27.8%, 감소가 32.0%라고 보고하였다.

박문호·임지은(2014)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결과,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는 법인의 생애주기 7～10년 사이에 성장추세에서 하락세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성장성 지표는 초기에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다가 5년차 이후에는 저조한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경영성과로서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사자수, 매출액, 정부융자금, 법인 형태(영농조합법인인 것), 사업 분야(가공유통업인 것) 등이었다.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을 생산기술에서는 노동력 확보 문제, 제품개발, 친환경기술 등이, 유통·판매에서는 판로 확보 애로, 수익성 저하, 시장불황, 불공정 거래 등이,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운영자금 부족, 조직운영 문제, 지역과의 갈등, 자금관리 미숙 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임인섭·이상래(2017)는 축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부채비율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부채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ROA)과 매출액순이익률(ROS) 모두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축산업 농업법인은 무리

한 부채 사용을 줄이고, 기술개발 보급 등에 의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매출 및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우석 외(2017)는 농업법인의 적정부채비율 연구에서, 자기자본 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을 적정부채비율(optimal debt ratio)이라고 정의하면서, 약 138% 정도의 부채비율이 농업법인 전체의 자기자본 순영업이익률을 제고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부채비율이 적정부채비율에 비해 높게(191%)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김일곤(2019)은 농업법인의 안정성 및 성장성과 경영성과의 관계 분석 결과 부채비율은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성장성(총자산증가율)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농업법인의 부채가 외형적 성장에는 기여하였지만 경영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유동성과 세금 혜택과 같은 경영 내실을 기하는 정책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외부감사 대상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적정부채 비율을 계산한 결과 148%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였다.

정재원 외(2018)는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영향 요인 분석 연구에서 농업법인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총자산 순이익률(ROA)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감소하는 체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농업법인의 운영기간과 상근 종사자 수 역시 ROA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졌다. 또한 사업 분야로 생산과 가공·유통을 병행하는 경우 ROA 값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2.3. 농업법인 제도와 정책 지원 문제점

김수석·박석두(2006)는 농업법인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② 농업법인 정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호하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농업생산자 대상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

부문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규정상 농업법인이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농업법인이 유통 분야 등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경쟁·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④ 설립 등기된 농업법인을 관리하는 기관 및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업법인에 대한 주 지원인 세제 지원도 한시적이다.

정양헌·이충섭(2006)은 농업법인의 환경 특성과 정부 지원의 균형성과(BSC)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러 균형성과 중에 재무 성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정부 지원이 단기적 재무 성과에만 집중되어, 농업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양헌 외(2007)는 농업법인의 환경 요인, 정부 지원과 균형 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서 농업법인은 정부 지원에 대하여 개별항목 중심의 직접 지원보다는 농업법인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차원의 지원 및 서비스를 높게 평가하기에, 단기적인 재무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내부 역량 강화와 성장성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농업법인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용덕 외(2008)는 '경남지역 농업법인의 육성방안' 연구에서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농업생산과 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영역 확대가 농업법인 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개별경영에 비해 정책사업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기가 용이하며, 지원금액 규모가 커 사업 지원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박규동(2012)은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평가 연구에서 농업법인 대상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사업이 수혜 법인의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에 대하여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많다고 보고하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들이 농업법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

라 농업법인의 '수익 없는 생존'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기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이 본 취지인 우량기업 육성에 사용되지 않고 한계기업의 생존에만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금태환 외(2018)는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농업법인 제도 쟁점을 분석하면서,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인적 조직체 중 약 50%가 영세하거나 부실하고,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농업법인의 법적 정의 명확화를 통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이나 기본법상 농업 분야 협동조합도 포함되도록 하고, 공정거래 쟁점에 대한 대응으로 규모화와 관련된 공정거래 이슈 정비를 통해 '선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농업법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동규 외(2018)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연구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타당성(정부 개입의 정당성, 지원 수단의 적절성, 지원 규모의 적정성,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및 효과성(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대한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을 평가하였다. 타당성 분석 결과 시장 실패 발생(인구 및 농업 구조로 인한 규모의 경제 미실현, 농어업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 기반 미흡)에 따라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있고, 조세특례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규제 정책에 비해 비효율성 우려가 크지 않아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대한 효과(미시 분석)와 관련하여 고소득농가의 세금 경감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소득격차는 농업 부문 내에서는 미미하게 확대, 전 가구 대상으로는 미세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거시 분석)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각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반영한 소득계층별·소비자별 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보여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중립적이라 하였다.

장민기(2019)는 농림사업이 '개별농가가 아닌 조직·법인 우선' 지원 원칙으로 진행되면서 지원 자금 수취를 위한 명목상의 법인들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낳았

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규제 완화 조치를 거치면서 현재 농업법인은 농업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농업 경영을 보완하는 별도의 경영체로서, 자재 공급, 농산물 가공·유통, 마케팅 등 농산업 관련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주체로 편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2.4. 농업법인 발전 방안

김수석·박석두(2006)는 농업법인의 발전과 관련하여 ① 법인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법인관리기구로 지정하고,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법인은 강제 해산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며, ② 농업법인을 농업 생산 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농업 생산 법인은 한편으로는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생산경영체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농적 소규모 농업법인으로 육성하고, 농업서비스법인은 조직 형태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단일화하고, 기존 업무영역 및 비농업인 제한 규정, 농지 소유 규정 등을 변경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없지만, 비농업 부문의 투자와 경영은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덕 외(2008)는 농업법인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농업법인 제도 설립 취지인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 부문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서비스 부분에 치중함으로써 법인이 지역농업에서 중요한 생산 기반이자 도시자본을 유입하는 투자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농업법인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생산법인과 서비스법인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재정적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자기자본 비율 증대, 타인자본 유치 활성화, 운영자금 지원, 세무 또는 회계 분야 대책(경영 투명성 제고, 재무제표와 결산서 작성 필수, 관련 전문인력 충원)을 제안하였다. 법인의 경영 및 기술 능력 제고와 관련하여 경영 및 상담지도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 경영관리 프로그램,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축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역농협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제안하였다.

김정호(2008)는 가족형 법인과 지역농업법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농에 기업적 경영방식 도입, 경영마인드 함양, 과학적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고, 영농후계자(여성 무급가족종사자)와 경영주가 각각 사원과 사장 신분으로 고용계약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향상 → 자금 융통 원활 → 경영 규모 확장 및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농업을 하나의 경영 단위로 파악하고 경영관리의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산간 지역은 농업 기반 정보도 미흡하여 농지가 황폐화하고 농촌 사회가 활력을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 사업체(예: 농업공사)를 적극 검토(일본 사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호·최은아(2015)는 농업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재정비(설립 후 5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부실 및 편법 운영되는 법인 시정 혹은 해산 조치, 취득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법인 소유의 농지 처분 조치), 운영실적이 저조한 농업법인에 대해 경영 지도,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한 운영관리 지도, 우수 농업법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농업법인 사후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세무 신고에 대한 복식부기 기장 원칙 등의 비현실적인 제도 개선, 농업법인의 필요성과 취지(협업적 경영), 농업법인 운영 교육 등에 대한 홍보 등을 강조하였다.

서종석 외(2017)는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사업 범위 등과 관련한 제안을 하였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선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기전산자료와 경영체 DB를 연결하여 실태조사 사전 안내 등에 활용, 직접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실태조사 실시요령을 구체화,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소재지 불명이나 실태조사 항목 미기재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관련해서는 유망 산업인 곤충산업을 농

업법인 사업 범위 중 '농업의 경영(생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농산물 유통'의 정의를 수정하여 농업법인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고, 태양에너지사업은 다른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있어 농업법인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중복수혜 가능성이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기타바이오에너지사업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업'에 포함시키고, 국내 종자산업을 위해 종자수입 허가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종자산업·종균배양'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의 기타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식업을 '직접 생산한 주요 식재료를 이용하여 전통음식의 판매 및 연구개발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신사업 범위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업은 법인이나 개인이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사업 범위로 타당하지 않고, 농업경영체에서도 농지임대차제도를 이용해 유휴농지를 농업 관련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만들고, 농촌의 인력문제 해결, 농업인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 컨설팅 사업을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나채준 외(2017)는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에서 농촌 태양광사업을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로 당장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농업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같이 주무관청에 설립신고 후 확인증을 받아 등기소에 설립 등기 하도록 설립 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동규 외(2018)는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과 관련하여 타당성, 효과성 측면에서 제도의 유지가 적절하나, 감면 수준이나 농업인 출자비율 등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일부 조정이 가능하고(다만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제한을 완화한 것은 비농업인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차등적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출자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감면 수준은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1인당 감면한도가 더 낮기에 향후 조정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2.5.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이 연구의 차별성

농업법인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수행된 주요 선행연구 내용들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인의 조직화 및 농업법인 참여와 관련한 연구에서 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는, 식량작물보다는 환금성 작물 재배 농가, 2종 겸업보다는 1종 겸업농가 그리고 대농보다는 중소농일수록 참여율이 높고(전익수 2018), 대농보다는 주로 중소농 위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더 있으며(김동신 외 2016), 일반 생산자 조직보다 출자를 통해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법인 형태가 더 효과가 있었다(윤준상 외 2017)고 보고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관련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은 가족 경영에 비해 생산, 기술, 경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고(권용덕 외 2008; 이상호 2010; 이상호 외 2011; 노미현 2014; 조가옥 외 2015),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했고(박문호·임지은 2014; 김일곤 2019), 특히 부채비율이 적정 경영성과를 내기에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임인섭·이상래 2017; 김우석 외 2017; 김일곤 2019)고 보고하였다. 농업법인들의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 경영 및 관리 능력 부족, 출자 및 공동자산 부족, 조합원 간의 의견 불일치(권용덕 외 2008), 생산기술 측면에서 노동력 확보, 제품 개발, 유통·판매 측면에서는 판로 확보, 수익성 저하,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운영자금 부족, 조직운영 문제, 지역과 갈등 등의 애로(박문호·임지은 2014)가 있었다.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 문제점 관련한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은 시장 실패상황에서 농가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적절한 정책이지만, 저소득 농가보다는 고소득 농가에게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고(이동규 외 2018),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기적 재무 성과에 집중되어 있어(정양헌·이충섭 2006; 정양헌 외 2007), 정책자금 지원이 농업법인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박규동 2012). 농업법인 조직 형태(영농조합과 농업회사) 간에 설립 목적과 구분이 모호한 문제(김수석·박석

두 2006; 권용덕 외 2008), 농업법인 관리체계의 문제(김수석·박석두 2006; 권용덕 외 2008; 감사원 2016; 금태환 외 2018), 정책자금 수혜를 받기 위한 수단화되는 현상(권용덕 외 2008; 장민기 2019)이 지적되었다.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발전방향 관련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설립 절차의 개선(나채준 외 2017), 농업법인 사후관리 강화(농업법인관리 기구를 두고 유명무실 법인의 강제 해산, 청산 포함)(김수석·박석두 2006; 김정호 2020), 가족법인 유한책임 경영체 도입 및 육성(김수석·박석두 2006; 김정호 2008), 농업 생산 법인과 농업 서비스법인으로의 구분 강화(김수석·박석두 2006; 권용덕 외 2008), 지역농업법인 활성화(김정호 2008), 농업법인 사업 범위 개선(서종석 외 2017; 나채준 외 2017) 등을 제안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경영능력을 제고(경영 및 상담지도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 경영관리 프로그램,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축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농협과의 협력체계 구축, 생산법인과 서비스법인 간의 유기적 연계), 농업법인의 경제적·재정적 규모 확대(자기자본 비율 증대, 자본 유치 활성화, 운영자금 지원), 세무 또는 회계 분야 대책(경영 투명성 제고, 재무제표와 결산서 작성 필수,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농업법인 또는 농업법인 제도와 관련된 여러 측면 중 일부분(농업인 조직화 및 농업법인 참여, 농업법인 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농업법인 제도 및 지원 정책 개선)만을 논의하였다. 일부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한 연구는 수행한 지 10년 이상 지나 최근의 변화된 상황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제도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농업법인 특성 및 재무 관련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법인체의 경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농가 및 농업법인들의 관련 요구를 설문 및 지역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외국의 농업법인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 전반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본론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1990년대 제도 태동 이후, 2000년대 성장기, 안정기를 거쳐 온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화와 현황 그리고 재정 및 조세와 관련한 지원 정책의 변화와 현황 고찰 결과를 토대로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업법인의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업법인 관련 통계청 자료(농업법인조사, 농업총조사) 분석을 토대로 주요 특성별 농업법인 수, 법인 운영 주체와 출자, 종사자 수와 경영 규모, 경영 실태와 재무지표 등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고, 자료포락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효율성 및 효율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요구를 분석하였다. 농업법인 관련 통계와 이 연구에서 수행한 농가 및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와 지역 사례조사를 토대로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와 요구,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요구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를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농업법인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농업법인 제도 도입 배경과 변화, 현 제도 및 관련 정책, 농업법인 현황과 성과, 최근 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장에서의 농업법인 제도 현황 및 변천의 시사점, 농업법인 현황과 경영 실태 분석,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고찰과 비농업 분야 기업 육성 정책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토대로 농업법인 관련 문제점을 종합

하고, 내실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관련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농가 및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지역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고찰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은 관련 전문가((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 박사)의 원고를 토대로 보완 검토하였고,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관련 선행연구와 최근 정책 및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농업 분야(중소기업,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경영체 육성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통계자료 분석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와 관련하여 통계청과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농업법인조사(2000~2018), 농업총조사(2000~2015), 경제활동인구조사(2001~2018), 지역별 고용조사(2019)와 한국기업데이터(2018)의 농업법인 재무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요구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1>.

〈표 1-1〉 농가 및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구분	농가	농업법인
조사 목적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실태와 요구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요구
조사 기간	2020년 9월 14일~10월 30일	2020년 9월 28일~10월 9일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우편 조사	CATI를 활용한 전화 조사
응답 현황	1,064명	501개
조사 내용	경영주 기본 특성: 비농업 분야 경험 경영 특성: 농업활동 내용 및 매출 비중, 영농 규모, 매출 규모, 소득구조, 후계자 확보, 장부 작성, 사업 확장계획 법인참여: 참여 여부, 참여 의향, 미참여 이유, 출자자, 법인 활동 내용, 법인 참여 목적, 법인이전 생산자 조직 활동, 운영 주체, 법인매출, 법인매출과 농가매출 비중 법인 성과 및 요구: 농업법인 지원 강화, 농가 법인화 및 마을 법인화에 대한 찬반	법인 기본 특성: 회사 형태, 회사 형태 변경, 설립 목적, 대표자 비농업 분야 경험 법인 설립·운영: 설립 관련 정부 지원사업, 생산자 조직 활동, 출자자 구성, 운영 주체, 출자자 참여, 회계 관리, 사업 확장계획 법인 성과 및 요구: 성과 및 지역 기여, 수혜 농가, 경영 애로사항, 정부 지원사업 수혜내역, 제도 및 정책 개선

농가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뤄졌다. 온라인 조사와 우편 조사를 통해 3,000농가 중 1,064농가의 응답을 받았다. 조사 내용은 농가 기본 특성과 농업법인 참여 현황과 주요 성과, 참여 관련 장애 요인, 주요 정책 요구 등이었다<부록 1>. 농업법인 조사는 전문조사업체(갤럽)에 의뢰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 농업법인은 소재지역, 조직 형태,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집[3]되었고, 501개 업체가 응답을 하였다. 조사 내용은 주요 법인 특성과 농업법인 설립 목적과 계기, 주요 운영 현황, 주요 성과 및 요구 등이었다<부록 2>.[4]

사례조사

농업법인의 운영 및 경영 현황, 성공과 실패 요인 도출, 편법적 운영 실태,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 관련 질적인 분석을 위해 농업법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 방문 조사와 더불어 농업경영 컨설팅업체(지역

3) 전국 농업법인 표본할당은 2018년 기준 농업법인 데이터에 의거하여 설계하였고, 표본 할당 설계와 유사하게 확보한 조사 데이터를 모집단의 구성에 맞게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4) 농가 조사와 농업법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별도 발간된 자료집 참조.

농업네트워크) 위탁조사를 통해 농업법인 지역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문제점 도출, 농업법인 경영 실태에 대한 해석,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요구 분석 및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 도출에 있어 농업법인 관련 연구자, 법률 및 세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담당자, 지방 법원 등기소 관계자, 농업경영컨설턴트, 농업법인 유관단체 관계자 등의 자문을 받았다.

3.3. 연구 추진 체계

이 연구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정리한 연구 추진 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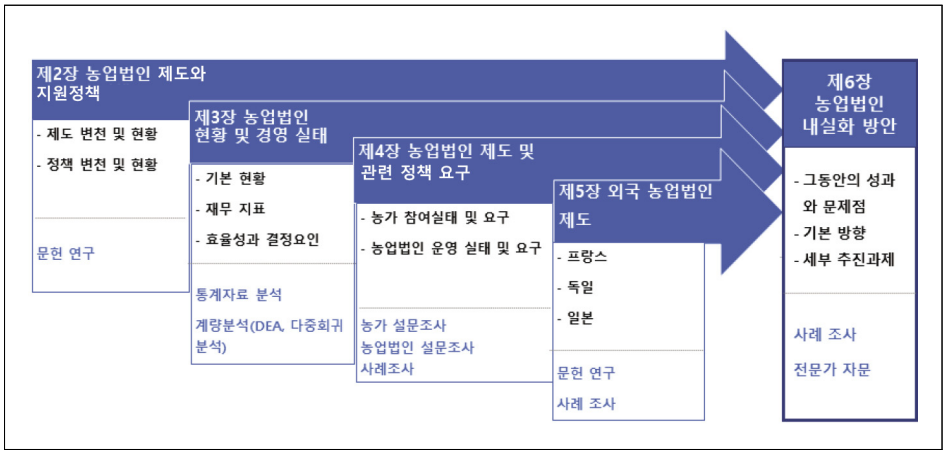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제2장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이 장에서는 관련 문헌 고찰을 토대로 1990년대 제도 태동 이후, 2000년대 성장기, 안정기를 거쳐 온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화와 현황 그리고 재정 및 조세와 관련한 지원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자 인터뷰 및 연구,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5)]

1. 농업법인 제도

1.1. 제도의 태동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태동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협업농장에서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 중심의 전환이 추진되었지만, 농업생산이 정체되어 식량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농업증산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1960년대부터 농업구조 개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가기록원 2020). 1962년 농림부 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 자립경영 육성의 일환으로 시범 협업농장[6)]을 시작한다. 또한 이후 민간 주도의 협업농장이 농민 운동적 차원에서 전국적

5) 이 장의 1절, 2절은 전문가 원고 위탁(김정호 2020)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6) 전국 5개 지구(광주 협업개척농장, 운장산 협업개척농장, 백운산 협업개척농장, 박달군 협업개척농장, 대리 협업개척농장)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으로 추진되었다(김정호 2008: 3).[7] 이후 1967년 「농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족농과 함께 협업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후속 정책이나 제도적 조치가 없어 선언적 수준에서 그쳤다. 1970년대 들어 농협중앙회의 작목반(1970년), 농촌진흥청의 농사개량구락부(1977년)와 같은 농가 협업을 위한 조직화가 이뤄지고,[8] 1980년대에는 농기계 공동 이용을 통한 농가 간의 협업을 조장하는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1981년)[9]이 추진되었다(김정호 2008: 5-6)<표 2-1>.

협업농장, 작목반, 농사개량구락부, 기계화영농단과 같은 협업적 농업 조직체 육성의 바탕하에 1989년 3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에서 전업농과 병행하여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제시되었고, 이후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농정 사상 처음으로 농가 이외의 농업경영 주체인 농업법인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1990년 11월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었다(김정호 2008: 7).

〈표 2-1〉 농업법인 제도 발족의 경과

시기	주요 내용
1950년대	농지개혁의 실시(1950~1957), 자작농 창설
1960년대	농업구조개선 시책 수립(1962), 협업농장 시범사업 추진 「농업기본법」(1967)에 협업농 육성 근거 마련
1970년대	작목반, 협동출하반, 새마을영농회 등 결성 「농지법」 개정 시도(1971~77) 과정에서 협업농에 관한 논의
1980년대	농업기계화 추진(1980), 새마을기계화영농단 결성 위탁영농조직 활성화
1990년대	농업법인 법적 근거 마련(「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

자료: 김정호(2008: 5).

7) 이들 대부분은 이후 경영 실패로 사라지고, 당시 추진된 협업농장 중 증평협업농장(1969년 설립)이 유일하게 이후 농업법인으로 살아남았다(김정호 2008: 4).

8) 이후 행정주도의 협동출하반은 작목반과 통합한 작목반으로 발전함. 상당수 농업법인이 이를 근간으로 태동되었다.

9) 농가 5호 단위 소규모 영농단과 10호 단위 대규모 영농단으로 구분하여 추진됨. 기계화 영농단에는 국고(20%) 및 지방비(20%)와 융자(60%)를 통해 영농기계 구입비가 지원되었음. 1990년까지 총 4만여 개가 조성되었다.

1.2. 제도 발족 이후 주요 변화

농업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설립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된 이후,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으로 옮겨 가며 제도적 규정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표 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설립근거를 담았다. 법 제6조에서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10] 제7조에서 "농민·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은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 편의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당시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위탁영농회사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전업농을 비롯한 농업경영체의 생산 활동을 보완하는 농업서비스 사업체였다.

1993년 6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유통형 영농조합 등이 활성화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으로 종래의 1ha 미만 농가라는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가구 1인이라는 조합원 규정도 삭제하였다. 조합원의 출자에 대하여 종래에는 농지 출자자에 한하여 현금 출자를 허용했으나, 이러한 출자 방식의 제한도 폐지하였다. 또한 사업 영역으로 인접 시·군까지 확대하여 영농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수산물의 가공·판매·수출도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조직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10)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은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 규모 1ha 미만의 농업인이며, 조합원은 1가구당 1인으로 제한하였다

〈표 2-2〉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

구 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년 개정	2009년 이후 개정
근거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법」(2009~)
영농 조합 법인	취지	■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 농업경영 합리화로 생산성 제고, 농산물공동출하, 가공·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 제고 ■ 농산물 공동출하·가공·수출		■ 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 제고 ■ 공동으로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진
	설립 주체	■ 5호 이상 농가 - 당해 시·군 거주 - 3년 이상 영농 - 1ha 미만 농지소유	■ 5인 이상 농업인 - 당해 시·군 거주, 3년 이상 영농 유지 - 소유상한 폐지	■ 5인 이상 농업인 - 거주지 요건 폐지 - 영농기간 요건 폐지	■ 농업인·생산자단체 추가 ■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출자 및 책임	■ 농지와 현물에 한정 ■ 1인당 총출자액의 1/3 이하	■ 현금출자 가능 ■ 유지	■ 준조합원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		■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 조합원 유한책임 전환(2015년)
	농지	■ 농지 소유 가능 ■ 소유상한 규정 없음	■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합산면적 가능	■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사업	■ 농수산업과 부대사업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농작업 대행	■ 농림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림어업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가 (2015년)
	조직 변경					■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 가능: 합명·합자('09) + 유한·주식('15)+유한책임('18) ■ 합병 또는 분할 가능
	타법	■ 민법의 조합 규정 ■ 무한책임			■ 해산명령에 상법 176조 준용	
농업 회사 법인	취지	■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명칭: 위탁영농회사)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명칭: 농업회사법인)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 기업적으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설립 주체	■ 농민	■ 농민 외 생산자단체·농지개량조합 추가	■ 비농업인 출자 가능 ■ 설립 형태: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1995년)	■ 설립주체에서 농지개량조합 삭제	■ 유한책임회사 설립 형태로 추가 (2018년)
	출자			■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2(주식회사는 1/3) 이하	■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4(2004년)	■ 비농업인 출자한도 변경 - 총출자액 80억 원 이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 총출자액 80억 원 초과: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
	농지	■ 소유 불가		■ 소유 가능(농업인 출자액이 출자액의 1/2 이상, 농업인이 대표사원,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사업	■ 농업경영 ■ 농작업대행(농가당 위탁상한 3ha)	■ 위탁상한 3ha 폐지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 농작업 대행 ■ 부대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가 (2015년)
	타법	■ 상법의 회사규정 ■ 유한책임 ■ 무한책임				

자료: 김정호·박문호(2010) 내용을 기초로 최근 변화 내용을 반영하여 저자가 수정·보완한 것임.

1993년 12월에 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농정제도 개혁(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1994. 6. 14.)을 추진하여 농업법인이 기업적 농업

경영체로 탈바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1994년 12월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및 1995년 6월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소농의 협업경영이라는 성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11] 농업회사의 설립자격은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으로 한정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과반 이상이고 농업인이 대표사원이며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 이상일 경우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자격에서 영농 경력과 거주 제한을 폐지하고, 조합원 자격은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그 밖의 개인과 단체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12] 농지 소유 규정은 「농지법」으로 이관되었다.[13]

1999년 3월에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 한도를 폐지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한도를 총출자액의 1/3 이하에서 1/2 이하로 완화하였다.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법인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1999년 2월에 「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5758호, 1999. 2. 5., 시행 2000. 1. 1.)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종전의 「농업기본법」(1967년 제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을 통합하면서 일부 신설 조항을 추가하였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7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는 「농업·

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기존의 농민이나 농어민 등의 용어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 개칭되었다.

12) 이에 따라 소규모 영농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 성격의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13) 1994년에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소유상한은 농가 1호당 5ha로 제한하였는데,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조합원 1인당 5ha씩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기본법」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로 위치만 옮겨졌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명령에 「상법」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주체 규정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삭제되었다.

2003년 12월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소관을 농림부장관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농업회사법인과 같이 사단법인으로 일반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4월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되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3/4까지 허용하여, 농업생산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9년 4월에는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 경영 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회계 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620호, 2009. 4. 1.)(약칭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이 제정되었다.[14] 이 법을 통해 농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와 더불어 영농조합법인의 조직 변경(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근거가 마련되었다.[15] 이 법은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다<표 2-3>.

---

14) 당시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9717호, 2009. 5. 27.)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3조 용어정의 및 제28조 농업법인 육성정책 규정만 남게 되었다.

15) 농업법인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농업법인 등), 정보통계담당관실(농업경영체 등록), 혁신행정담당관실(부기 등기), 식량산업과(공동농업경영체) 등으로 업무 분장이 규정되었다.

〈표 2-3〉「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정 이후 농업법인 관련 규정 개정 경과

개정 연월일	주요 개정 내용
1. 법률 제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정의(어업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내용), 농어업법인(내용)
2. 법률 제9956호, 2010. 1. 25. 일부개정	부칙 공포(내용)
3. 법률 제10448호, 2011. 3. 9.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내용), 직접지불금 지급제한(내용)
4.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일부개정	목적(직접지불제 추가)
5. 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일부개정	농업회사법인 설립(내용)
6.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내용), 농업법인 지원(내용)
7.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등록정보 확인(내용 수정), 농업경영체 회계(내용)
8.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농업법인 설립(내용)
9. 법률 제12961호, 2015. 1. 6. 일부개정	정의(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문구), 농업법인 설립(내용), 영농조합 조합원(문구), 영농조합 조직 변경(문구)
10.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정의(수산업 문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내용)
11.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타법개정	부기등기(신설)
12. 법률 제14208호, 2016. 5. 29. 일부개정	부칙 공포(내용)
13. 법률 제14646호, 2017. 3. 21. 일부개정	목적(공동경영),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내용), 등록정보 정정(신설), 등록정보 수정(문구), 부기등기(신설), 농업법인 설립(내용),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신설), 직접지불금(규정 삭제)
14. 법률 제15385호, 2018. 2. 21.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 추가(내용)
15. 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영농조합법인 조직 변경 추가(내용)
16. 법률 제16965호, 2020. 2. 11.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 설정, 말소 및 정정, 일치 여부 확인(신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2011년에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투자 확대가 명시되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자 제한 완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비율 기준 외에 금액 기준[16]도 추가하였다.

2014년 8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법인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확인절차를 강화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서 첨부서류에 5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류를 추가하고,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법

16) 총출자액 80억 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총출자액 80억 원이 초과할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

인을 설립등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토록 규정하였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류, 비농업인 출자한도 준수 여부 확인서류를 추가하였다.

농업경영체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2015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에 대한 통지 의무,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등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 밖에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확장 및 합병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법인 사업의 범위 확대(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출자액에 한정(무한책임 → 유한책임 전환),[17] 영농조합법인이 합명·합자회사 외에도 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였고, 농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업법인을 지정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제 적용, 공동농업경영체 개념을 도입하였다(2017. 3. 21.). 생산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이 공동농업경영체 개념을 도입하여 공동경영 면적 50ha 이상에 참여 농업인 수는 25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조직 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2018. 12. 24.)하였다.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11. 4. 14.)되었는데, 이를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도 뒤늦게 반영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도를 강화하였다(2020. 2. 11.).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17) 2015. 7. 7. 이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기존 영농조합법인은 2015. 7. 7. 이후부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적용(농림축산식품부 2020a).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농업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농지·임야·축사 및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1.3. 제도 현황

농업법인은 앞선 절에서의 여러 법률적 기반의 변천을 거쳐 현재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농지법」 등을 중심으로 설립 근거, 목적과 성격, 설립 자격과 구성원, 출자 한도 및 책임 한계, 설립과 등기, 경영 참여와 의결권, 사업 내용, 해산 등이 규정되어 있다<표 2-4>. 농업법인의 경영체 성격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설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협동조합과 유사한 준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의 「상법」상의 정의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18]

18) 협업경영은 구성원(=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기업적 경영은 조직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함. 농업법인은 농업을 경영하는 인적·물적 조직체로서 농업법인 구성원의 일반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상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음.

〈표 2-4〉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법적 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6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				
설립 자격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발기인 수	농업인 5인 이상	1인 이상	무한 2명 이상	유한 1, 무한 1 이상	2~50인 이하, 사원1인	1인 이상
출자 제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제한 없음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출자 가능				
책임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	유한	무한	유한 무한	유한	유한
의결권	1인 1표	출자 지분에 의함				
농지 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농업인 주도의 경영)				
타법 준용	설립 등기 관련 상업등기법 준용 기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설립 운영	농업인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좌동				

주: '15. 7. 7. 이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기존 영농조합법인은 '15. 7. 7. 이후부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기반으로 저자 수정 보완.

농업법인의 설립 주체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이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회사는 발기인 2~50인과 사원 1인 이상,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설립가능하다. 구성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농어업경영체육성법 시행령」 제14조)는 그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와 관련하여 한도를 정하고 있다.[19] 한편 농업법인은 농협·산림조합 및 잎담배생산자조합 등의 생산자단체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9)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

농업법인의 출자 한도와 책임 한계는 법인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 출자가 가능하고, 책임도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별로 다른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출자 한도가 없고, 주식회사는 1주 금액이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고 재산 출자에 한하며, 유한회사는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 원 이상의 균일액으로, 자본금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책임 한계는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으로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며, 합자회자는 무한책임 사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나뉘고, 유한회사는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한다.

경영참여와 의결권과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인 1표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는 출자 1구좌당 1표, 주식회사 형태는 주식 1주당 1표이다. 농업회사법인은 무한책임 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지만, 유한책임 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못한다. 주식회사 역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한편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사업 범위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과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이며, 부대사업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농산물의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이 가능하다.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업무집행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인 회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편, 농업법인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아 농지의 공동이용을 비롯한 공동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농업경영체는 지역별로 영농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생산의 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법인은 공동농업경영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명칭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해야 하며, 목적 사업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2-1>. 설립은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가능하고, 총조합원의 결의로 법인을 합병 또는 분할하거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변경은 「상법」에 준한다. 해산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근거하여 총회의 의결, 영농조합법인의 합병·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지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에 준하여 해산하며, 회사의 해산이 회사의 법인격 상실에 이르는 원인이기는 하지만, 청산이 종료될 때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한다.

〈그림 2-1〉 농업법인의 설립 및 등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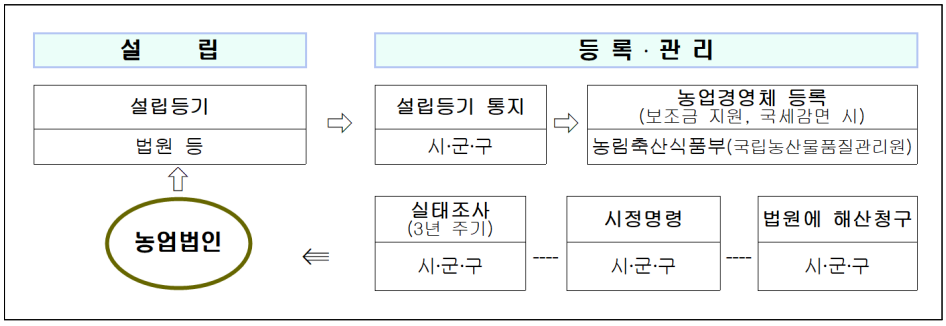

자료: 감사원(2016).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

도·감독(예: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한다.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을 원활히 추진하며,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에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한다.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한다. 정부 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관여한다.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3년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 조치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다.[20] 또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수행업무 규정(제21조의 2)을 두었다. 그리고 법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 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제23조)한다<표 2-5>.

20) 시·군·구청장이 3년마다 조합원 및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소유 농지 규모 및 경작 유무 등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유: ⅰ) 조합원이 5명 미만인 경우, ii) 농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총출자액 80억 원의 10%(8억 원) 미만인 경우.

〈표 2-5〉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조치

구분	해당사항	근거법령
시정명령 (지자체 → 법인)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	경영체법 20조의 2 ⑤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해산명령청구 (지자체 → 법원)	(영농조합) 조합원 5명 미만이 된 지 1년 경과	경영체법 20조의 3 ②
	(농업회사)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후 1년 경과	
	사업 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의 장기 휴면	상법 176조 ① 경영체법 20조의 3 ①
과태료 (지자체 → 법인)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최대 300만 원)	경영체법 33 ②
	실태조사 불응(최대 300만 원) * 농지 소유 여부 거짓 응답 포함	
	설립통지, 변경통지 미이행(최대 100만 원) * 단, '15. 7. 7. 이후 설립·변경등기한 법인에 한함	경영체법 33 ①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최대 100만 원)	경영체법 30, 33조 ①
농지처분명령 (지자체 → 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 이상이 농업인) 위반 후 3개월 경과 미이행 시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10조 ①, 11조 ①, 62조 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9b).

2. 농업법인 지원 정책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재정사업을 통한 보조·융자 지원이 있고, 세제 지원이 있다. 정부는 1990년 4월에 농업법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농업법인에 대해 개별 농가와 대등한 지원 및 법인으로서 별도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였다.

2.1. 재정 지원

농업법인은 농업인이 설립한 조직경영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은 농업법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정책 지원 중에는 농업인 개인 대상 사업이 있는 반면, 농업법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도 있다.

1990년 4월에 농업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농가 수준의 지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포함하여 농기계구입자금의 50%를 보조하였다. 1994년 6월에 수립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토대로 12월에 제정된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995년부터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 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1996년 1월에는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하였다. 시설자금은 기존의 노후·불량 시설의 보수와 대체 및 시설 현대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출 기간은 2~5년으로 차등화하고, 이자율은 연리 5%로 하였다. 운영자금은 생산·가공·유통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그 밖의 법인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일시 상환하도록 하였다.

1997년 1월부터 부실 농업법인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관리 규정도 정하였다. 농업법인의 농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출자액 1억 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 후 1~3년 운영실적 평가 등으로 정하였다. 농업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연리 5%의 농기업경영자금 2,0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하였으며,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을 카드로 작성하여 농촌지도소와 농협·축협 등에 비치하고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 지도 및 경영 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2004년 1월부터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림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 지원요건을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2010. 12. 21, 훈령 제231호)을 전면개정하여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 지원요건을 보완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시행 2015. 12. 31, 훈령 제200호)에서 또 다시 수정하였다.

2015년 개정된 현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자금 및 자본금과 관련하여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21] 자본금은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이어야 한다. 구성원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해당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교육요건으로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 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 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상의 공통요건 이외에 개별 단위 사업별로 별도 기준도 따라야 한다.

21)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함.

〈표 2-6〉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추진 경과(1990~2016년)

시행연월	주요 내용
1990. 4.	• 영농조합법인은 농가 지원과 동일 •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농기기계구입자금 50% 보조
1995. 1.	•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인정 - 영농조합법인: 영농규모적정화사업 지원 - 농업회사법인: 농지·농기계 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영농자금 등 지원
1996. 1.	• 농업법인 대상의 농기업경영자금 신설
1997. 1.	•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정 및 사후관리 규정 강화 - 경영실적 평가에 의거한 차등 지원, 경영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2004. 1.	• 농업법인의 농림사업 선정 기준을 강화 - 공통 지원 기준 마련, 부적격 또는 위장 여부 확인
2011. 1.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전면 개정하여 공통 지원요건 강화 - 출자금 및 자본금, 구성원의 농업인 확인, 지원대상 사업 차등화, 부적격자 확인, 교육이수 권장 등
2016. 1.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지원 체계 확립 - 공통 지원 요건: 출자금 및 자본금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부대사업 연계, 부적격자 여부 확인, 교육이수 실적 등 - 사업별 지원 요건: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함 - 사후관리 기준: 시설물 준공검사, 경영기술 지도, 부도시 제3자 이양 등

자료: 김정호(2020).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원대상에 농업법인이 포함된 사업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시설·장비 구축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고, 경영 비용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인력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가공시설현대화,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원예시설현대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우수종묘증식 보급 기반 구축 사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등이 있다. 경영 비용 지원으로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농식품수출 바우처 지원이 있고,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스마트 ICT융복합 확산, 농식품유통교육훈련,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등이 있다. 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법인 취업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이 있다.

〈표 2-7〉 농업법인 지원 정책 현황

단위: 백만 원

분야	내역사업		사업 내용	사업비 ('20년)	비고
일반	농업경영컨설팅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1,109	컨설팅
	농업법인 취업 지원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대상으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정착을 제고	1,230	인력
	전문인력 채용 지원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2,434	인력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보험대상 농작물(축산물)을 경작(양축)하는 농가의 보험료 중 50%를 국고로 지원	479,416	비용
생산 (식량)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가공시설현대화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25,080	시설장비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시설장비
	들녘 경영 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 및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2,190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11,542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논 타 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6,870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생산 (축산)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비용 일부 지원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2,619	교육
생산 (축산)	(가축분뇨처리 지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공동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기계·장비 지원	281	시설장비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 기반 확충 도모	76,592	시설장비
생산 (과수원예)	과수 생산유통 지원	과수우량묘목 생산 지원	무병품종 선발 및 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500	시설장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집하선별장,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 지원	4,227	시설장비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300	시설장비
	원예 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자재·설비 등 지원	14,816	시설장비

(계속)

분야	내역사업		사업 내용	사업비 ('20년)	비고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3,360	시설장비
	스마트 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 보급 및 컨설팅 지원	3,500	컨설팅 시설장비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지원	24,156	컨설팅 시설장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10,100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생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생산부터 유통까지 노지 전 분야의 스마트영농을 위하여 기초기반 조성, 자동화장비·기계 지원, 기존 시설 스마트화 등	8,840	시설장비
	우수종묘증식 보급 기반 구축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종묘 생산 기반(시설·장비) 지원	6,489	시설장비
식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자치단체)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2,940	시설장비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생산 기반 조성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등 조직화 지원, 농약 안전성 검사, 검역관 초청 등	4,087	교육
		농식품수출 바우처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가 선택한 사업을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지원	369	비용
유통	농식품유통교육훈련		농식품 유통 종사자에 대한 장·단기 교육 실시	2,089	교육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15,260	컨설팅
체험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대상 교육 지원	170	교육
	농촌 융복합 산업	제품 온라인 판로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제품 대상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60	마케팅
		판촉 및 마케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1,138	

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 , 초지조성 및 기반 시설, 가공·유통시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2.2. 조세 지원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은 농업 분야의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임소영·원은송 2019). 농업법인의 세제를 개관하면, 설립 단계에서는 주로 지방세의 감면

지원이 주어지고,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익금 배분 단계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표 2-8>.

국세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은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다.[22] 농업법인은 법인세에 관련하여, 식량작물 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되며,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면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 원 이하의 소득분,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이하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된다.[23] 부가가치세 혜택으로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있다.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배당소득세는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소득세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감면 조치를 해 준다(농림축산식품부 2020a: 42-47).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규정되어 있다.[24]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혜택에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다만, 청년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 부동산까지 적용),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 취득 시에는 75% 감면, 2년 이후 취득분은 50% 감면) 등이 있다.

---

22) 법인세는 조특법 제66조와 68조 그리고 시행령 63조부터 65조에, 부가가치세는 제105조와 106조에,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제66조와 68조에 규정되어 있음.

23) 구체적인 법인세 산출식은
-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소득×{6억 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수입
-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소득×{50억 원×(사업연도 개월÷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수입}

24) 지특법 제11조와 보칙 제177조의 2, 등록면허세는 지특법 제11조, 재산세는 지특법 제11조 규정에 의함.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되며,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50% 감면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0a: 42-47).

〈표 2-8〉 농업법인 주요 관련 조세 감면

대상	세목	내용	규정
법인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수입금액 6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분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이하의 소득분 - 작물재배업 외 대통령이 정한 소득: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소득금액 1,2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부터 4년간(50% 감면) (축산업, 임업, 농작업대행, 농산물유통, 농산물가공,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부대사업)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 감면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과세]	조특법 66조, 68조 (2021. 12. 31.)
	부가가치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21. 12. 31.) - 농업용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021. 12. 31.) - 농업용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세(2021. 12. 31.)	조특법 105조, 106조
	취득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청년농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지특법 11조 (2020. 12. 31.)
	등록면허세	-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면제(2020. 12. 31.) -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21. 12. 31.) - 법인설립등기 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2020. 12. 31.) [설립 시에만 해당되며 설립 이후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지특법 10조, 11조
	재산세	- 과세 기준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지특법 11조 (2020. 12.31)
주주조합원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인이 농지, 초지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 한도) -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1항 적용 부동산은 제외)	조특법 66조, 68조 (2021. 12. 31.)
	배당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 발생한 배당소득: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 초과하는 금액은 5% 소득세과세(분리과세하며 초과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10% 과세된다. 따라서 1,200만 원 초과금액은 5.5% 원천징수) - 농업회사법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3. 농업법인 제도 및 지원 정책의 문제점

제도 태동 이후 정부의 출자한도 규정 완화, 농지 소유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라 농업법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3.1. 미운영 법인

농림축산식품부(2016)의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결과,[25] 조사 대상(5만 2,293개소 중 47.0%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17.4%),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경우(0.3%) 등이 있었다. 2019년 두 번째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66,877개소('18. 12. 31.기준)) 중 44.8%가 운영 중이었고, 38.6%가 미운영, 이 밖에 '소재 불명' 16.3%, '일반법인 전환' 0.3% 등이었다. 2016년 이후 3년간 조사 대상이 14,584개 증가하였고, 운영 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다<표 2-9>. 미운영 법인의 경우, 운영 준비보다는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으며, 단순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미운영하거나 부실 경영으로 폐업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위해 공동소유 농지의 명의 주체로 설립한 경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정호 2020).

25)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에 근거한 2016년 첫 실태조사에 앞서 행정조사를 통해 2013년 말 기준으로 설립등기된 농업법인 43,277개(영농조합법인 33,146개, 농업회사법인 10,131개)의 운영 개황을 전수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운영 중이 60% 수준이며, 휴면, 임시휴면, 기타, 미기재 등이 35%, 미운영이 4.9%였음. 운영 중인 농업법인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충족이 90.3%이고 미충족이 1.7%로 나타났으며, 미기재한 법인도 8.0%였음(농림축산식품부 2013).

〈표 2-9〉 농업법인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조사 연도	법인 구분	조사 현황	운영 중	미운영	운영 준비	임시 휴업	휴업	폐업	소재 불명	일반 법인 전환
2016	총계	52,293 (100)	24,825 (47.0)	18,235 (34.8)	2,671 (5)	723 (1)	6,689 (13)	8,152 (16)	9,097 (17.4)	136 (0.3)
	영농조합	37,453	17,416	14,213	1,550	529	5,849	6,285	5,770	54
	농업회사	14,840	7,409	4,022	1,121	194	840	1,867	3,327	82
2019	총계	66,877 (100)	29,964 (44.8)	25,847 (38.6)	2,308	1,253	7,638	14,648	10,877 (16.3)	179 (0.3)
	영농조합	41,413	17,361	18,188	1,025	804	6,151	10,208	5,815	49
	농업회사	25,464	12,603	7,659	1,283	449	1,487	4,440	5,072	1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2019a).

3.2. 사업 범위

「농어업경영체육성법」상의 농업법인이 수행가능한 사업 범위는 당초 협업적·기업적 농업생산에 초점을 두었지만, 1993년 이후 농산물 공동출하, 가공, 수출 및 농작업 대행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을 포함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도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에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나채준 외 2017: 75).

태양광 사업의 경우 현재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실제 김포시의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선 한 농업법인의 양봉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신청돼 논란이 일었다(인천일보 2020). 마을주민들은 이 농업법인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은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양봉시설)이 있으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농지법」을 악용한 꼼수라며 허가 반려 등을 요구하였다. 충북 영동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

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경작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였다(충북일보 2020). 한편 충남 당진시는 2018년 대호간척지 일대에 버섯재배사 48동을 짓겠다는 한 농업회사법인의 건축 신청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판단해 우량농지 연쇄 잠식,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가 법인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농민신문 2020).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태양광 사업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3. 목적 외 사업 영위

농림축산식품부(2016)의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결과, 법률 위반행위사례 중 사업 범위(농업 생산·가공·유통·수출, 농촌관광 등)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6.9%였다. 이들 농업법인은 건축업·사회복지사업·일용잡화 판매·예식장·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을 추진하며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활동했다. 감사원(2016) 조사에서, A영농조합법인은 대전광역시에서 3개 오피스텔 31실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B영농조합법인은 경북 군위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C농업회사법인은 전북 무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일부 농업법인은 농지 매입 후,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농지투기 사례가 지적되었다. 이들 법인들은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 또는 '건설업'으로 하였고, 부동산 매매업 외에 다른 사업 매출은 없었다(한겨레신문 2016).

3.4. 비농업인의 농업 진출 및 농지 소유

농업법인,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대기업의 농지 소유와 농업 진출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농민에게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개방된 이후, 출자

한 한도가 1994년 33.3%에서, 1999년 50%, 2004년 75%, 2011년 90%까지 확대되면서, 농업인에게 10%만 출자 받으면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농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주식회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2006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중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2009년에는 「농지법」에서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법인 임원 중 농업인의 비중 최소 요건이 1/2에서 1/3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농업회사법인 위주로 농업법인이 급증하였다.[26] 기업자본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지를 사들이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후 적자나 부도를 이유로, 또는 6차산업이나 창조농업 같은 이유로 농지전용 등 규제 완화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국농어민신문 2016).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민의 출자한도를 축소하고, 비농민이 참여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기업(㈜하림 계열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농우바이오 등)이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이 적은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문제이다.

3.5. 보조금 부당 지원

미운영(휴업·폐업), 소재 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농업법인에 국가 보조금이 부당 지원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한국일보 2016). 위성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6개 시·도 농업법인에 대한 2011년 이후 지급된 농업보조금 현황을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농업법인 중 미운영(휴업·폐업)(120개소), 소재 불명(53개소), 설립요건 미충족(64개소), 목적 외

26) 2009년까지 전국의 농업법인은 547개였지만, 5년 뒤인 2014년에는 4,263개로 증가. 영농조합법인은 동일 기간 2.9배(2,920개에서 8,425개)로 증가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7.8배 증가.

사업 운영(14개소)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농업법인 226개소에 시설자금 등 약 246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미운영(휴업·폐업), 소재 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되는 법인도 24개소에 이르렀다.

3.6. 조세 지원의 축소 및 형평성

현재 농업법인들은 농업 분야의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농업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는다. 하지만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2014년에는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소득에 대한 면제가 식량작물로 한정되었다. 식량작물 이외 작물 재배업 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 원 이하의 소득,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 50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세된다. 농업인(4년 이상 직접 경작)이 자기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 시 한도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던 것이, 점차 줄어 과세기간 최대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농지, 임야, 시설 및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농지는 75%, 부동산은 50% 경감).

한편 조세상 개인영농과 법인설립 간의 무차별 원칙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공제액은 1996년도에 개정된 이후 1,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개인농가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소득의 규모는 2016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농업인은 식량작물 외 재배업 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세 계산 시 조합원당 6억 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입금액 6억~10억 원 규모의 농업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불리하

다. 이에 따라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중요한 요건이 되는 만큼 법인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최소한 소득세 수준과 동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임소영·원은송 2019: 99-101).

3.7. 조직 형태(영농조합과 농업회사) 간 구분 모호

당초 농지 소유가 불가하던 위탁영농회사가 1994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뀌면서 제한적 조건하에 농지 소유가 가능해졌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을 추구한다지만, 두 조직 형태 모두 비농업인의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 내용도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 등의 사업이 가능하여 두 유형 간의 차별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농업 가공·유통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의 농협은 지역농협과의 경쟁 및 경합관계에 있다(김정호 2020). 현행 제도는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농업 생산과 비생산 분야 활동을 모두 할 수 있게 하여 농업법인 유형별 차별화 정책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물 출자 등으로 농지 확보 과정이 녹록지 않은 농업 생산 법인, 다수의 농민이 참여해야 하는 지역 생산자 조직 기반 영농조합법인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8. 법인 관리 체계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농업법인 수는 미운영 법인을 포함해 조사 대상 법인 중 21.2%(1만 1,096개소)에 달했다. 목적 외 사업 수행 및 '농업인 5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 위반 법인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사원(2016) 감사 결과, 농업법인 사업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 허위 신청 및 발급업무 부당 처리,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투기 관리 미흡, 비목적사업 수행 농업법인 사후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와 더불어 농업법인 지원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족 징수, 공통 지원요건 미충족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감면 취득세 미추징 등을 지적하였다.

현재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통지하고, 지자체에서는 정책사업의 지원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의 농업법인 사전 자격요건 확인 및 보완 과정이 없는 것이다(나채준 외 2017: 79). 등기소에서는 형식적 서류 구비 조건만 검토하고 있는 실정[27]이다 보니 지자체에 통지하지 않는 농업법인의 경우(농업 보조·융자 사업을 받을 의지가 없고 세제 혜택만을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한다. 즉, 지역 내에 어떤 농업법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할 등기소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농업법인 설립 등기 이후의 변화상 파악이 어려운데, 현재는 등기소에서도 지자체에 설립 통보 관련 의무조항도 없는 상황이다.[28]

4.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발족된 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법인 설립의 규제 완화, 목적 사업의 다양화 및 정책 지원 등으로 농업법인의 외연적 성장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는 농업법인을 통해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 규모 확대를 추구하였다.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

27) "등기소에서는 농업법인 등기를 위해서 서류상으로 2가지 조건을 확인한다. 신청자가 농업인인지(농업인 확인서), 사업목적이 농업경영에 적합한지(부동산 임대업 등 불가) 등이다. 등기소에서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권만 가지며, 실질적인 조사는 불가하다.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이 연구의 지자체 등기소 담당자 인터뷰)(2020. 7. 30.)

28) "농업법인 설립이나 변경 시 한 달 이내에 본 센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보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받는 농업법인이 많다. 등기소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 주는 절차 또는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등기부등본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기소도 있다."(이 연구의 지자체 농업법인 담당자 인터뷰)(2020. 7. 14.)

농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이후, 1994년 동법개정을 통해 위탁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되고, 동 연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42조 원 투융자) 착수 및 생산자단체 지원 확대에 따라 농업법인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000년대는 농업 생산뿐 아니라 농업법인의 가공·유통 분야 진출이 본격화된다. 이 시기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시설농업, 가공유통사업), 세제 혜택 등 각종 농업법인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농업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대형 농업회사법인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농업법인 육성 정책 수립·시행의무를 명문화하고, 농림사업 지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통계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였다. 2009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의 육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농업경영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에 대한 통지 의무,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등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렇듯 그동안의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해 왔다. 그러는 와중에 양적 성장의 이면에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법인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되지 않는 부실 법인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당초 농업법인에 허락되지 않은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허용된 비농업인 농업 진출과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 형태 간의 구분이 모호해져, 농업법인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와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일정 수입 구간에서는 농업법인이 오히려 농업인보다는 불리한 세제 형평성의 문제점도 있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농업법인 관련 제도 및 정책 지원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제3장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

제3장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

이 장에서는 농업법인 관련 통계청 자료(농업법인조사, 농업총조사) 분석을 토대로 주요 특성별 농업법인 수, 법인 운영 주체와 출자, 종사자 수와 경영 규모, 경영 실태와 재무지표 등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고, 자료포락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효율성 및 효율성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1. 농업법인 현황

1.1. 농업법인 개황

통계청의 농업법인 조사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018년 기준 21,780개였다 <표 3-1>. 이 중 영농조합법인이 46.7%(10,163개), 농업회사법인이 53.3%(11,617개)를 차지하였다. 사업 분야로는 생산 법인이 32.9%(7,172개), 가공 법인이 20.7%(4,517개), 유통 법인 30.9%(6,737개), 농업 서비스 법인 15.4%(3,354개)였다.[29] 농업법인 수 변화를 보면, 2000년 5,195개이던 것이, 2010년 8,361개로 증가한 후 이후 연평균 12.7%씩 증가하였다(연간 1,677개씩 증가). 조직 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 비중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74.0%였던 것이

29) 농업법인 중에 생산이 없는 법인은 60.7%, 50% 이하는 6.8%, 51~75%는 4.0%, 75% 이상은 28.5%였다.

2009년 85.3%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67.4%, 2018년에는 46.7%까지 줄어들었다. 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대비 2018년 2천여 개가 감소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3.6천여 개가 증가하였다. 사업 분야로는 생산 법인 비중이 점차 줄고, 가공·유통 법인이 증가하였다. 생산 법인의 경우 2000년 52.0%를 차지하였지만, 2018년에는 32.9%까지 비중이 감소한 반면, 가공 법인은 동 기간 12.3%에서 20.7%로, 유통 법인은 19.6%에서 30.9%로 증가하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농업회사법인에서 가공·유통 법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 3-1〉 농업법인 조직 형태 및 사업 분야별 현황

법인종류		연도(개소)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농업법인 전체		5,195	8,361	17,484	18,088	20,200	21,780	8.3	12.7	7.6
조직 형태	영농조합	3,843 (74.0)	6,849 (81.9)	11,792 (67.4)	11,779 (65.1)	12,280 (60.8)	10,163 (46.7)	5.6	5.1	-4.8
	농업회사	1,352 (26.0)	1,512 (18.1)	5,692 (32.6)	6,309 (34.9)	7,920 (39.2)	11,617 (53.3)	12.7	29.0	26.8
농업법인 사업 유형	생산	1,425 (52.0)	3,112 (37.5)	6,017 (34.9)	6,546 (36.6)	7,644 (38.8)	7,172 (32.9)	9.4	11.0	6.0
	가공	336 (12.3)	1,568 (18.9)	3,256 (18.9)	3,313 (18.5)	3,654 (18.6)	4,517 (20.7)	15.5	14.1	11.5
	유통	538 (19.6)	1,730 (20.9)	4,512 (26.2)	4,676 (26.2)	5,228 (26.6)	6,737 (30.9)	15.1	18.5	14.3
	서비스·기타	440 (16.1)	1,885 (22.7)	3,454 (20.0)	3,328 (18.6)	3,156 (16.0)	3,354 (15.4)	11.9	7.5	-1.0
영농조합법인 사업 유형	생산	1,150 (47.4)	2,633 (37.0)	4,230 (33.9)	4,526 (36.3)	4,990 (38.7)	3,675 (36.2)	6.7	4.3	-4.6
	가공	314 (12.9)	1,235 (17.4)	1,916 (15.3)	1,827 (14.6)	1,847 (14.3)	1,968 (19.4)	10.7	6.0	0.9
	유통	524 (21.6)	1,365 (19.2)	2,885 (23.1)	2,792 (22.4)	2,895 (22.5)	2,691 (26.5)	9.5	8.9	-2.3
	서비스·기타	440 (18.1)	1,885 (26.5)	3,454 (27.7)	3,328 (26.7)	3,156 (24.5)	1,829 (18.0)	8.2	-0.4	-19.1
농업회사법인 사업 유형	생산	275 (29.3)	479 (29.7)	1,787 (30.8)	2,020 (31.5)	2,654 (33.0)	3,497 (30.1)	15.2	28.2	25.1
	가공	22 (2.3)	333 (20.7)	1,340 (23.1)	1,486 (23.2)	1,807 (22.5)	2,549 (21.9)	30.2	29.0	23.9
	유통	14 (1.5)	365 (22.6)	1,627 (28.1)	1,884 (29.4)	2,333 (29.0)	4,046 (34.8)	37.0	35.1	35.5
	서비스·기타	627 (66.8)	435 (27.0)	1,040 (17.9)	1,019 (15.9)	1,243 (15.5)	1,526 (13.1)	5.1	17.0	13.6

주: ( )는 연도별 각 유형(열)이 차지하는 비율.

사업 분야가 특정되지 않은 법인이 일부 있어 사업 분야별 농업법인의 합계와 농업법인 수는 다를 수 있음.

자료: 통계청(2000~2018).

1.2. 운영 주체와 출자

농업법인의 운영 주체는 출자자 공동 운영이 52.5%로 가장 많았고, 출자자 중 대표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40.7%, 출자자 개인별 운영이 6.7%였다(2017년 기준[30])<그림 3-1>. 출자자 공동운영 법인 수 추세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출자자 개인별 운영사례는 줄고, 대표자 단독 운영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대표자 단독 운영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009년 1,081개에서 2010년 3,887개로 증가). 조직 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대표자 단독 운영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농업회사법인에서 더 두드러졌다(2000년 영농조합 10.7%, 농업회사 8.8% → 2013년 39.2%, 66.5% → 2018년 30.3%, 57.6%).

〈그림 3-1〉 농업법인의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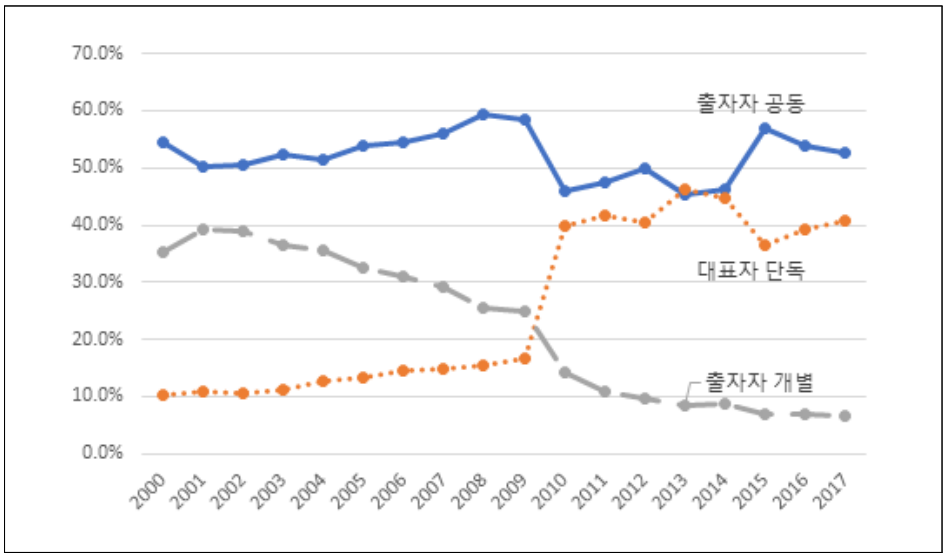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7).

30) 2018년부터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

농업법인 전체 출자자 수를 보면 2018년 현재 23.9만 명으로, 농업법인 수 증가와 더불어 2000년 9만여 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연평균 5.3%)<표 3-2>. 하지만 법인당 출자자 수는 2000년 18.0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11.0명으로 감소하였다. 조직 형태별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 감소가 두드러졌고(2000년 22.3명에서 2018년 16.0명), 농업회사법인은 6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법인 중에 9인 이하 법인이 대부분(2018년 86.4%)을 차지하였는데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50인 이상 법인 비중은 감소하였다(2000년 6.2%에서 2018년 2.8%).

〈표 3-2〉 농업법인 출자자 현황

		연도(명, %)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전체 출자자	법인전체	93,744	149,659	193,059	213,497	241,028	239,110	5.3	6.0	7.4
	영농조합	85,671	121,614	150,877	164,797	185,279	162,712	3.6	3.7	2.5
	농업회사	8,073	28,045	42,182	48,700	55,749	76,398	13.3	13.3	21.9
법인당 출자자	법인전체	18.0	17.9	11.0	11.8	11.9	11.0	-2.7	-5.9	0.0
	영농조합	22.3	17.8	12.8	14.0	15.1	16.0	-1.8	-1.3	7.7
	농업회사	6.0	18.5	7.4	7.7	7.0	6.6	0.5	-12.1	-3.7
출자자 규모	9인 이하	3,873 (74.6)	6,726 (80.4)	14,654 (83.8)	15,014 (83.0)	16,859 (83.5)	18,824 (86.4)	9.2	13.7	8.7
	10~49인	1,000 (19.2)	1,217 (14.6)	2,278 (13.0)	2,481 (13.7)	2,704 (13.4)	2,337 (10.7)	4.8	8.5	0.9
	50인 이상	322 (6.2)	418 (5.0)	552 (3.2)	593 (3.3)	637 (3.2)	620 (2.8)	3.7	5.1	3.9

주: ( )는 연도별 각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2000~2018).

농업법인 출자자 중에 농업인 비중은 92.7%로 영농조합법인(96.8%)이 농업회사법인(83.9%)보다 높았다<그림 3-2>. 농업인 출자자 비율은 조금씩 감소 추세였는데, 특히 2012~2014년 기간에 감소가 많았다(2011년 92.7%에서 2014년 89.2%로 감소). 이는 주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80% 이상을 유지하던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자가 2014년에는 73.8%까지 떨어졌었다(이후 다시 회복세).

〈그림 3-2〉 농업법인 출자자 중 농업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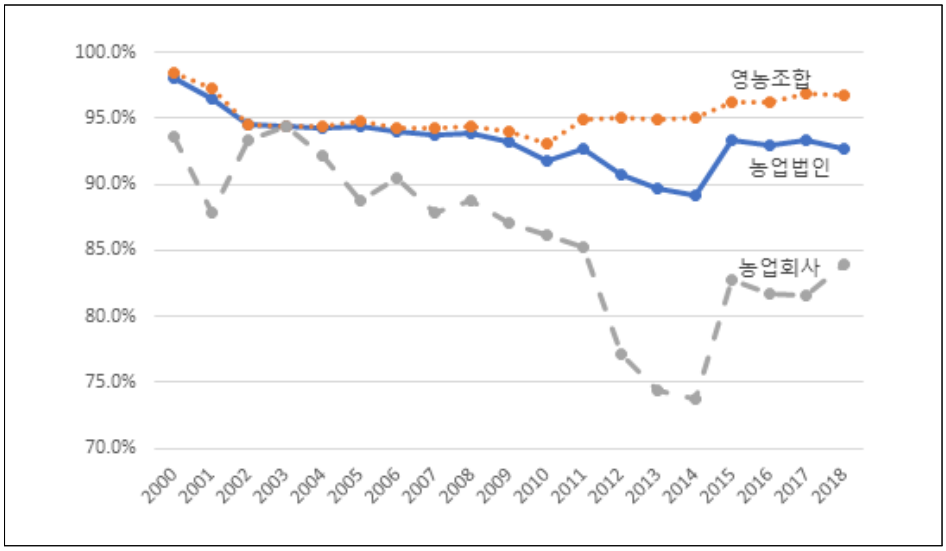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8).

농업법인 전체의 출자금 규모는 2018년 현재 6조 2,970억 원, 실질가격(2015년 기준) 기준으로는 6조 143억 원으로, 2000년 1조 716억 원에서 연평균 10.1%씩 증가하였다<표 3-3>.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의 증가량이 컸다(실질가격 기준 연평균 성장률: 2000년 이후 18.3%, 2010년 이후 20.4%, 2015년 이후 18.9%). 법인당 출자금은 2018년 현재 2.9억 원(실질가격 2.76억 원)이고, 조직 형태에 따라서는 영농조합법인(2.2억 원)보다는 농업회사법인(3.5억 원)이 많았다. 변화를 보면 2000년 실질가격 기준 2.1억 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연평균 1.6%) 추세로, 영농조합법인은 소폭 감소(실질가격 기준 연평균 −0.5%), 농업회사법인은 증가(연평균 5.0%) 추세였다. 2018년 현재 출자금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38.7%, 1억~5억 원 미만이 50.7%, 5억 원 이상이 10.6%였다.

〈표 3-3〉 농업법인 출자금 현황

		연도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전체 출자금 (십억 원)	법인전체	772.6 (1,071.6)	2,347.9 (2,532.8)	4,427.0 (4,427.0)	5,108.3 (5,008.1)	5,405.4 (5,182.5)	6,297.0 (6,014.3)	12.4 (10.1)	13.1 (11.4)	12.5 (10.8)
	영농조합	637.8 (884.5)	1,534.7 (1,655.5)	2,120.5 (2,120.5)	2,587.6 (2,536.8)	2,379.8 (2,281.6)	2,242.1 (2,141.5)	7.2 (5.0)	4.9 (3.3)	1.9 (0.3)
	농업회사	134.9 (187.0)	813.3 (877.3)	2,306.5 (2,306.5)	2,520.7 (2,471.3)	3,025.6 (2,900.9)	4,054.9 (3,872.9)	20.8 (18.3)	22.2 (20.4)	20.7 (18.9)
법인당 출자금 (백만 원)	법인전체	148.7 (206.2)	280.8 (302.9)	253.2 (253.2)	282.4 (276.9)	267.6 (256.6)	289.1 (276.1)	3.8 (1.6)	0.4 (-1.2)	4.5 (2.9)
	영농조합	166.0 (230.2)	224.1 (241.7)	179.8 (179.8)	219.7 (215.4)	193.8 (185.8)	220.6 (210.7)	1.6 (-0.5)	-0.2 (-1.7)	7.1 (5.4)
	농업회사	99.7 (138.3)	537.9 (580.3)	405.2 (405.2)	399.5 (391.7)	382.0 (366.3)	349.0 (333.3)	7.2 (5.0)	-5.3 (-6.7)	-4.9 (-6.3)
출자금 규모	5천만 원 미만	1,688 (32.5)	1,480 (17.7)	4,404 (25.2)	4,367 (24.1)	4,933 (24.4)	5,206 (23.9)	6.5	17.0	5.7
	5천만~ 1억 원 미만	1,296 (24.9)	1,720 (20.6)	2,908 (16.6)	2,831 (15.7)	3,106 (15.4)	3,230 (14.8)	5.2	8.2	3.6
	1억~ 5억 원 미만	1,920 (37.0)	4,121 (49.3)	8,463 (48.4)	8,986 (49.7)	10,179 (50.4)	11,032 (50.7)	10.2	13.1	9.2
	5억 원 이상	291 (5.6)	1,040 (12.4)	1,709 (9.8)	1,904 (10.5)	1,982 (9.8)	2,311 (10.6)	12.2	10.5	10.6

주: 전체출자금, 법인당 출자금의 ( )는 GDP 디플레이터 적용(2015=100)값.
출자금 규모의 ( )는 연도별 비율.
자료: 통계청(2000~2018).

전체 출자금 중에 농업인 출자금 비중[31]을 보면 2018년 현재 77.6%로, 조직 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은 93.5%, 농업회사법인은 68.8%였다. 2013년 75.3%(영농조합 89.2%, 농업회사 57.6%)에서 점차 농업인 출자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비농업인 출자금 비중(2013년 17.3%에서 2018년 13.7%로 감소)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2013년 영농조합 9.5%, 농업회사법인 27.4% → 2018년 4.9%, 18.6%).

31) 통계청에서는 2013년부터 자료 제공.

1.3. 종사자 수 및 경영 규모

농업법인 종사자는 2018년 현재 14.9만 명으로, 2000년 4.8만 명에서 연평균 6.5% 증가하였다<표 3-4>. 하지만 법인당 종사자 수는 2000년 14.3명에서 2018년 6.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종사자 규모가 4인 이하인 농업법인이 대부분(2018년 70.0%)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2000년 31.3%)한 반면, 10인 이상은 감소하였다(2000년 20.1%에서 2018년 10.3%).

〈표 3-4〉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연도(명, (%))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전체 종사자	법인전체	47,996	60,118	115,704	122,265	141,454	149,192	6.5	12.0	8.8
	영농조합	39,017	45,727	69,947	71,921	80,598	71,972	3.5	5.8	1.0
	농업회사	938	1,512	5,692	6,309	7,920	11,617	15.0	29.0	26.8
법인당 종사자	전체	14.3	7.2	6.6	6.8	7.0	6.8	-4.0	-0.7	1.0
	영농조합	16.1	6.7	5.9	6.1	6.6	7.1	-4.4	0.7	6.4
	농업회사	9.6	9.5	8.0	8.0	7.7	6.6	-2.1	-4.5	-6.2
법인당 종사자 규모	4인 이하	1,052 (31.3)	5,276 (63.1)	10,724 (61.3)	11,078 (61.2)	12,284 (60.8)	15,255 (70.0)	16.0	14.2	12.5
	5~9인	1,640 (48.7)	2,189 (26.2)	4,853 (27.8)	4,909 (27.1)	5,579 (27.6)	4,286 (19.7)	5.5	8.8	-4.1
	10~49인	611 (18.2)	855 (10.2)	1,782 (10.2)	1,974 (10.9)	2,196 (10.9)	2,105 (9.7)	7.1	11.9	5.7
	50인 이상	63 (1.9)	41 (0.5)	125 (0.7)	127 (0.7)	141 (0.7)	134 (0.6)	4.3	16.0	2.3

주: 종사자=상근출자자+상용근로자+일용임시근로자
종사자 규모의 ( )는 연도별 각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2000~2018).

종사자 연령대를 보면(2018년 기준) 50대가 30.6%로 가장 많고, 40대가 22.7%, 60대가 22.3%, 30대 이하가 18.1%, 70대 이상이 6.3% 순이었다<그림 3-3>. 2016년 이후 조사된 농업법인 종사자 연령대 변화를 보면 40대 이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2016년 37.0%에서 2018년 40.9%),[32] 50대 이상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였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근출자자가 28.8%, 상용근로자가 40.1%, 임시·일용 근로자가 31.0%를 차지하였다. 농업법인당 평균 상용근로자는 2.75명, 임시·일용 근로자는 2.12명 수준이었다.

〈그림 3-3〉 농업법인 종사자 연령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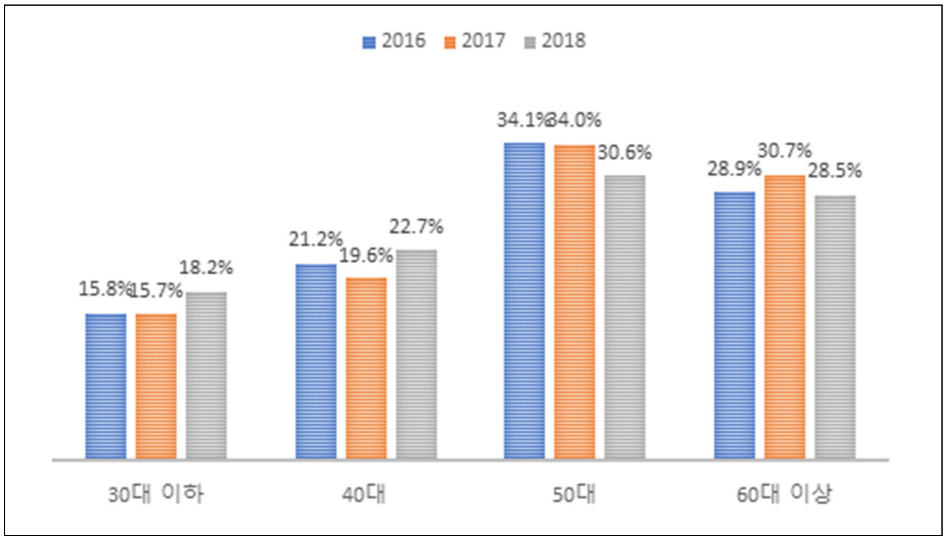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2018).

농축산물 생산 활동이 있는 법인[33]을 중심으로 경영 규모(경지면적, 사육두수)를 분석하였다. 농축산물 생산이 있는 법인은 2018년 현재 작물재배는 7,001개, 가축사육은 1,595개였다<표 3-5>. 농축산물 생산이 있는 법인 수는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감소하였고, 특히 작물재배 법인의 감소가 컸다(2017년 대비 작물재배 법인 914개, 가축사육 법인 14개 감소). 조직 형태별로 영농조합법인 생산 법인 수 감소가 큰 반면(2017년 대비 2018년 1,739개 감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2) 주로 30대 이하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16년(15.8%, 17,272명) 대비 2018년(18.2%, 27,093명) 1만 명가량이 증가하였다.
33) 전체 농업법인 중 농축산물 생산이 있는 법인은 60.7%(2018년 현재).

〈표 3-5〉 생산 농업법인 현황

법인종류		연도(개소)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농업법인	작물재배	1,271	2,958	6,327	7,029	7,915	7,001	9.9	11.4	3.4
	가축사육	522	1,028	1,326	1,433	1,609	1,595	6.4	5.6	6.4
영농조합	작물재배	948	2,490	4,431	4,819	5,115	3,553	7.6	4.5	-7.1
	가축사육	484	812	850	897	962	785	2.7	-0.4	-2.6
농업회사	작물재배	323	468	1,896	2,210	2,800	3,448	14.1	28.4	22.1
	가축사육	38	216	476	536	647	810	18.5	18.0	19.4

자료:통계청(2000~2018).

농업법인의 경지 규모는 2018년 66,388ha로(영농조합 45,704ha, 농업회사 20,684ha), 2000년 이후 매년 7.7%씩 증가해 왔다<표 3-6>. 하지만 법인당 경지면적은 그동안 점차 감소해 왔다(2000년 13.8ha에서 2018년 9.5ha).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당 경지면적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2000년 12.5ha, 2018년 12.9ha), 농업회사법인은 크게 감소하였다(2000년 17.7ha, 2018년 6.0ha). 농업법인의 가축 사육 규모는 2018년 현재 한육우 16만 두, 젖소 1.9만 두, 돼지 309만 두, 닭 46만 수 정도로 2000년 이후 한육우, 젖소는 증가해 왔고, 돼지는 현상 유지, 닭은 감소해 왔다. 한육우, 젖소, 돼지의 경우 조직 형태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닭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감소, 농업회사법인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농업법인의 경지 규모는 전국 경지(2018년 현재 159.5만 ha)의 4.2%로 매년 증가(2000년 0.9%, 2010년 2.0%)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두수는 전국 대비 한육우 5.2%, 젖소 4.5%, 돼지 27.3%, 닭 26.7%로 역시 매년 증가하였다(2010년 한육우 2.6%, 젖소 1.6%, 돼지 21.9%, 닭 13.6%)(통계청 2018).[34)]

34) 전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농업면적조사, 가축사육두수는 가축동향조사 값을 참조함.

〈표 3-6〉 농업법인의 경지 및 사육두수

단위: ha, 두, 수

법인종류			연도(개소)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법인 경지 면적	농업법인		17,529	33,792	59,896	64,017	78,165	66,388	7.7	8.8	3.5
	영농조합		11,814	28,551	48,546	50,506	62,004	45,704	7.8	6.1	-2.0
	농업회사		5,715	5,241	11,350	13,511	16,161	20,684	7.4	18.7	22.1
법인당 경지 규모	농업법인		13.8	11.4	9.5	9.1	9.9	9.5	-2.1	-2.3	0.0
	영농조합		12.5	11.5	11.0	10.5	12.1	12.9	0.2	1.4	5.5
	농업회사		17.7	11.2	6.0	6.1	5.8	6.0	-5.8	-7.5	0.0
법인의 가축 사육 두수	농업법인	한육우	36,731	75,612	133,860	212,541	188,899	160,779	8.5	9.9	6.3
		젖소	2,287	6,717	6,933	12,002	13,814	18,546	12.3	13.5	38.8
		돼지	3,003,347	2,163,056	2,855,246	3,451,273	3,407,422	3,094,349	0.2	4.6	2.7
		닭	1,814,676	202,398	418,219	345,573	398,597	462,067	-7.3	10.9	3.4
	영농조합	한육우	35,867	61,472	102,341	125,995	155,550	119,229	6.9	8.6	5.2
		젖소	2,107	5,588	5,508	7,502	9,719	15,508	11.7	13.6	41.2
		돼지	2,816,103	1,450,800	1,383,774	1,740,607	1,541,391	1,512,423	-3.4	0.5	3.0
		닭	1,792,980	109,296	166,599	129,518	131,124	126,376	-13.7	1.8	-8.8
	농업회사	한육우	864	14,140	31,519	86,546	33,349	41,550	24.0	14.4	9.6
		젖소	180	1,129	1,425	4,500	4,095	3,038	17.0	13.2	28.7
		돼지	187,244	712,256	1,471,472	1,710,666	1,866,031	1,581,926	12.6	10.5	2.4
		닭	21,696	93,102	251,619	216,055	267,473	335,691	16.4	17.4	10.1

자료: 통계청(2000~2018).

2. 농업법인 경영 실태와 재무지표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율은 최근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2000년 전체 농업법인 중에 45.2%만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던 것이, 2013년 88.9%(영농조합 86.8%, 농업회사 94.3%)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7년 기준 79.0%였다(영농조합 73.0%, 농업회사 88.2%)<그림 3-4>. 이후 경영 실태 관련 분석은 농업법인 중에 재무제표 작성 법인 대상의 분석이기에 실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경우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3-4〉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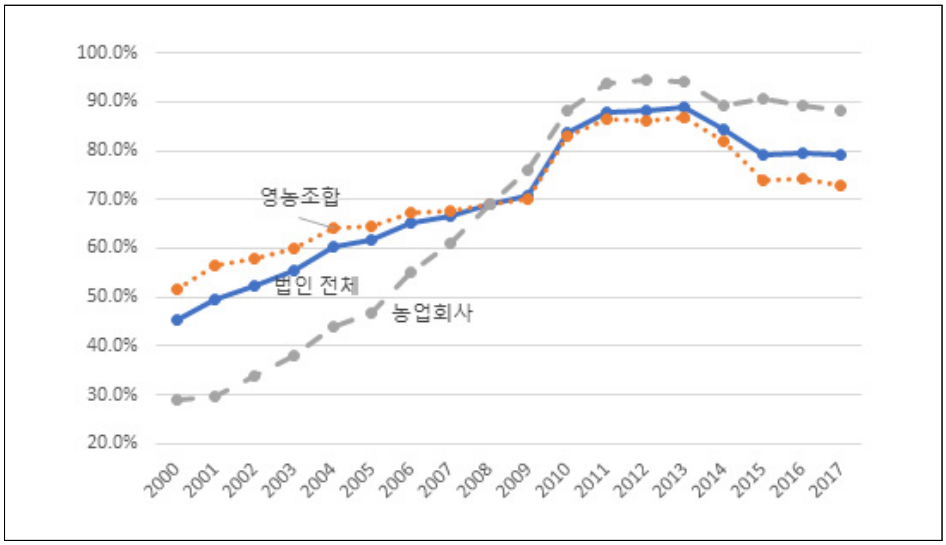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7).

2.1. 경영 실태

농업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 실태를 결산법인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농업법인당 평균 자산은 2018년 기준 16.4억 원, 부채는 10.5억 원, 자본은 5.9억 원이었다<표 3-7>. 농업법인당 평균 명목 자산은 2000년 이후 조금씩 증가(연평균 2.2%)했지만, 실질 자산은 2000년 15.4억 원에서 2018년 현재 15.6억 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농업법인당 평균 부채 역시 2000년 이후 매년 1.4%씩 증가하였지만, 실질 부채는 큰 변함이 없었다(2000년 11.4억 원, 2018년 10.0억 원).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자본은 2000년 이후 매년 4.1%,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1.9% 증가하였다.

〈표 3-7〉 농업법인 자산·부채·자본 현황

			연도(개소, 백만 원, (%))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결산법인 수			1,521	7,009	13,858	14,361	15,954	20,689	15.6	14.5	14.3
자산	결산법인 평균		1,108 (1,537)	1,272 (1,372)	1,346 (1,346)	1,450 (1,422)	1,539 (1,476)	1,638 (1,564)	2.2 (0.1)	3.2 (1.7)	6.8 (5.1)
	규모	1억 원 미만	187 (12.3)	1,175 (16.8)	2,768 (20.0)	2,791 (19.4)	3,074 (19.3)	3,553 (17.2)	17.8	14.8	8.7
		1억~5억 원 미만	584 (38.4)	2,837 (40.5)	5,332 (38.5)	5,377 (37.4)	5,755 (36.1)	7,325 (35.4)	15.1	12.6	11.2
		5억~10억 원 미만	284 (18.7)	1,121 (16.0)	2,045 (14.8)	2,093 (14.6)	2,375 (14.9)	3,164 (15.3)	14.3	13.8	15.7
		10억 원 이상	466 (30.6)	1,876 (26.8)	3,713 (26.8)	4,100 (28.5)	4,750 (29.8)	6,647 (32.1)	15.9	17.1	21.4
부채	결산법인 평균		821 (1,139)	775 (836)	830 (830)	877 (860)	939 (900)	1,051 (1,004)	1.4 (-0.7)	3.9 (2.3)	8.2 (6.5)
	규모	1억 원 미만	462 (30.4)	3,156 (45.0)	6,122 (44.2)	6,144 (42.8)	6,666 (41.8)	7,911 (38.2)	17.1	12.2	8.9
		1억~5억 원 미만	490 (32.2)	1,784 (25.5)	3,565 (25.7)	3,700 (25.8)	3,980 (24.9)	5,411 (26.2)	14.3	14.9	14.9
		5억~10억 원 미만	225 (14.8)	796 (11.4)	1,534 (11.1)	1,625 (11.3)	1,940 (12.2)	2,579 (12.5)	14.5	15.8	18.9
		10억 원 이상	344 (22.6)	1,273 (18.2)	2,637 (19.0)	2,892 (20.1)	3,368 (21.1)	4,788 (23.1)	15.8	18.0	22.0
자본	결산법인 평균		287 (398)	491 (530)	516 (516)	574 (563)	600 (575)	588 (562)	4.1 (1.9)	2.3 (0.7)	4.5 (2.9)
	규모	1억 원 미만	591 (38.9)	2,478 (35.4)	5,574 (40.2)	5,601 (39.0)	6,189 (38.8)	7,727 (37.3)	15.4	15.3	11.5
		1억~5억 원 미만	680 (44.7)	2,996 (42.7)	5,413 (39.1)	5,561 (38.7)	6,056 (38.0)	7,961 (38.5)	14.6	13.0	13.7
		5억~10억 원 미만	153 (10.1)	830 (11.8)	1,427 (10.3)	1,558 (10.8)	1,775 (11.1)	2,391 (11.6)	16.5	14.1	18.8
		10억 원 이상	97 (6.4)	705 (10.1)	1,444 (10.4)	1,641 (11.4)	1,934 (12.1)	2,610 (12.6)	20.1	17.8	21.8

주: 결산법인 평균의 ( )는 GDP 디플레이터 적용(2015=100)값.
자산, 부채, 자본 규모의 ( )는 연도별 각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2000~2018).

농업법인 자산·부채를 조직 형태별로 보면, 2018년 기준 농업회사법인의 자산은 20.4억 원으로 영농조합법인(11.8억 원)보다 많았다<그림 3-5>. 부채 역시 농업회사법인(2018년 기준 13.6억 원)이 영농조합법인(7억 원)보다 많았다. 농업회사법인의 자산과 부채 모두 2009년까지 급상승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였고, 영농조합법인은 같은 기간 큰 변화 없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이다.

〈그림 3-5〉 농업법인 조직 형태별 자산·부채(5년 이동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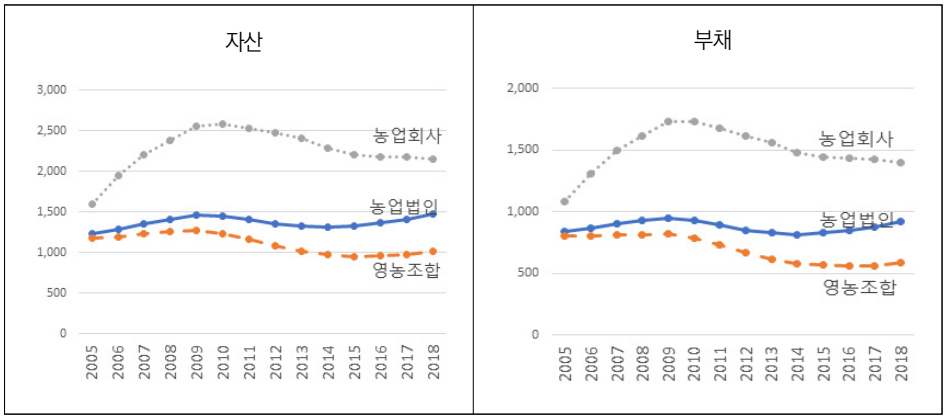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1~2018).

농업법인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8.1억 원으로, 2000년 9억 원에서 매년 5.6%씩 증가하였고,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연평균 1.8%씩 증가하였다<표 3-8>. 농업법인 중 매출 1억 원 미만이 2018년 현재 38.0%, 10억 원 이상은 29.7%였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8년 현재 3.6천만 원(실질가격기준 3.4천만 원)으로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결산 농업법인 중에 결손 법인(당해년도 당기순이익이 전혀 없는 손실만 있는 회사)은 2000년 36.0%, 2015년 36.5%, 2018년 31.5% 등 30%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영업이익 1억 원 미만인 법인은 2018년 현재 84.0%였다.

〈표 3-8〉 농업법인 매출·영업이익 현황

			연도(개소, 백만 원, (%))						연간 변화율(%)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00~'18	'10~'18	'15~'18
결산법인 수			1,521	7,009	13,858	14,361	15,954	20,689	15.6	14.5	14.3
결손법인 수			547 (36.0)	2,020 (28.8)	5,065 (36.5)	5,183 (36.1)	5,848 (36.7)	6,518 (31.5)	14.8 (-0.7)	15.8 (1.1)	8.8 (-4.8)
매출	결산법인 평균		900 (1,248)	1,727 (1,863)	1,651 (1,651)	1,742 (1,708)	1,792 (1,718)	1,814 (1,733)	4.0 (1.8)	0.6 (-0.9)	3.2 (1.6)
	규모	1억 원 미만	512 (33.7)	2,494 (35.6)	6,117 (44.1)	6,209 (43.2)	6,816 (42.7)	7,858 (38.0)	16.4	15.4	8.7
		1억~5억 원 미만	487 (32.0)	1,627 (23.2)	2,827 (20.4)	2,865 (19.9)	3,243 (20.3)	4,684 (22.6)	13.4	14.1	18.3
		5억~10억 원 미만	190 (12.5)	762 (10.9)	1,267 (9.1)	1,254 (8.7)	1,423 (8.9)	1,997 (9.7)	14.0	12.8	16.4
		10억 원 이상	332 (21.8)	2,126 (30.3)	3,647 (26.3)	4,033 (28.1)	4,472 (28.0)	6,150 (29.7)	17.6	14.2	19.0
영업이익	결산법인 평균		21 (29)	33 (36)	46 (46)	49 (48)	64 (61)	36 (34)	3.0 (0.9)	1.1 (-0.7)	-7.8 (-9.6)
	규모	적자	565 (37.1)	2,687 (38.3)	6,279 (45.3)	6,264 (43.6)	7,071 (44.3)	7,872 (38.0)	15.8	14.4	7.8
		1억 원 미만	794 (52.2)	3,345 (47.7)	5,602 (40.4)	5,865 (40.8)	6,385 (40.0)	9,516 (46.0)	14.8	14.0	19.3
		1억~5억 원 미만	149 (9.8)	825 (11.8)	1,616 (11.7)	1,840 (12.8)	2,000 (12.5)	2,771 (13.4)	17.6	16.4	19.7
		5억 원 이상	13 (0.9)	152 (2.2)	361 (2.6)	392 (2.7)	498 (3.1)	530 (2.6)	22.9	16.9	13.7
결산법인 당기순이익 평균			5 (7)	43 (46)	48 (48)	45 (44)	60 (58)	36 (34)	11.6 (9.2)	-2.2 (-3.7)	-9.1 (-10.9)

주: 결산법인 평균의 ( )는 GDP 디플레이터 적용(2015=100)값.
결손법인의 ( )는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의 비율.
매출, 영업이익 규모의 ( )는 연도별 각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2000~2018).

농업법인 매출·영업이익을 조직 형태별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2018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23.6억 원으로 영농조합법인(12.0억 원)보다 2배가량 많았고, 영업이익 역시 농업회사법인이 4.7천만 원으로 영농조합법인(2.3천만 원)보다 2배 규

모였다<그림 3-6>. 농업법인 매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자본, 부채와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급상승했지만, 이후 유지 및 소폭 감소 추세이고,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감소 추세였다. 영업이익은 2013년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두 조직 형태 모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3-6〉 농업법인 조직 형태별 매출·영업이익(5년 이동평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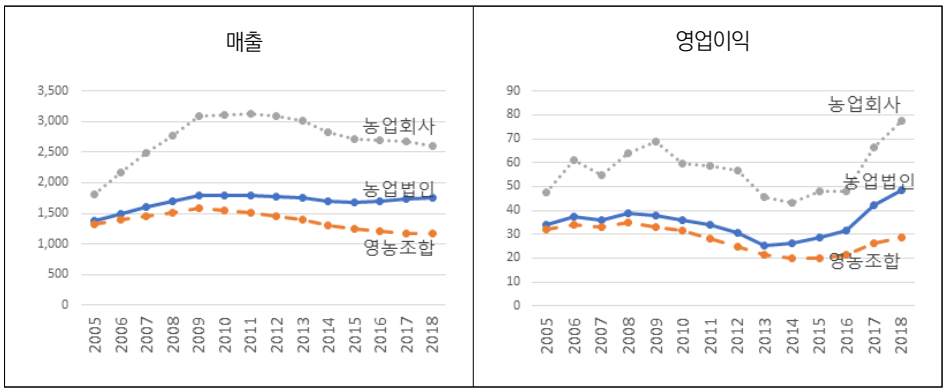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1~2018).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농업법인 비중(종사자, 매출)

전체 농업 취업자 및 총생산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수 통계[35]를 근거로 추산한 농업 취업자 수를 농업법인 종사자 수와 비교해 보면, 농업법인 종사자가 전체 농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1.4%였던 것이 2010년에는 4.0%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11.6%로 증가였다. 농업법인의 매출이 전체 농업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기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2.4%였던 것이 2010년에는 7.2%, 2018년에는 15.6%에 이르고 있다.

35) 농업 취업자 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를 토대로 추산하였다. 경활조사에서는 대분류(농림어업)로 통계를 제시하기에 지역별 고용조사(중분류) 통계를 기초로 농림어업 중 농업 취업자 비중(2019년 95.6%)을 고려하여 재추산하였다(마상진 외 2019).

〈그림 3-7〉 농업법인 종사자·매출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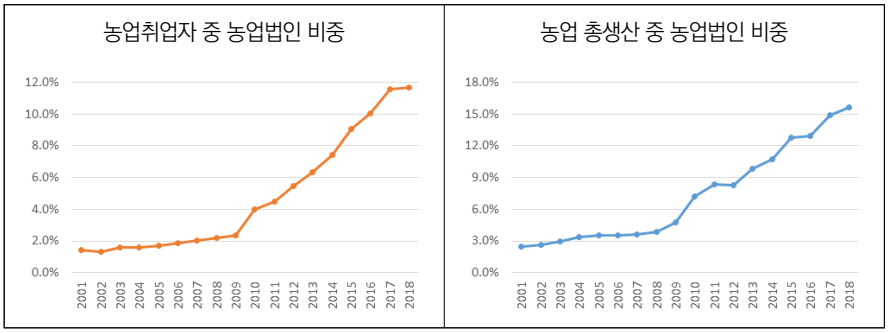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8), 통계청(2001~2018), 통계청(2019), 농림축산식품부(2019c).

2.2. 재무지표

농업법인의 재무지표로 기업체 재무 분석에 있어 기본이 되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을 분석하였다(김일곤 2019). 통계청 농업법인 조사 자료에서 가용 자료를 중심으로 안정성은 부채비율(부채/자본),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 자산 증가율 등을 분석하였다.

안정성 지표로 농업법인의 부채비율은 2018년 현재 178.7%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 3-8>. 부채비율 변화를 5년 이동평균 값으로 보면 2005년에는 219.9%이던 것이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13년 이후 160%대를 유지하여, 2018년 165.2%였다. 일반 중소기업의 부채비율(2018년 현재 159.5%, 5년 이동평균 169.5%)(한국은행 2016~2019)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조직 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2018년 현재 146.2%)보다 농업회사법인(199.0%)의 부채비율이 높았다.

〈그림 3-8〉 농업법인 부채비율 변화(5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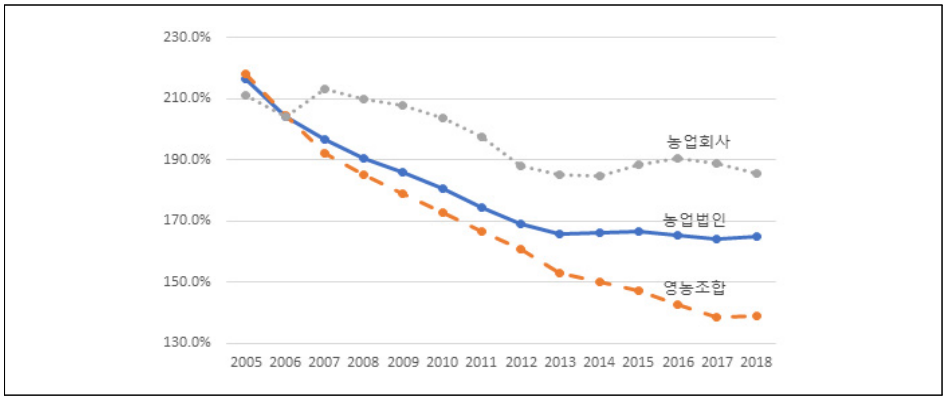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8).

수익성 지표로 농업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현재 2.0%였다<그림 3-9>. 농업법인의 영업이익률 변화(5년 이동평균)는 2005년 2.5% 수준에서 2013년 1.4%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상승하여 2018년 현재 2.8% 수준이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한국은행 2019) 영업이익률은 3.5%(제조업 3.8%, 비제조업 3.6%)(5년 이동평균 3.6%)로 농업법인이 조금 낮은 수준이다(5년 이동평균 기준 농업법인이 일반 중소기업의 77.7%). 조직 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2018년 1.9%)과 농업회사법인(2.0%)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3-9〉 농업법인 영업이익률 변화(5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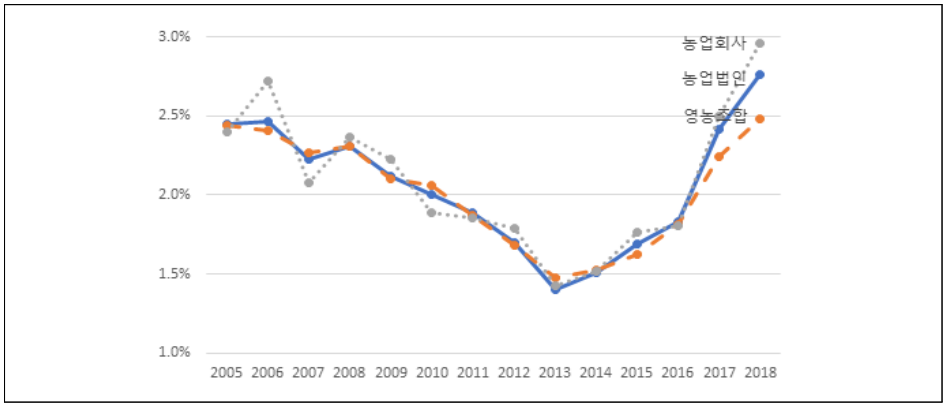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8).

성장성 지표와 관련하여 매출액 증가율은 2018년 현재 1.2%, 자산 증가율은 6.4%였다<그림 3-10~3-11>. 매출액 증가율 변화를 보면, 5년 이동평균 기준으로 2005년 14.0% 수준에서 2014년까지 감소하다 이후 증가하여 2018년 1.8%였다. 자산 증가율은 5년 이동평균 기준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상승하다 2012년까지 감소한 후(2012년 −3.2%),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2018년 현재 4.1%였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현재 매출액 증가율 5.9%(제조업 2.8%, 비제조업 7.6%)(5년 이동평균 7.9%), 자산 증가율 10.9%(제조업 6.2%, 비제조업 13.5%)(5년 이동평균 10.6%)로, 농업법인은 그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5년 이동평균 비교 시 매출액 증가율은 22.7%, 자산 증가율은 38.7%). 조직 형태별로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 증가율 감소폭(2018년 현재 5년 이동평균 −2.8%)이 영농조합법인(-0.3%)보다 컸다. 자산 증가율 역시 영농조합법인(4.8%)이 농업회사법인(-1.3%)보다 양호하였다.

〈그림 3-10〉 농업법인 매출액 증가율(5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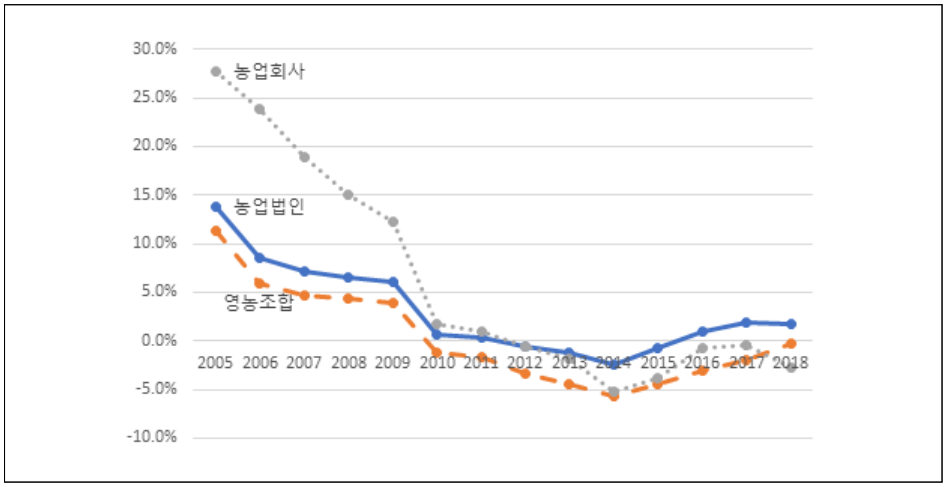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8).

〈그림 3-11〉 농업법인 자산 증가율(5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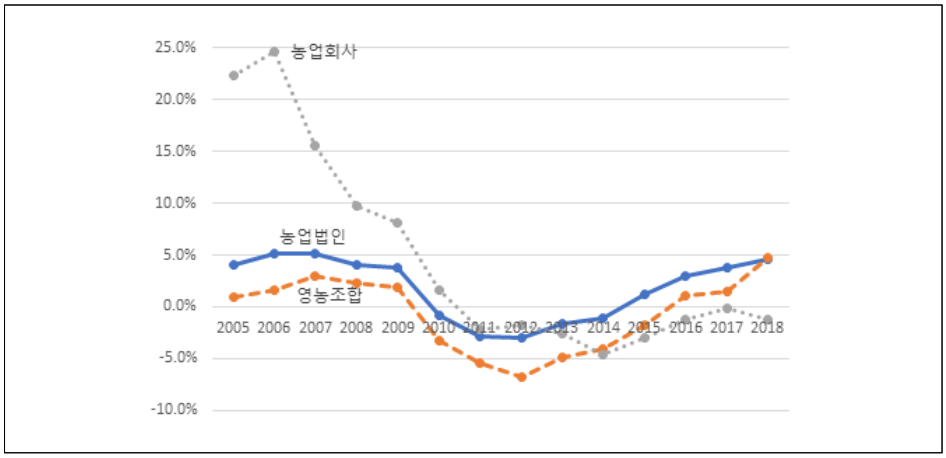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0~2018).

3. 농업법인의 효율성과 결정 요인

조직이나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효율성(efficiency)이다(고길곤 2017).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농업법인 관련 다양한 투입· 산출 요인 간의 효율적 조합 상태를 분석하고자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법을 통해 농업법인의 효율성 지수를 구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효율성에 관계된 결정 요인을 도출하는 2단계 분석법(two-stag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2018년 현재 농업법인의 경영 관련 자료이다.[36]

36)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2018년 현재 21,780개의 농업법인이 운영 중인데,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는 5,138개였다. 통계청 조사 기준 농업법인의 평균 매출은 16억 9천만 원이었는데,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서는 36억 1천만 원으로, 한국기업데이터 보유 농업법인들이 평균적인 농업법인보다 경영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법인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농업법인 효율성 분석 결과를 농업법인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1. 농업법인 효율성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경영 현황 파악과 관련한 양적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투입한 노력이나 자원 대비 거두어들인 성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고도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동일한 성과를 얻는 데 소요된 자원이 더 적다는 의미이다(이정동·오동헌 2012: 1).

농업법인 효율성 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법[37]을 활용하였다. 자료포락분석법 중에서도 이상 관측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부트스트래핑 DEA(Simar and Wilson 1998)를 적용하였다(권오상·김한호 2009; 이상호 외 2011). DEA는 불변규모수익(CCR 모형) 또는 가변규모수익(BCC 모형) 가정하에 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투입(input based) 또는 산출(out based)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불변규모수익 가정하에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투입기준 효율성 분석(input-based CCR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기업데이터의 2018년 기준 5,138개의 농업법인 자료였다.

(수식1)

$$\theta(\text{효율성}) = \frac{\sum_{j=1}^{n} \lambda_1 Y_{1j}(\text{매출액}) + \lambda_2 Y_{2j}(\text{순수익})}{\sum_{j=1}^{n} \lambda_1 X_{1j}(\text{종사자수}) + \lambda_2 X_{2j}(\text{매출원가}) + \lambda_3 X_{3j}(\text{판매관리비})}$$

효율성 분석 모형의 투입·산출 요소는 선행연구 검토(신인식 외 2005; 권오상·김한호 2009; 안상돈 외 2009; 장동헌 2009; 이상호 2010; 이상호 외 2011; 노미현

37) 선형계획 모형에 근거한 회귀분석과 달리 사전에 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동일 목적의 의사결정 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실제 자료를 적용하여 DMU들의 선형결합으로 구성한 생산 프론티어(production frontier)를 도출한 후, DMU들이 생산 프론티어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이다(이정동·오동헌 2012).

2014; 조가옥 외 2015)[38]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투입요소로는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한 종사자 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산출요소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매출액과 순수익을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투입·산출 요소들의 기초통계는 <표 3-9>와 같다.

〈표 3-9〉 농업법인 효율성 분석 투입·산출 요소 기본통계

요소		평균	표준편차	범위	
				최솟값	최댓값
투입 요소	종사자 수(명)	9.2	15.6	1	351
	매출원가(백만 원)	3,744.9	8,100.4	0.1	204,812.6
	판매·관리비(백만 원)	498.6	1,174.2	0.0	38,143.4
산출 요소	매출액(백만 원)	4,369.3	9,094.8	0.0	221,303.0
	순수익(백만 원)	99.4	694.6	-8,896.1	26,863.2

자료: 한국기업데이터(20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효율성 분석 결과, 분석 대상 농업법인의 평균 효율성[39]은 0.471로 0.5 미만이 51.6%, 0.5~0.8 미만이 48.2%, 0.8 이상은 0.2%였다<표 3-10>. 조직 형태별로는 농업회사법인이 0.48로 영농조합법인(0.454)보다 효율성이 높았고, 주 사업 분야별로는 축산 분야 농업법인이 0.537, 유통 농업법인이 0.540으로 높은 반면, 가공법인(0.438) 및 작물재배 법인(0.39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중치 변수인 람다값을 근거로 규모의 경제성[40]을 분석한 결과 규모수익체증이 58.4%, 규모수익불

38) 신인식 외(2005)는 지역농협 분석에서 조합원 수, 직원 수, 총자산을 투입요소로 경제사업, 신용사업, 당기순손익을 산출요소로, 권오상·김한호(2009)는 산지유통조직 분석에서 전문인력, 자본비용, 차입금을 투입요소로 매출, 이자수입, 유통매출증가율, 시설평균가동률, 공동계산율, 교육실적을 산출요소로, 안상돈 외(2009)는 지역농협분석에서 가동일수, 고정투자, 직원 수, 판매·관리비, 인건비, 제조원가, 감가상각비를 투입요소로, 매출총이익을 산출요소로, 장동헌(2009)은 품목농협 분석에서 직원 수, 조합원 수, 사업관리비를 투입요소로 경제사업(취급총액), 신용사업(상호금융, 정책금융 편잔합계), 공제사업(공제유효계약액)을 산출요소로, 이상호(2010)와 이상호 외(2011), 조가옥 외(2015)는 농업법인 분석에서 종사자 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투입요소, 매출액을 산출요소로, 노미현(2014)은 임직원 수, 영업비용, 자산총계를 투입요소로, 매출액은 산출요소로 분석하였다.

39) CCR에서는 기술효율성을 의미한다. 부트스트랩 DEA에 의한 기술효율성 값은 일반 DEA 기술효율값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이상호 외 2011).

변이 1.1%, 규모수익체감이 40.6%로, 농업법인 중에 상당수가 투입에 따라 산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규모의 경제성 측면에서 투입이 추가로 필요한 과소 투입 상황인 농업법인이 많았다. 조직 형태별로는 농업회사법인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분야별로는 농업 생산 외 법인보다는 농업 생산 법인의 규모수익체증 경우가 많았다.

〈표 3-10〉 농업법인 효율성 및 규모경제성 현황

		조직 형태		주 사업 분야					전체
		영농 조합	농업 회사	생산		가공	유통	기타	
				작물	축산				
기술 효율성	0.5 미만	55.8%	49.3%	69.2%	35.3%	59.8%	35.8%	66.4%	51.6%
	0.5~0.6 미만	16.1%	15.5%	11.6%	21.4%	13.2%	19.2%	14.1%	15.7%
	0.6~0.7 미만	15.5%	19.2%	12.2%	23.1%	14.1%	23.8%	13.9%	17.9%
	0.7~0.8 미만	12.5%	15.7%	6.8%	18.5%	12.9%	21.1%	5.4%	14.6%
	0.8 이상	0.1%	0.3%	0.2%	1.7%	0.1%	0.1%	0.2%	0.2%
	평균	0.454	0.480	0.392	0.537	0.438	0.540	0.407	0.471
규모 경제성	IRS	57.5%	53.9%	55.2%	62.3%	43.4%	46.0%	61.1%	58.4%
	CRS	0.3%	0.6%	0.5%	0.8%	1.4%	0.1%	0.4%	1.1%
	DRS	42.1%	45.5%	44.3%	36.9%	55.2%	53.9%	38.5%	40.6%

주: IRS: 규모수익체증, CRS: 규모수익불변, DRS: 규모수익체감
자료: 한국기업데이터(2018).

3.2. 효율성 결정 요인

현재 효율성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 도출을 위해 어떤 특성이 농업법인의 효율성에 관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효율성 수치를 종속변인으로 농업법인 관련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최소자승법에 기초

40) 람다(λ)값 합이 1 이상이면 IRS, 1이면 CRS, 1 이하면 DRS이다(이상호 외 2011). 투입을 1% 증가시킬 때 산출도 1% 증가하는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 투입을 1% 증가시킬 때 산출이 1% 이상 증가하는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투입을 1% 증가시킬 때 산출이 1% 이하로 증가하는 규모수익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 DRS)이다.

한 다중회귀분석[41]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권오상·김한호 2009; 이상호 외 2011; 이명헌·황수철 2015)[42]를 바탕으로 가용한 한국기업데이터 제공자료를 기초로 수식 2와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지역(동, 읍면), 조직 형태(영농조합, 농업회사), 사업 유형 개수, 사업 분야(작물, 축산, 가공, 유통, 서비스, 관광)별 비중, 운영기간, 자산 규모, 자기자본비율, 출자자 수, 농업인출자자비율, 출자금, 농업인출자금비율, 종사자 수, 청년(40대 이하)종사자비율 등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수식 2)

$$
\begin{aligned}
&Y(\text{효율성}) = a + b_1X_1(\text{지역}) + b_2X_2(\text{조직형태}) + b_3X_3(\text{사업유형 개수}) \\
&+ b_{4\sim9}X_{4\sim9}(\text{사업유형별비중 : 작물, 축산, 가공, 유통, 서비스, 관광}) \\
&+ b_{10}X_{10}(\text{운영기간}) + b_{11}X_{11}(\text{운영기간}^2) + b_{12}X_{12}(\text{자산규모}) \\
&+ b_{13}X_{13}(\text{자기자본비율}) + b_{14}X_{14}(\text{출자자 수}) + b_{15}X_{15}(\text{농업인출자자비율}) \\
&+ b_{16}X_{16}(\text{출자금}) + b_{17}X_{17}(\text{출자금}^2) + b_{18}X_{18}(\text{농업인출자금비율}) \\
&+ b_{19}X_{19}(\text{종사자 수}) + b_{20}X_{20}(\text{종사자 수}^2) + b_{21}X_{21}(\text{청년종사자비율}) + e
\end{aligned}
$$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33.2%, p값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표 3-11>. 농업법인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관련 요인에는 지역, 사업 유형 개수, 사업비중(축산, 유통, 관광), 운영

41) 일반적으로 회귀모형의 종속변수가 특정한 값의 범위(0~1)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토빗분석을 많이 사용하지만, 잔차의 정규성이 확보되면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이정동·오동헌 2012). 이 연구에서는 일반 효율성 분석 연구(보통 100사례 미만)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이 연구는 5,138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 DEA를 사용하여 효율성 값이 1에 치우치지 않고 정규성이 확보되었다(〈표 3-10〉 참조). 다중회귀분석의 Durbin-Watson 검정을 한 결과, 1.944로 자기상관성이 무시할 수준이었다(Durbin-Watson 값이 2에 가까우면 적합, 0이나 4에 가까우면 부적합). 실제 연구진이 최소자승법과 토빗분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변인 구명 결과에 두 분석법 간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더 많을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자승법 결과를 제시하였다.

42)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과 관련한 농업 분야 연구는 많지 않다. 권오상·김한호(2009)는 산지유통 및 수급안정 조직과 관련하여 출자액, 조합원 수, 농협 여부, 지역, APC 보유 여부, 매취율, 유통판매율, 이자수입, 시설가동률, 공동계산율, 교육실적 등을 투입하였다. 이상호 외(2011)는 농업법인 효율성과 관련하여 자산, 자본, 법인 유형, 지역, 사무실 유무, 종사자 수, 운영기간 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명헌·황수철(2015)은 과수농가 기술효율성과 관련하여 재배면적, 가족노동투입시간을 투입하였다.

기간, 자산, 자기자본비율, 농업인출자자비율, 출자금 규모, 농업인출자금비율, 종사자 수, 종사자 중 청년비율 등이 있었다. 조직 형태(영농조합, 농업회사), 사업비중(작물, 가공, 서비스), 출자자 수 등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읍면지역 소재한 법인에 비해 동 지역에 소재할수록, 사업 유형 개수가 적을수록, 사업 분야로 축산이나 유통 비중이 높고, 관광 비중이 낮을수록, 업력(운영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일수록, 자산 규모가 크면서도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법인일수록, 농업인출자자비율이 높을수록, 출자금 규모가 적정 규모 이상일수록, 농업인 이외 출자금 비율이 높을수록, 종사자 규모가 적정 규모 이상일수록, 종사자 중 청년비율이 높을수록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높았다.

〈표 3-11〉 농업법인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결과

독립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319	.021		14.885	.000
조직 형태(영농조합, 농업회사)		-.006	.006	-.015	-1.116	.264
지역(동, 읍면)		-.034	.006	-.073	-5.910	.000
사업 유형 개수		-.019	.004	-.050	-4.333	.000
사업 유형별 비중	작물	.000	.000	-.019	-.938	.348
	축산	.001	.000	.069	4.193	.000
	가공	.000	.000	.048	2.097	.036
	유통	.001	.000	.276	11.722	.000
	서비스	.000	.000	.009	.676	.499
	관광	-.001	.000	-.053	-4.241	.000
운영기간		-.006	.001	-.166	-5.170	.000
운영기간^2		.000	.000	.113	3.759	.000
자산 규모		.048	.001	.535	37.164	.000
자기자본비율		.001	.000	.132	11.205	.000
출자자 수		.000	.000	.003	.287	.774
농업인출자자비율		.004	.002	.056	2.150	.032
출자금		.000	.000	-.076	-3.189	.001
출자금^2		.000	.000	.066	2.850	.004
농업인출자금비율		-.049	.016	-.078	-3.012	.003
종사자 수		-.005	.000	-.384	-16.791	.000
종사자 수^2		.000	.000	.228	10.978	.000
청년비율		.031	.007	.053	4.415	.000

주: 종속변인=기술효율성
R=0.570(수정된 R^2=0.332)
F=117.4(21,5116) $p<0.001$
자료: 한국기업데이터(2018).

4. 요약 및 시사점

농업법인은 그동안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을 해 왔다(2000년 이후 2018년 기준 법인 수 4.2배, 출자자 수 2.6배, 출자금(실질가격) 5.6배, 종사자 수 3.1배). 초반에는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농업회사법인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2015년 이후 영농조합법인 수는 정체된 상황). 사업 분야별로는 초기에는 생산법인 위주로 증가하다가 점차 가공·유통 등 비생산 법인 위주로 증가하였다(생산분야 농업법인은 2015년 이후 정체된 상황). 운영 주체별로는 대표자 단독 운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인당 출자자 수, 종사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출자자 중에 농업인 비중이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농업법인당 출자금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감소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증가하고 있었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를 보면, 실질가격 기준으로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 변화가 거의 없었고, 매출은 2000년 이후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하였다(농업회사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규모, 매출 등에서 영농조합법인보다 2배가량 많음). 농업법인의 재무지표(안정성, 수익성, 성장성)를 보면 부채비율(안정성)은 100% 중반 수준으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보다 높았고, 영업이익률(수익성)은 2%대, 매출액 증가율은 2%, 자산 증가율은 4% 수준으로,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보면, 안정성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 성장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농업법인의 효율성 분석 결과 과반수 농업법인이 효율성 0.5 미만이었고, 60%의 농업법인은 투입 증가에 따라 산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규모수익체증의 상황으로 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여러 분야 사업보다 적은 사업 분야에 특화할수록, 자산 규모가 크면서도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농업인 출자자가 많을수록, 외부투자를 많이 받을수록, 종사자 중에 청년비율이 높을수록, 운영기간과 출자금, 종사자 수는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서비스 등의 사업

분야별 특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농업인의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인력 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제4장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요구

제4장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요구

이 장에서는 농업법인 관련 통계와 이 연구에서 수행한 농가 및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와 요구,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요구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와 요구

농업법인은 농가 조직화를 통한 협업적 경영의 정신하에 태동한 제도이다. 어떤 농가가 어떤 목적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농업법인 참여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농업법인 참여 관련 애로사항과 요구는 무엇인지 등 농업법인 참여 실태와 관련 요구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1.1. 농업법인 참여 현황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2015년 현재 총 78,294농가였다.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그동안의 농가 수 감소(2000년 이후 2015년까지 29.5만 농가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천여 농가(2000년 이후 2015년까지 3.4만 농가 증가)가 새로 농업법인에 참여하여 2000년 전체 농가 중 농업법인 참여 농가 비중은 3.2%에서 2015

년은 7.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2015). 농업법인 참여 농가 대부분은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015년 기준 영농조합 참여 농가는 6.7%, 농업회사 참여 농가는 0.6%로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92.2%는 영농조합법인이었다.

〈표 4-1〉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현황

단위: 농가, (%)

		2000	2005	2010	2015
농업법인 참여 여부	불참	1,338,702 (96.8)	1,223,952 (96.2)	1,140,163 (94.0)	1,010,224 (92.8)
	참여	44,766 (3.2)	48,956 (3.8)	70,242 (6.0)	78,294 (7.2)
참여 형태	영농조합 참여	41,532 (3.0)	44,302 (3.5)	67,003 (5.7)	72,881 (6.7)
	농업회사 참여	3,471 (0.3)	4,898 (0.4)	3,558 (0.3)	6,180 (0.6)
	둘다 참여	220 (0.0)	244 (0.0)	304 (0.0)	747 (0.1)
전체 농가		1,383,468 (100.0)	1,272,908 (100.0)	1,177,318 (100.0)	1,088,518 (100.0)

자료: 통계청(2000~2015).

농가의 주요 특성별 법인 참여 여부를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농경력은 10년 이상의 중견경력일수록, 영농 규모가 클수록 참여 비중이 높았다<표 4-2>.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참여 농가 비중은 27.3%[43](본인주도 7.5%, 여러 농민 참여 19.7%), 미참여는 72.7%(참여 경험이 전혀 없음 52.8%, 미출자 참여 9.0%, 과거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탈퇴 또는 도산, 휴업, 해체 등으로 미운영인 경우가 11.0%)였다. 연령, 경력, 영농 규모에 따라 농업법인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값 0.05에서 판단함).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보다는 50대

43) KREI 통신원 농가의 경우 일반 농가보다 학력 수준이나 농업 매출 등의 측면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기에 농업법인 참여 비중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가 특성별 경향성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 영농경력별로는 10년 이하보다는 11년 이상에서, 영농 규모별로는 소규모, 중소규모보다는 중규모, 중대규모 농가에서 농업법인 참여가 활발하였다.

〈표 4-2〉 농가 특성별 농업법인 참여 여부

단위: %

		사례 수 (명)	미참여				참여			통계검증	
			참여 경험 없음	단순 이용 (미출자)	과거 참여		본인 주도 운영 ①	여러 농민 참여 ②	①+②	x2 (df)	p
					현재 탈퇴	현재 미운영					
연령대	40대 이하	118	43.2	11.9	6.8	5.1	11.9	21.2	33.1	28.5 (3)	0.00
	50대	228	43.9	7.0	5.7	5.3	13.2	25.0	38.2		
	60대	434	54.4	8.5	4.1	6.7	5.5	20.7	26.3		
	70대 이상	284	61.6	10.2	6.7	3.9	4.2	13.4	17.6		
영농 경력	5년 이하	142	62.7	8.5	3.5	4.2	9.2	12.0	21.1	13.3 (3)	0.00
	6~10년	222	57.2	10.4	4.1	3.6	5.9	18.9	24.8		
	11~20년	197	43.1	8.6	5.6	5.1	13.2	24.4	37.6		
	21년 이상	503	51.9	8.7	6.6	6.8	5.6	20.5	26.0		
주품목	미곡	261	58.2	7.7	5.0	5.7	9.2	14.2	23.4	12.3 (6)	0.06
	밭작물	64	53.1	7.8	6.3	4.7	9.4	18.8	28.1		
	과수	311	52.1	11.9	4.5	4.5	5.1	21.9	27.0		
	채소	212	53.3	8.0	4.7	8.0	3.8	22.2	25.9		
	특용	102	49.0	8.8	10.8	2.0	13.7	15.7	29.4		
	축산	61	34.4	8.2	3.3	9.8	8.2	36.1	44.3		
	기타	40	50.0	7.5	7.5	2.5	17.5	15.0	32.5		
영농 규모	소규모	362	64.4	8.6	6.6	3.3	5.5	11.6	17.1	38.5 (3)	0.00
	중소규모	289	54.0	9.0	4.2	6.2	5.9	20.8	26.6		
	중규모	264	43.9	9.1	5.3	5.7	9.1	26.9	36.0		
	중대규모	143	38.5	9.1	4.9	8.4	13.3	25.9	39.2		
전체		1064	52.8	9.0	5.5	5.5	7.5	19.7	27.3		

주 1) 농가 특성 결측치는 제외한 값임.
2) $x2$는 참여, 미참여 여부에 대하여 실시.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농가의 농업법인 활동 목적은 농업 생산 외 부가가치 창출, 농가 조직화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법인 활동 농가의 62.4%가 생산 외 부가가치 창출을, 54.1%가 농가 조직화를 목적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었다<표 4-3>. 이 밖에 정책 지원사업 수혜(32.8%), 생산규모화(27.2%), 마을 공동사업 추진(19.0%), 절세 혜택(4.5%), 원활한 외부투자 유치(2.8%) 등이 있었다. 영농 규모에 따라 농업법인 활동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규모가 클수록 생산규모화, 지역농가 조직화 목적이 많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가공·유통·판매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마을 공동사업 추진 등의 목적이 많았다. 이를 통해 대다수 농가의 농업법인 활동은 농업생산 이외 활동 참여의 수단 그리고 기존의 생산자 조직(작목반, 품목연구회, 품목협회 등)과 마을공동사업 활동의 조직화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4] 또한 정책 지원사업이 농업법인 활동의 주요한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표 4-3〉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농업법인 활동 목적

단위: %

영농 규모	사례 수 (명)	농업법인 활동 목적 (복수응답)							
		생산 규모화	부가가치 창출	지역 농가 조직화	마을 공동 사업 추진	외부 투자 유치	정책 지원 사업 수혜	절세 혜택	기타
소규모	62	19.4	61.3	48.4	21.0	3.2	29.0	0.0	9.7
중소규모	77	26.0	68.8	53.2	20.8	2.6	35.1	7.8	2.6
중규모	95	26.3	64.2	55.8	21.1	3.2	33.7	6.3	3.2
중대규모	56	39.3	51.8	58.9	10.7	1.8	32.1	1.8	0.0
총계	290	27.2	62.4	54.1	19.0	2.8	32.8	4.5	3.8

주: %는 행별 값이며, 농업법인 참여 사례 대비 비율임.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44) 농업법인 참여 농가 설문조사에서 추가로 농업법인 설립 이전 생산자 활동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작목반(57.9%), 농업인단체 활동(47.9%), 품목연구회(34.1%), 마을공동사업(14.1%), 품목협회(7.9%) 등이 있었다.

지역 생산자조직의 농업법인 전환 사례: 영동사과영농조합법인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회(타 지역 사과과원 방문, 농산물검역소 및 수출바이어 등을 통한 사과 수출 교육 등 농업기술교육과 인공수분 실습교육 등 실시) 활동을 하던 중, 연구회원들이 영동을 브랜드로 한 사과 수출을 기획(당시 타 지자체에서 활발히 과일 수출을 시작했었고, 영동에서는 사과 이외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지에 배와 포도, 복숭아 수출을 해 왔음), 수출회(영동사과수출협의회)를 조직하여 2009년부터 수출을 하고 있다. 사과 수출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과연구회 50여 명의 출자를 받아(출자금 1인당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도시에서 사업 경험이 있던 총무가 지역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2012년 영동사과수출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를 하였다.

자료: 이 연구의 사례조사.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는 대부분 농가 경영의 보완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가 설문조사에서 농업법인 참여 농가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농가를 통한 매출과 농업법인을 통한 매출 비중을 보면, 농가 매출이 법인 매출보다 많은 경우가 58.6%, 법인 매출이 농가 매출보다 많은 경우가 16.9%, 농가 매출과 법인 매출이 비슷한 경우가 10.3%, 농가 매출이 곧 법인 매출인 경우는 9.7%였다<그림 4-1>. 농가의 농업법인을 통한 활동 내용을 보면 농업 생산이 39.4%, 유통·판매 27.3%, 가공 9.3%, 체험·관광·휴양 4.2%, 농업서비스(위탁영농·농작업) 3.5% 등이었다.

〈그림 4-1〉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매출 비중 및 농업법인 활동 내용

n=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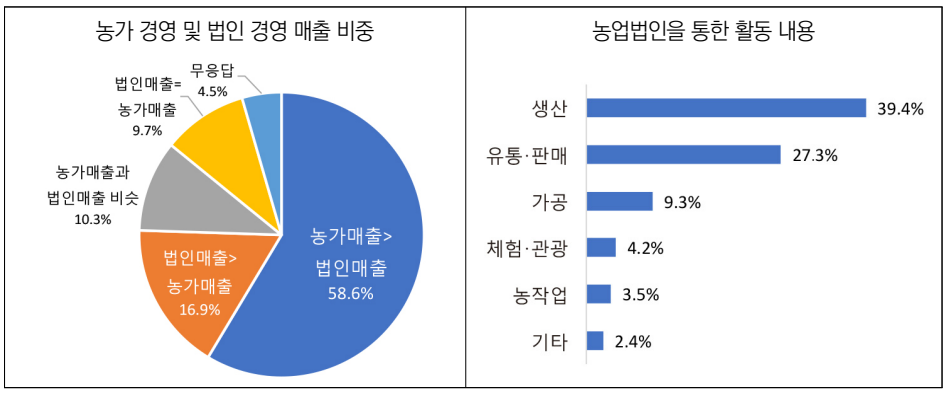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1.2. 농업법인 참여 성과와 요구

농가들은 농업법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개인적, 지역 사회 관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참여 농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농업법인 참여를 통해 지역 농업·농민의 조직화(49.1%), 다각화된 농업활동(39.7%),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30.8%), 소득·일자리 창출(30.5%), 농가 경영의 과학화(16.2%), 후계 및 전문인력 확보(11.5%)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개별 농가, 지역 차원의 성과가 없다고 한 사례는 17.6%였다<그림 4-2>.

〈그림 4-2〉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농업법인의 성과와 지역 기여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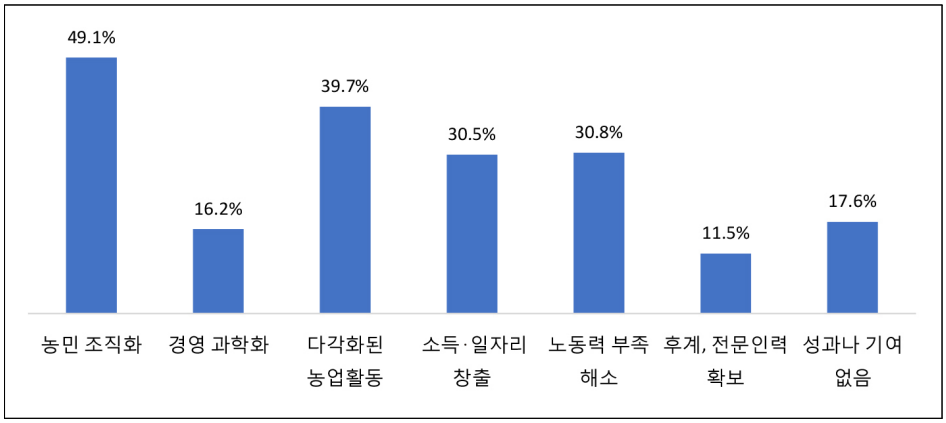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여부에 따른 농가의 후계자 확보, 장부 작성, 연매출, 향후 사업 확장계획 등을 보면, 농업법인 참여 농가가 불참 농가보다 바람직한 경영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농가의 법인화를 통해 농가 후계자 확보, 농가 경영의 과학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경영체의 지속성 확보와 관련하여 후계자 확보 측면에서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40.3%가 확보한 반면, 불참 농가는 33.5%였고, 과학적 경영과 관련하여 장부 작성(단식, 복식 부기 및 영농일지 포함)을 하고 있는 농가는 농업법인 참여 농가가 74.1%, 불참 농가가 65.6%였다. 경

영성과와 관련하여 연매출은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1억 원 이상이 19.7%, 불참 농가는 6.3%,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농가는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경우 55.2%, 불참 농가는 32.8%였고,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였다<표 4-4>.

〈표 4-4〉 농업법인 참여 여부에 따른 농가의 주요 경영 현황 차이

		불참 농가		참여 농가		전체 농가		통계 검증값	
		빈도	%	빈도	%	빈도	%	x2(df)	p
후계자	미확보	513	66.3	171	59.0	684	64.3	4.588 (1)	0.032
	확보	259	33.5	117	40.3	376	35.3		
장부	미작성	263	34.0	70	24.1	333	31.3	8.790 (1)	0.003
	작성	508	65.6	215	74.1	723	68.0		
연매출	1천만 원 미만	262	33.9	41	14.1	303	28.5	69.573 (3)	〈.0001
	1천만~ 3천만 원 미만	231	29.8	85	29.3	316	29.7		
	3천만~ 1억 원 미만	232	30.0	107	36.9	339	31.9		
	1억 원 이상	49	6.3	57	19.7	106	10.0		
사업 확장계획	없음	520	67.2	130	44.8	650	61.1	44.356 (1)	〈.0001
	있음	254	32.8	160	55.2	414	38.9		
합		774	100.0	290	100.0	1064	100.0	-	

주: 항목별 결측치를 제외한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농가의 법인화를 통한 성공 사례: 청정영농조합법인

청정영농조합법인은 가족 중심(부모와 형제)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으로 법인 설립 전까지는 벼농사, 유자 재배를 통한 판매가 주 소득원이었으나, 소득 증대를 위해 법인 설립을 통해 농사 경험이 있던 쌀과 유자를 활용한 가공 분야로 확장하였다. 쌀, 유자를 주원료로 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술인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유자를 이용한 제조방법으로 특허(제0549286호 유자주의 제조방법)를 취득하여 기존 막걸리와 차별화된 기능성 막걸리를 주로 생산·판매한다. 가족 중심 경영합리화로 부대 비용, 인건비 등의 최소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었다.

자료: 이 연구의 사례조사.

향후 농업법인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해 농가들은 농업법인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찬성 비율이 높았다. 농가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지원 정책 강화를 찬성한다는 농업인이 55.4%로 반대(17.9%)보다 3배 정도 많았다<그림 4-3>. 농업법인 참여 농가의 찬성 비율(79.3%)이 불참 농가 찬성 비율(46.4%)보다 다소 높기는 했지만,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찬성 비율이 높았다. 불참 농가도 농업법인 지원 강화 반대 비율(20.9%)보다 찬성 비율이 두 배 정도 많았다.

〈그림 4-3〉 농업인의 농업법인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찬반

n=1,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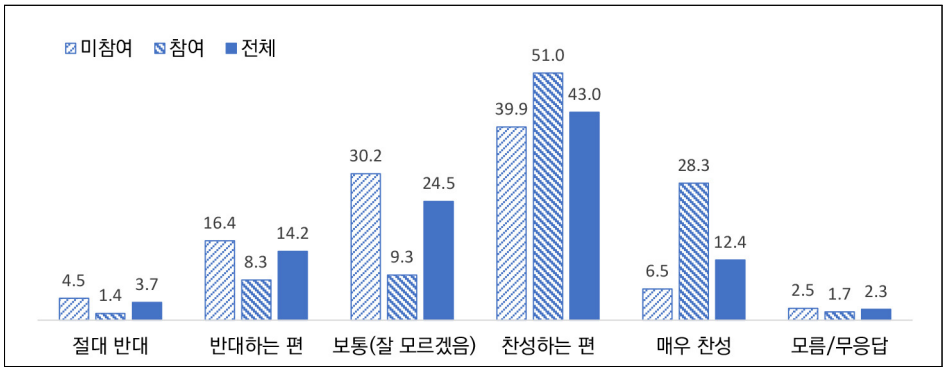

주: 결측치를 제거한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농업법인 불참 농가의 경우도 상당수가 향후 농업법인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농가 설문조사에서 농업법인 불참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농업법인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향후 농업법인을 설립 또는 참여하고 싶다는 비중이 35.1%였다. 농가 특성별로는 경영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 매출이 일정 수준 규모일수록(1천 만 원 미만, 1억 원 이상보다는 1천만~1억 원 미만 구간),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일수록 향후 농업법인 참여 의향이 높았다<표 4-5>. 이는 중소규모 농가의 법인화, 기존 생산자 조직의 법인 전환 등 농업법인 활성화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5〉 농가 주요 특성별 농업법인 참여 의향

		참여 의향 없음		참여 의향 있음		전체 농가		통계검증값	
		빈도	%	빈도	%	빈도	%	x2(df)	p
연령	40대 이하	32	42.7	43	57.3	75	10.8	36.534 (3)	〈.0001
	50대	72	55.8	57	44.2	129	18.6		
	60대	187	65.4	99	34.6	286	41.2		
	70대 이상	160	78.0	45	22.0	205	29.5		
영농 규모	1천만 원 미만	171	69.8	74	30.2	245	35.3	6.943 (3)	0.0737
	1천만~3천만 원 미만	125	60.7	81	39.3	206	29.6		
	3천만~1억 원 미만	134	65.7	70	34.3	204	29.4		
	1억 원 이상	21	52.5	19	47.5	40	5.8		
사업 확장계획	없음	363	76.3	113	23.7	476	68.5	89.974 (1)	〈.0001
	있음	88	40.2	131	59.8	219	31.5		
합		451	64.9	244	35.1	695	100.0		-

주: 결측치를 제거한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농가가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보면, 농업법인의 이점이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비중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함께할 동료 농업인이 없음(30.7%), 농업법인에 참여·운영할 자신이 없는 경우(19.5%), 농업법인 설립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움(14.3%), 농업법인에 대해서 잘 모름(13.2%), 기존 농업법인의 신규 참여에 대한 폐쇄성(6.5%) 등이었다<그림 4-4>. 이는 농업법인 설립, 참여 독려와 더불어 농업법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설립 관련 자문 활동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4-4〉 농업법인 불참 농가의 불참 이유

n=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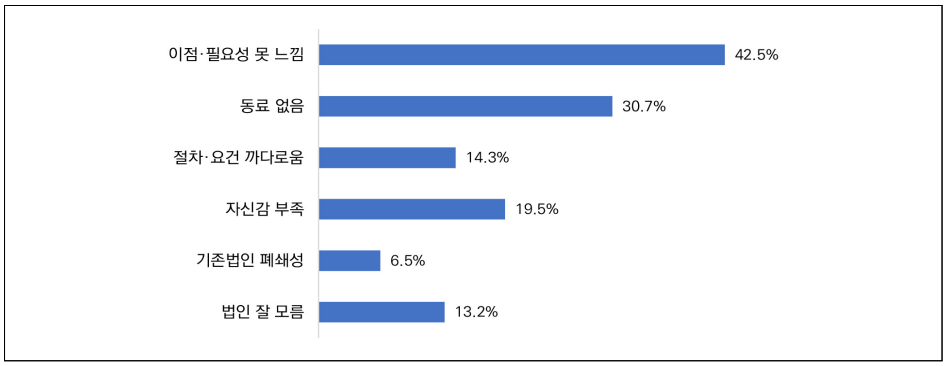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2.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요구

앞선 장의 통계청 농업법인 관련 실태 분석에서 조사되지 않은 운영 관련 실태 분석과 더불어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해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 설립·운영 현황

농업법인들의 설립 목적으로는 농가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생산 외 부가가치 창출 확대, 지역 농가 조직화 등이 가장 많았다.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설립 목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가 81.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역 농가·품목의 조직화(27.7%), 마을 공동수익 사업(14.8%), 생산 규모 확대(11.9%), 정부 지원사업 수혜(10.9%), 외부 투자유치(7.3%), 절세 혜택(6.9%) 등이었다<표 4-6>. 종사자 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부가가치 창출 확대 및 지역 농가·품목 조직화나 마을 공동수익사업을 위해, 종사자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해 설립한 경우가 많았다. 주 사업 분야별로는 축산, 농작업 대행 등 농업서비스 주력 농업법인의 경우 생산 규모 확대, 농촌 관광휴양의 경우 마을공동수익 사업을 위해 설립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축산 및 규모화된 농업을 추구하는 농업법인에 비해, 중소 농가 단위의 생산 외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 또는 지역 농가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들이 상대적으로 인력 구조가 취약하였는데, 조사 대상 법인 중 가족만 출자한 법인(27.7%)[45]의 상용근로자 수는 평균 2.98명(상용근로자가 없는 경우 47.5%)으로 그 외 농업법인(3.72)(없는 경우 37.7%)보다 적었고, 생산자 조직을 모태로 출범한 농업법인의 경우 3.08명(없는 경우 47.1%)으로 그 외 농업법인

45) 출자자 구성 조사 문항(중복 응답)에서 가족 이외 다른 구성원이 없는 경우.

(3.71)(없는 경우 37.3%)보다 적었다. 농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법인과 생산자 조직 등을 기반으로 지역 농가 조직화 차원에서 시작된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 및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6〉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

단위: %

		농업법인 설립 목적							
		부가가치 창출 확대	지역 농가·품목 조직화	마을 공동 수익 사업	생산 규모 확대	지원 사업 수혜	외부 투자 유치	절세 혜택	기타
전체		81.2	27.7	14.8	11.9	10.9	7.3	6.9	4.2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80.5	33.7	16.0	9.9	13.1	5.2	4.9	5.1
	농업회사법인	81.9	22.4	13.8	13.7	9.1	9.2	8.5	3.4
종사자 규모	1인 이하	88.5	31.9	18.6	8.2	11.6	8.6	5.6	4.7
	2~4인	79.6	25.7	13.7	12.3	11.8	7.3	8.6	4.2
	5~9인	70.2	25.8	14.6	15.0	8.5	5.4	6.6	5.5
	10~49인	85.5	25.2	6.7	16.4	10.5	7.2	5.4	0.0
	50인 이상	56.8	12.1	12.1	22.4	0.0	0.0	0.0	0.0
주 사업 분야	작물재배	83.9	27.9	15.8	8.0	12.9	8.2	7.3	5.8
	축산	45.0	20.2	11.8	44.9	6.3	3.8	8.4	5.4
	농축산물가공	89.4	25.7	15.6	8.2	8.5	9.3	6.2	2.0
	농축산물유통	85.5	29.6	11.2	10.7	12.2	5.8	6.6	1.9
	농업서비스	63.7	41.0	27.2	34.8	11.2	11.2	17.5	14.0
	농촌관광휴양	55.1	20.3	82.1	17.9	0.0	0.0	0.0	0.0
	기타	53.0	27.7	15.0	8.1	15.8	5.8	4.6	18.6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지자체의 농업법인 전문성 지원 사례: W 영농조합법인

W 영농조합법인은 군 단위의 우리밀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밀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105명 참여)를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였다. 참여 농가 대부분은 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이 아닌 출하자 회원으로, 출자자는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임원을 중심으로 생산자 5명으로 구성되었다(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출자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실현

되지는 않고 있음). 생산 관련 공동 지원사업(공동이용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공동방제, 자재공동구입 등)과 회원이 생산한 우리밀의 국내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역 내 생산자의 필요와 정책적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법인화를 장려하여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회계 및 경영 업무를 수행할 전담자가 없고, 법인의 회계 처리 및 조직관리 업무를 현재 경영진(대표 및 총무)이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적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하여 지자체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실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의 회계 등 업무를 계속 외부에 의존할 수 없으며 독립적 경영역량(조직체계, 인력,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자료: 이 연구의 사례조사.

농가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설립에는 정부 지원사업과 생산자 조직 활동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중에 법인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정부사업이 있는 경우가 27.9%였고, 농업법인 설립 이전에 생산자 조직 활동이 있었던 경우가 30.9%였다<표 4-7>. 법인설립에 영향을 준 정부사업으로 농기업경영자금사업(21.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농기계 구입자금사업(11.5%), 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10.3%), 식품가공산업육성 관련 사업(8.7%), 산지유통활성화사업(5.8%), 농산물종합가공센터사업(5.4%), 공동경영체 육성사업(4.1%), APC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3.4%), 6차산업화 사업(3.2%) 등이 있었다. 법인설립 전 계기가 되었던 생산자 조직 종류로는 작목반(18.9%), 농업인 단체(10.9%), 마을공동사업(5.4%), 품목연구회(4.8%), 품목협회(4.4%) 등이 있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이 설립 계기가 된 경우가 농업회사법인보다 많았고,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 지원사업과 생산자 조직 활동이 설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 주 사업 분야별로는 농촌관광휴양 분야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과 생산자 조직 활동을 계기로 농업법인 설립이 추진된 경우가 특히 많았다. 이는 농가의 법인화 및 마을 단위 농가 조직화에 있어 정부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표 4-7〉 농업법인의 설립 계기가 되었던 정부 지원사업 및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

단위: %

		정부 지원 사업	생산자 조직	생산자 조직 종류(복수응답)				
				작목반	농업인 단체	마을 공동 사업	품목 연구회	품목 협회
전체		27.9	30.9	18.9	10.9	5.4	4.8	4.4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40.0	44.9	29.9	14.9	8.8	7.6	6.7
	농업회사법인	17.4	18.7	9.3	7.5	2.5	2.4	2.3
종사자 규모	1인 이하	33.1	36.9	23.9	17.6	5.8	5.0	4.4
	2~4인	27.7	31.0	17.2	10.0	5.6	4.8	4.6
	5~9인	20.2	23.6	14.4	5.5	4.3	4.4	3.6
	10~49인	27.4	25.5	17.6	3.4	5.9	5.2	5.3
	50인 이상	17.8	17.8	17.8	0.0	0.0	0.0	0.0
주 사업 분야	작물재배	26.1	32.8	19.5	9.2	9.0	6.7	5.0
	축산	35.3	18.6	7.9	4.8	0.0	0.0	4.9
	농축산물가공	26.8	31.4	17.4	12.0	4.3	4.4	4.5
	농축산물유통	27.5	30.2	20.6	11.2	3.2	3.8	3.4
	농업서비스	25.2	28.9	21.5	9.8	19.2	6.0	9.8
	농촌관광휴양	70.7	66.5	55.1	0.0	11.4	23.4	0.0
	기타	30.4	33.0	18.8	17.8	10.2	7.9	5.1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현재 운영되는 농업법인의 회사 형태를 보면 영농조합, 주식회사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법인 설문조사 결과 영농조합 형태가 45.8%, 주식회사 형태가 48.2%, 유한회사가 5.1%였고, 합명회사(0.5%), 합자회사(0.2%), 유한책임회사(0.1%)였다. 2009년 이후 농업법인의 회사 형태 변경이 가능[46]하게 되었는데, 실제 농업법인 중에 그동안 회사 형태를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는 4.3%였다<표 4-8>.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이 회사 형태를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영농조합법인 1.9%, 농업회사법인 6.3%).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한 경우(변경이 있는 사례의 61.8%)가 가장 많았고, 영농조합에서 농업회사

46) 2009년부터 영농조합에서 합명·합자 형태의 농업회사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변경 가능한 농업회사 형태에 주식·유한회사가 추가되고, 2018년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되었다.

법인으로 변경(25.5%)이 그다음이었다.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주로 비생산법인(가공·유통 분야)이 많았다. 종사자 규모가 큰 농업법인일수록 회사 형태 변경 사례가 많았다. 회사 형태를 변경한 이유로는 사업영역 확대(48.7%), 정책 지원사업 수혜(22.3%) 등의 이유가 많았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정책 지원사업 수혜와 세제상 혜택을 위해 회사 형태를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직 농업법인들의 회사 형태 변경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주로 비농업계 법인들의 농업계 진출 및 농업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8〉 농업법인의 회사 형태 변경 내용 및 이유

단위: %

		회사 형태 변경 있음	변경 유형			변경 이유			
			영농조합 → 농업회사	농업회사 형태 변경	일반 주식회사 → 농업법인	세제상 혜택	정책 지원 사업 수혜	사업 영역 확대	기타
전체		4.3	25.5	7.3	61.8	2.0	22.3	48.7	11.7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1.9	100.0	0.0	0.0	0.0	0.0	47.3	43.0
	농업회사법인	6.3	5.8	9.3	78.2	2.5	28.2	49.0	3.4
종사자 규모	1인 이하	2.0	56.4	0.0	43.6	0.0	43.6	0.0	56.4
	2~4인	5.8	13.2	14.8	72.1	0.0	21.2	52.1	0.0
	5~9인	3.5	50.2	0.0	16.2	0.0	16.2	54.3	16.6
	10~49인	6.1	0.0	0.0	100.0	0.0	0.0	100.0	0.0
	50인 이상	47.7	46.8	0.0	53.2	46.8	53.2	0.0	0.0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회사 형태 변경 사례: S 농업회사법인

S 농업회사법인은 1998년 복숭아로 일본을 처음 개척하면서 무역상사로 과일 분야에 진출한 이후, 2009년 농업회사법인으로 회사 형태를 변경하였다. 이후 딸기 전문회사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에는 산청 본사에 정부 지원으로 20억 원 사업의 APC센터를 신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제철과일 전문숍을 오픈하여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고, 향후 체인 사업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자료: 사람인(www.saramin.co.kr).

농업법인의 출자자 구성을 보면,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가 45.5%, 지역 내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57.8%, 비농업인이나 소비자가 참여하는 경우 10.8%, 모기업이나 타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6.6%,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등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4.3%였다<표 4-9>. 가족만 참여하는 경우는 22.7%, 농업인 외 출자가 없는 경우가 22.5%였다. 농업회사 형태가 가족, 비농업인, 타 기업/법인 출자가 영농조합보다 많은 반면, 지역 내 농업인 참여는 영농조합법인(84.3%)이 농업회사법인(34.6%)에 비해 적었다. 가족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법인 출자자 구성에 타 기업 또는 법인 참여, 비농업인 참여, 지역의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참여가 많았다. 출자자가 공동 운영하는 경우 지역 내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대표자 단독 운영의 경우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자 조직 활동에서 기인한 법인[47]들은 주로 지역 농업인만으로 출자된 경우가 많은데, 앞선 농업법인 경영 효율성 분석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외부 출자가 주요한 경영효율성 결정 요인임을 고려하여 이들 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47) 생산자 조직 활동에서 출발한 농업법인의 83.2%가 농업인 외 외부 출자가 없었다.

〈표 4-9〉 농업법인의 출자자 구성

단위: %

		법인 출자자 구성 (복수응답)					가족법인 여부		농업인 외 출자 여부	
		지역 농업인	가족	비 농업인	기업·법인	농협, 생산자 단체	가족만 출자	가족 외 출자	농업인만 출자	농업인 외 출자
전체		57.8	45.5	10.8	6.6	4.3	22.7	77.3	22.5	77.5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84.3	31.9	5.5	2.4	4.4	12.0	88.0	10.3	89.7
	농업회사법인	34.6	57.3	15.4	10.3	4.2	41.6	58.4	33.3	66.7
종사자 규모	1인 이하	60.2	48.4	11.7	3.6	4.4	32.9	67.1	17.4	82.6
	2~4인	50.7	44.6	9.8	8.0	2.8	30.0	70.0	23.2	76.8
	5~9인	69.8	38.6	10.5	6.2	4.2	17.3	82.7	15.5	84.5
	10~49인	52.1	52.6	11.4	11.4	9.2	27.8	72.2	48.1	51.9
	50인 이상	55.3	40.2	17.8	40.2	17.8	0.0	100.0	0.0	100.0
운영 방식	출자자 공동 운영	74.7	38.9	13.0	4.3	6.8	16.3	83.7	20.3	79.7
	대표 단독 운영	55.0	52.2	10.3	8.6	2.7	34.5	65.5	23.4	76.6
	개별 운영	68.4	31.6	5.3	5.3	15.8	16.7	83.3	27.8	72.2

주: 백분율은 행별 값이고, 복수응답의 경우 총응답자 수(cases) 기준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농업법인 경영주의 경영 역량과 관련하여 전문 경영인 여부와 경영주의 사업체 경험(근무, 운영)을 조사한 결과,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거나 농업인이라도 사업체 경험이 있는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가 57.6%(농업법인을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경우 21.0%, 사업체 경험이 있는 농업인인 경우 36.7%)였다<표 4-10>. 종사자 규모별 매출에 따른 경영주의 특성을 보면, 대체로 종사자 규모가 같은 경우 매출 규모가 클수록 전문경영인 또는 사업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농업법인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주 또는 출자자의 경영 참여활동 빈도를 보면, 역시 동일 종사자 규모에서 매출이 많을수록 관련자의 경영 참여 활동 빈도가 많았다. 또한 회계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동일 종사자 규모에서 매출이 많을수록 회계 관리를 전담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자 조직 활동에서 시작된 농업법인의 경우 전문 경영인이나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영주인 경우가 43.4%로 그렇지 않은 경우(64.1%)에 비해 적었다. 이는 농업법인 성과와 관련하여 전문경영인, 관련자 참여 활동, 전문적 회계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역 농가 조직화 차원에서 출발한 농

업법인의 경우 전문 경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다음 절의 농업성과 관련 변인 분석 결과 참조).

〈표 4-10〉 농업법인의 경영주 특성 및 관련자 경영 참여 활동 빈도와 회계관리 현황

단위: %

		매출	전문 경영자 또는 사업 경험자	관련자 경영 참여 활동 빈도				회계 관리 담당			전체
				거의 개최 안됨	연 1회 정도	분기당 1회 정도	수시로	법인 대표 관리	출자자가 관리	전담 직원이 관리	
종사자 규모	4인 이하	5억 원 미만	55.2	11.2	14.2	14.8	59.8	18.3	4.7	76.9	100.0
		5억~ 20억 원 미만	55.2	14.7	22.1	11.8	51.5	11.6	5.8	82.6	100.0
		20억~ 50억 원 미만	60.0	13.5	16.2	16.2	54.1	24.3	2.7	73.0	100.0
		50억 원 이상	78.6	0.0	7.1	21.4	71.4	13.3	6.7	80.0	100.0
	5~ 9인	5억 원 미만	55.2	13.3	6.7	23.3	56.7	20.0	6.7	73.3	100.0
		5억~ 20억 원 미만	50.0	6.4	10.6	14.9	68.1	8.5	4.3	87.2	100.0
		20억~ 50억 원 미만	62.9	5.3	15.8	10.5	68.4	2.6	2.6	94.7	100.0
		50억 원 이상	56.5	4.3	0.0	13.0	82.6	4.3	4.3	91.3	100.0
	10인 이상	5억 원 미만	100.0	50.0	0,0	0.0	50.0	0.0	0.0	100.0	100.0
		5억~ 20억 원 미만	66.7	20.0	30.0	10.0	40.0	10.0	10.0%	80.0	100.0
		20억~ 50억 원 미만	42.1	0.0	20.0	20.0	60.0	10.0	5.0	85.0	100.0
		50억 원 이상	84.2	2.6	18.4	15.8	63.2	10.0	0.0	90.0	100.0
설립전 생산자 조직 활동		있었음	43.4	5.8	13.5	18.7	61.9	8.4	5.2	86.5	100.0
		없었음	64.1	16.4	13.5	11.1	59.1	18.8	4.1	77.1	100.0
전체			57.6	9.7	14.7	14.9	60.7	13.8	4.4	81.8	100.0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출자자 경영 참여활동의 중요성 사례: T 농업회사법인 사례

T 농업회사법인은 2009년 지자체와 지역의 농협, 생산자가 출자한 법인으로 지자체의 공공형 농산물유통회사로서 설립되었다. 2개소의 정부 지원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시설(APC)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의 선별, 가공 및 유통을 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대표유통회사로서 지역농산물의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총자본금 70억 원 중 약 43%인 33억 원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하였고, 지역의 농협과 생산자 개인이 출자하여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가장 큰 대주주로서 출자를 하였지만 부실경영을 초래한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견제 역할을 전체 주주들이 하지 못하여 2018년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역 내 개인 생산자도 출자를 하여 법인에 참여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부실경영 이슈가 언론을 통하여 지역에서 확대된 이후에야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공공형 조직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만 경영진의 경영 실패 및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에는 법인에 대한 감독 기능 및 회원의 경영 참여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이 되었으나 회사운영에 대하여 주도하는 그룹 중심으로 의사 결정과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고 정보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전문 분야의 경우 생산자 등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료: 이 연구의 사례조사.

2.2. 성과 및 요구

농업법인들은 법인 활동이 농업법인 자체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 관점의 다양한 성과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의 성과와 관련하여 지역 농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농업 생산 이외 다각적 농업활동 촉진이 33.5%, 농업경영체의 기업적·체계적 운영이 29.9%, 지역 농민 조직화 23.6%, 기계화를 통한 인력 문제 해소 16.4%, 후계자 및 신규 전문인력 확보 12.0% 등이 있었고, 성과·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응답은 11.0%였다<표 4-11>.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지역 농민의 소득·일자리 창출, 생산 외 다각적 농업활동 촉진, 지역 농민 조직화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1〉 농업법인의 성과와 지역 기여

단위: %

		농업법인의 성과 및 지역 기여 (복수응답)						
		지역농민 소득·일자리 창출	생산 외 다각적 농업 활동 촉진	경영체 기업적 운영	지역농민 조직화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문제 해소	신규 인력 확보 촉진	성과 기여 없음
전체		47.8	33.5	29.9	23.6	16.4	12.0	11.0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51.2**	**36.1**	28.4	**31.0**	18.0	9.9	8.7
	농업회사법인	44.9	31.3	31.2	17.2	15.0	13.8	13.1

주: 백분율은 행별 값이고, 총응답자 수(cases) 기준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농업법인의 지역 기여 사례: 청자골 한우리 영농조합법인

2007년 5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한 청자골 한우리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부터 법인 중심 농업경영체제를 정비하여, 현재 320호 농가가 참여하여 600ha(100ha 임차지)를 공동경영체제로 운영하여(현재 25명의 조합원과 185명의 준조합원으로 구성), 강진군 군동면 관내 전체를 조직화·계열화하여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다. 임원 개인 경영과 법인 통합 경영을 엄격히 분리하여 농번기와 농한기가 분명한 수도작 외의 사업들이 연중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임배추, 도정공장, 고춧가루가공, 양파, 여주, 칡즙가공, 육묘장, 조사료전문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착한한우명품관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의 규모화를 통해 식량산업에 농기계 이용 효율성 증가와 고령농업인 일손 절감, 답리작(이모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준 연매출 38억 원에 상용직 25명, 일용직 월평균 70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연간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료: 장강신문(2016); 박문호 외(2016).

농업법인의 성과와 관련하여 법인 차원의 성과(법인 매출, 종사자 수)와 지역 차원의 성과(법인활동 수혜 농가 수)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 <표 4-12>와 같았다. 어떤 농업법인 특성이 농업법인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지를 탐색하고자, 농업법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조직 형태, 사업 분야별 비중, 사업 유형 개수, 운영기간, 출자 현황(출자자 수, 출자금), 출자자 참여활동, 전문경영, 회계전문성 여부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법인 성과(매출, 종사자 수, 수혜농가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 차원의 분석이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0.1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법인 매출은 운영기간, 출자금 규모와, 종사자 수는 운영기간, 출자금 규모, 전문경영과, 수혜농가 수는 조직 형태, 출자자 수, 출자자참여활동, 회계전문성 등과 관련성이 있었다. 앞선 절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인 성과는 전문 경영인, 관련자 참여활동, 전문적 회계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법인 차원의 성과 관련 변인과 지역 차원의 성과 관련 변인 간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지역 사회 관련 성과는 법인 차원의 성과가 운영기간이 길고, 출자금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것과 달리, 많은 출자자 확보와 이들의 적극적 경영 참여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12〉 농업법인 성과 관련 변인 분석

법인 특성		매출			종사자			수혜농가		
		β	t	p	β	t	p	β	t	p
조직 형태		.056	1.133	.258	.064	1.283	.200	-.193	-3.658	.000
사업비중	작물	.086	.528	.598	.012	.074	.941	.072	.422	.673
	축산	.161	1.541	.124	.133	1.246	.213	-.087	-.796	.427
	가공	.234	1.199	.231	.121	.613	.540	.064	.318	.750
	유통	.326	1.674	.105	.106	.537	.592	.065	.321	.749
	서비스	.026	.324	.746	-.001	-.015	.988	.084	.990	.323
	기타	.057	.517	.606	.006	.054	.957	.029	.258	.797
사업 유형 개수		.063	1.466	.143	.055	1.250	.212	-.021	-.448	.655
운영기간		.098	1.984	.048	.137	2.713	.007	-.021	-.394	.694
출자자 수		-.047	-.956	.339	-.055	-1.097	.273	.163	3.099	.002
출자금		.342	6.994	.000	.320	6.444	.000	-.039	-.746	.456
출자자참여활동		.055	1.269	.205	-.002	-.037	.970	.124	2.682	.008
전문경영		.071	1.569	.117	.077	1.668	.096	.055	1.130	.259
회계전문성		.027	.616	.538	.021	.472	.637	.098	2.103	.036
모형	F (df)	6.926***(14, 462)			5.709***(14, 462)			4.073***(14, 434)		
	수정 R^2	0.148			0.147			0.088		

주 1) 조직 형태 영농조합=1, 농업회사=2
출자자 참여활동: 거의 개최 안 됨=1, 연 1회 정도=2, 분기당 1회 정도=3, 수시로 개최=4
전문경영: 전문경영인 또는 사업경험자가 대표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회계전문성: 대표나 출자자가 관리=1, 전담인력이 관리=2
2) *** $p<0.001$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농업법인에 있어 정부사업은 설립의 계기로도 작용하지만, 활용 역량에 따라 중요한 경영 발전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업법인 설문조사 결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농업법인은 57.5%였다<그림 4-5>. 지원받은 법인들의 구체적인 수혜 내용을 보면 시설·장비 구축 관련 정부 보조·융자 지원이 대부분(78.5%)이었고,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21.2%), 교육·컨설팅 지원(15.4%), 마케팅 지원(14.2%), 인력 채용·활용 지원(10.6%) 등이었다. 앞선 장의 농업법인 정책 지원 내용에서도 분석되었지만, 하드웨어 구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외에 제품 및 기술개발, 교육·컨설팅, 마케팅, 인력 지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시사한다.

〈그림 4-5〉 농업법인의 정부 지원사업 수혜 정도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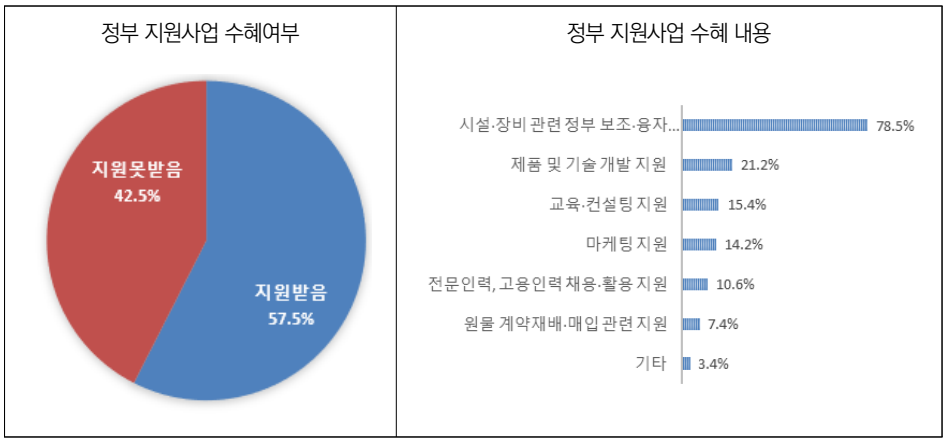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정부 지원 사업 활용 및 지속적 R&D 개발로 성공한 사례: 농업회사법인 ㈜네이처팜

네이처팜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감 고부가가치화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법인으로 전환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청도 지역의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연간 1,250톤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으며 감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들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가공 기술을 획득하여 사계절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었다. 청도 감을 활용하여 반건시와

아이스홍시, 감말랭이 등을 가공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얻었다. 또한 '감피로부터 추출한 천연당류 제조방법', '감 껍질을 활용한 시럽 제조기술' 등의 특허를 통해 감 시럽 등을 개발하여 감 부산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였다. 청도감와인 터널 부근에 가족 체험장을 조성하고 감 따기, 감물염색, 곶감 만들기 등의 체험을 운영하면서 유통·체험·관광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17년 4만 5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감 가공제품 인지도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자료: 마상진 외(2019).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 부문(자금, R&D, 교육·컨설팅, 인력, 세제, 애로사항 통합 지원 등)에 관계없이 만족 법인보다 불만족 법인이 많았다<그림 4-6>. 지원받은 법인과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법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자금 지원 외에는 없었다.[48]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원 부문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지원으로 5점 만점(1: 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에서 2.7이었고, 그다음으로 인력 지원(2.75), 신상품 및 기술개발 지원(2.79), 세제 지원(2.89), 교육 컨설팅 지원(2.94), 시설·장비 등 구축 자금 보조·융자(2.97) 등의 순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정부 지원 사업 수혜 경험이 있는 농업법인의 경우(2.63)가 없는 경우(2.80)보다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은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망도 더 컸음을 보여주는데, 농업법인 관련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48) 자금 지원 관련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은 3.1, 없는 법인은 2.78로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지원 항목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림 4-6〉 농업법인 지원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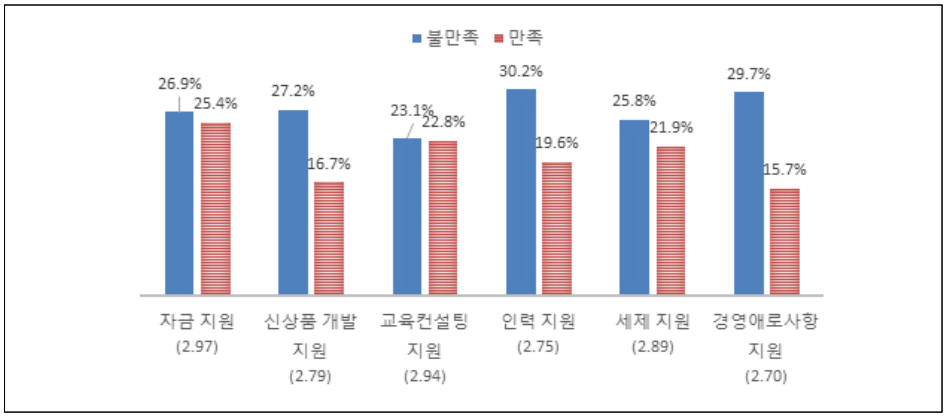

주: ( )는 5점 만점 평균점수(1점: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경영컨설팅을 통해 성공한 사례: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충남 당진의 백석올미 마을에 남편과 고향으로 귀농한 김금순 대표가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을 할머니들의 한과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부녀회 중심으로 마을 단위 사업을 해 왔다. 하지만 경영 역량 부족으로 규모화된 기업형 경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나 공장 운영의 기술력, 자금 운용 능력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김 대표는 경영 컨설팅을 통해, 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영·회계관리부터 사업 역량과 기술력 보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소 폭넓은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일차적으로 경영체 전반의 진단을 받고 중장기 목표를 협의하고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누어 실천과제를 정리했다. 단기적으로는 조직적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추진하였다. 조합법인의 구성을 생산·가공·체험마을·개발·운영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금관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적은 수입조차 공동 분배하는 등 평등한 경영 철학을 실현해 구성원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법인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마을 주민들에겐 일자리와 고정 소득을, 지역 생산 농산물을 수매해 농가의 판로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기공체조교실, 노래와 댄스교실, 서예교실과 같은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마을 구성원이 직접 만드는 농촌복지 시스템의 기본 틀을 구현하고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0a).

농업법인들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영·시설 확충 자금 확보(59.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안정적 판로 확보(48.6%), 단순 노무인력 확보(30.7%), 제품 및 기술 개발의 어려움(25.9%), 인허가 등 각종 규제(21.7%), 전문인력 확보(21.1%), 경영 및 회계관리 능력 부족(13.8%), 조합원 간의 의견 불일치(5.3%) 등이 있었다<표 4-13>. 종사자 규모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자금, 제품 판로, 제품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확보, 경영회계관리 관련 애로사항은 종사자 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많았고, 인허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은 종사자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많았다. 운영기간에 따라서 운영 초기(3년 이하)에는 상대적으로 운영·시설 확충 자금 확보, 제품 및 기술 개발, 경영회계 관리 능력 관련 애로가 많았고, 성장기(4~11년)에는 안정적 판로 확보, 단순 노무인력확보, 안정기(12년 이상)에는 인허가 등 각종 규제 관련 애로가 많았다. 이는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농업법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13〉 농업법인의 경영 애로사항

단위: %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복수 응답)							
		운영시설 확충 자금 확보	안정적 판로 확보	단순노무 인력 확보	제품기술 개발 어려움	각종 규제	전문 인력 확보	경영회계 관리능력 부족	조합원 간 갈등
전체		59.1	48.6	30.7	25.9	21.7	21.1	13.8	5.3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56.5	45.8	31.3	21.0	20.6	21.3	12.1	5.7
	농업회사법인	61.4	51.1	30.1	30.1	22.6	20.9	15.2	4.8
종사자 규모	1인 이하	57.4	50.4	36.1	37.2	19.7	25.4	18.9	7.0
	2~4인	62.6	52.0	27.9	21.3	19.6	18.1	13.2	4.6
	5~9인	60.8	40.0	23.2	16.5	27.1	20.3	10.4	2.7
	10~49인	49.9	48.9	37.6	24.1	24.9	19.6	6.0	6.8
	50인 이상	34.4	0.0	34.4	0.0	34.4	0.0	0.0	0.0
운영 기간	3년 이하	75.7	44.5	26.5	37.5	21.4	24.9	16.7	4.7
	4~7년	64.1	55.6	35.1	29.5	26.2	21.4	15.9	5.7
	8~11년	60.4	59.6	38.9	23.2	16.5	26.4	14.1	7.1
	12년 이상	58.9	49.4	31.3	23.6	28.2	19.9	13.3	5.2

주: 백분율은 행별값이고, 총응답자 수(cases) 기준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농업법인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요구와 관련하여 우선 설립·운영 부문을 농업법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지 소유·임대 완화'(20.3%)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어서 '비농업인 출자 확대'(17.8%), '사업 범위'(10.5%) 등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표 4-14>. 사업 분야별로는 작물재배업은 '농지 소유·임대 완화', 농축산물가공업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기업 참여)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또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비농업인 출자와 관련한 요구가 많았다. 조세 지원 관련 제도 중 법인세(37.5%)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24.3%), 양도소득세(6.5%) 등의 순이었다<그림 4-7>. 운영기간별로는 창업 초기일수록 비농업출자, 농지 소유·임대 완화, 출자한도 및 책임한계, 설립 자격·발기인 수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를 많이 제안하였다.

〈표 4-14〉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분야

단위: %, n=501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제도 개선 필요 분야						
		법인 변경·해산	설립자격·발기인 수	출자한도 및 책임한계	비농업인 출자 확대	사업 범위	농지 소유·임대 완화	기타
전체		4.0	3.7	8.3	17.8	10.5	20.3	3.7
종사자 규모	1인 이하	6.3	1.8	5.9	17.7	8.8	30.3	1.4
	2~4인	2.4	5.6	9.5	15.5	11.3	14.1	6.4
	5~9인	3.6	2.8	8.9	21.0	9.2	18.7	4.1
	10~49인	3.1	4.9	10.7	19.3	17.0	12.6	1.4
	50인 이상	0.0	0.0	0.0	34.4	0.0	17.8	0.0
주 사업 분야	작물재배	4.3	2.8	3.8	15.2	12.7	29.2	2.6
	축산	5.0	3.0	16.3	12.3	7.8	11.8	7.5
	농축산물가공	4.4	4.0	10.3	22.0	8.3	14.6	4.7
	농축산물유통	2.8	4.6	9.5	19.3	10.8	20.6	2.2
	농업서비스	19.6	0.0	0.0	6.8	10.1	28.2	11.2
	농촌관광휴양	0.0	0.0	0.0	11.4	0.0	11.4	15.6
	기타	0.0	2.4	2.8	7.0	17.7	23.8	2.9
운영 기간	3년 이하	1.9	5.8	9.7	20.4	6.8	30.1	2.9
	4~7년	1.4	2.1	7.7	19.6	12.6	22.4	2.8
	8~11년	7.8	1.7	7.8	17.2	8.6	12.1	3.4
	12년 이상	5.0	5.7	7.8	14.2	12.8	18.4	5.7

주: 백분율은 행별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그림 4-7〉 농업법인의 조세제도 개선 필요 분야

단위: %, n=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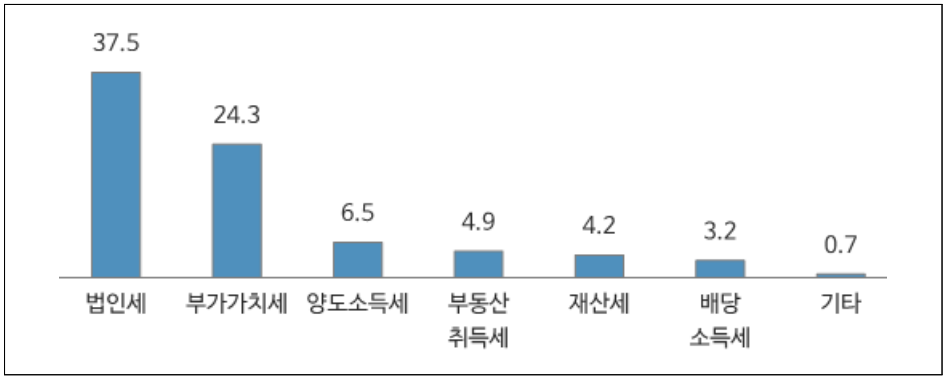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분야는 농업법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41.8%)이었다<표 4-15>. 그다음으로 인력 고용·활용 지원(25.4%), 농업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에 대한 차별화 지원(21.8%), 목적 외 사업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20.3%),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17.7%), 신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 강화(16.2%), 미활동 부실 법인에 대한 정리(9.2%)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 애로사항 통합 지원 요구가 높고, 클수록 인력고용 지원 강화 요구가 높았다. 운영기간별로는 창업초기 법인일수록 경영 애로사항 통합 지원, 인력고용 지원 강화, 외부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았다.

〈표 4-15〉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복수 응답)							
		경영 애로사항 통합 지원	생산, 생산 외 법인 차별화 지원	생산법인 농지확보 대책 마련	외부투자 유치 활성화	인력고용 지원 강화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강화	미활동, 부실법인 정리	목적 외 사업 제재강화
전체		41.8	21.8	15.4	17.7	25.4	16.2	9.2	20.3
조직 형태	영농조합법인	39.7	22.3	16.4	15.3	20.0	18.0	13.5	23.1
	농업회사법인	43.7	21.3	14.5	19.8	30.2	14.7	5.4	17.8
종사자 규모	1인 이하	46.6	24.6	17.7	17.2	18.8	17.1	13.3	16.3
	2~4인	38.9	19.7	15.4	16.2	29.1	16.2	7.3	22.2
	5~9인	39.6	19.2	14.6	20.3	23.3	12.3	10.4	22.9
	10~49인	39.6	24.5	8.9	19.6	37.8	21.1	0.0	23.4
	50인 이상	41.9	14.7	27.2	27.2	30.9	0.0	0.0	0.0
운영 기간	3년이하	47.3	22.7	11.9	26.6	31.2	11.0	4.4	17.2
	4~7년	39.0	19.9	18.9	18.2	24.2	19.4	5.6	18.5
	8~11년	41.3	21.5	21.9	15.2	26.6	17.9	14.5	14.8
	12년 이상	41.2	23.2	9.0	13.1	21.5	15.2	12.0	28.8

주: 백분율은 행별 값이고, 총 응답자 수(cases) 기준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

3. 요약 및 시사점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농가 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증가 추세였다(2000년 이후 매년 2만 농가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참여 농가는 매년 2천 호 정도가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농경력은 10년 이상의 중견 경력일수록, 영농 규모가 클수록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가 활발하였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가공·유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마을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해, 규모가 큰 농가는 농업 생산 규모화, 지역 농민 조직화 등의 관점에서 기존 농가 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참여 농가들은 농업법인 참여가 지역 농민의 조직화, 다각화된 농업

경제활동의 촉진,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농업경영체의 과학적·합리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실제로 법인 참여 농가의 후계자 확보나 장부 작성 비율이 높고,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고, 농업 매출도 높았다. 농업법인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업법인 지원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현재 농업법인 미활동 농가 중에 1/3 이상이 농업법인 설립·참여 의지가 있었는데, 특히 중규모의 영농 규모를 가지고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청년 농가를 중심으로 법인활동 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농가들은 농업법인 설립·참여 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신감 부족, 함께할 동료 농가의 부족, 설립 절차의 까다로움, 기존 법인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농업법인 설립·참여에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농업법인 설립에는 정부 지원사업과 이전에 관련한 작목반, 농업인단체, 마을공동사업, 품목 연구회 등 지역의 생산자 조직 활동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 중심의 규모가 작은 농업법인과 생산자 조직 활동에 기반하여 출범한 농업법인일수록 정부 지원사업이 중요한 설립 계기가 되었다. 농업법인 출자자 구성을 보면 규모가 클수록 타 기업·법인 참여, 비농업인 참여, 지역의 농협·생산자단체 참여가 많았고, 생산자 조직 활동에서 출발한 농업법인들은 지역 농업인만의 출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 전문성과 관련하여 동일 규모에서 매출이 많을수록 경영주가 전문 경영인이거나 사업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주주 및 출자자의 경영 참여 활동이 활발하고, 회계관리는 전담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농업법인 성과와 관련하여 전문경영인, 관련자 참여 활동, 전문적 회계관리가 중요하였고, 특히 지역 차원의 성과와 관련하여 많은 출자자와 이들의 적극적 경영 참여 활동이 중요하였다. 정부 지원사업 수혜 법인은 전체의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57.5%)이었는데, 지원받은 내용은 주로 농업법인의 하드웨어 구축과 관련한 정부 보조·융자 지원으로 신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농업법인 운영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정부 농업법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는 농업법인이 많았다. 농업법인들은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전

문인력 지원 채용 및 활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고, 이 밖에도 신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에 대한 차별적 지원, 농업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미활동 법인에 대한 정리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농업법인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경영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요구에 차이가 있었다.

제5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제5장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이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농업법인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농업법인 제도 도입 배경과 변화, 현 제도 및 관련 정책, 농업법인 현황과 성과, 최근 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프랑스

1.1. 농업법인 도입 배경 및 변화[49)]

프랑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을 통한 농촌 지역사회 혁신운동이 시작되었다. 1940~1950년대 농업의 기계화 및 규모화 흐름이 지배되는 시기에 농민운동가 Rene Colson(1913~1951)은 소농의 공동농업 운동을 전개하면서 1951년 농촌공동체조합(l'Union des Ententes et Communautés Rurale)을 설립한다.

1950년대에 프랑스 정부는 전후의 농업을 복구하기 위해 EEC(유럽경제공동체)와 함께 가족농의 자립경영과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대해 논의하였고, 선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협업농 형태의 농업경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경제 활동과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9) 이 절의 내용은 Cordellier(2014)와 GAEC & Societes(2020)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정리한 것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1960년대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1962년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농업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농업구조로의 변화의 시발점을 제공하는 「농업기본법」(la loi d'orientation agricole)[50]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공동농업경영법인(GAEC)을 함께 규정하였다.

공동농업경영법인(GAEC)은 도입 초기에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법인(GAEC pere-fils)이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농어촌법」(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CR)이 개정되면서, 1인으로도 법인 구성이 가능한 유한책임농업법인(EARL)을 도입하였다. 유한책임농업법인은 농업인의 개인 자산과 농업경영 자산을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법인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공동농업경영법인이 축소되어 구성원이 1인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다.

1996년 「농업근대화법」(la loi de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du 1er février) 제정을 계기로 토지 및 자본투자, 경영 이양, 경영주의 사회적 지위(사회보장), 생산물 시장출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회사 및 법인 형태로 영농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수석·박석두 2006).

1.2.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프랑스 농업법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가족농의 법인화를 장려하는 것이다. 가족농의 법인화는 가계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의 유한책임 특성으로 농업경영체의 부채 위험을 줄인다. 나아가 부모 자식 간의 법인경영을 통해 승계농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김수석·박석두 2006).

농업 정책자금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50) 이 법에서는 GAEC 외에 고등 농업교육 개혁, 농지 이용 규모화(SAFER 출범), 특별 농촌개발 구역 지정, 농지소유 집단회사(GFA), 농산물 품질 인증 등을 도입함.

두지 않고, 법인 구성원이 개인 경영체 구성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법률적 지위 및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농가가 법인 설립 시 구성원들이 농업법인에 경제적 권리를 양도하지만, 개별 법인 구성원이 경영주에게 부여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개별 농업인에게 농업 지원자금(저리융자 또는 보조금) 또는 권리(쿼터)가 제공될 경우 법인에게도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김수석·박석두 2006).

프랑스의 주요 농업법인 유형으로 ① 공동농업경영법인(Groupements Agricloes d'Exploitaion en Commun: GAEC), ② 유한책임농업법인(Exploitaions Agicole à Responsabilité Limetée: EARL), ③ 농업경영조합(Societe Civile d'Exploitaion Agricloe: SCEA) 등이 있다<표 5-1>.[51] 법인 유형별 특성을 보면, 공동농업경영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영농종사자여야 하지만, 유한책임농업법인은 농업인·비농업인으로 제한 없이 구성할 수 있다. 단, 유한책임농업법인도 공동 영농종사자들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공동농업경영법인은 법인의 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개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의 결합체[52]로 인식하며, '투명성 원칙(transparency principle)'을 적용하여 법인 참여 농가 각각을 일반 농가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공동농업경영법인은 임금 지급 의무와 지급 상·하한(최저임금의 1~6배) 규정이 있다. 반면, 유한책임농업법인은 단독 경영체로서 개인농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유한책임농업법인은 개별경영을 하는 농업인도 출자·참여할 수 있고, 비농업인도 출자·참여 가능하다. 농업경영조합은 특별히 구성원에 대

51) 이 밖에 익명특수이익조합(Societe de Fait Societe en Participation: SEP)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조직제도로 출자가 없는 과세 단위 조직체로서, 등기도 선택적으로 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일반적으로 영속조직(going-concern)이 아닌 비정규, 임시조직이다. 농업법인 이외에도 일반 민간 회사법인도 영농 활동을 하는데, 구성원의 활동 촉진 및 확장이 목적인 경제이익단체(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GIE), 무한책임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 SNC), 사적유한책임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공적유한책임회사(société anonyme: SA) 등이 있음(Notaires.fr 2020).

52) GAEC의 유형에는 하나의 경영체에 여러 사람이 영농하거나 여러 경영체를 합병하는 완전통합형 GAEC와 여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전문화된 작업장을 마련하는 부분통합형 GAEC가 있다(김수석·박석두 2006).

한 제한이 없이 농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저리 융자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참여 농업인은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도 소멸된다(나채준 외 2017: 35).

프랑스는 다른 EU국가와 동일하게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한 법률이나 정책은 없지만(나채준 외 2017), 농업경영체의 활동이 농림업으로 인정되면 수입은 조세상 우대가 주어진다(김수석 2007). 농업 관련 상호신용기관 및 협동조합에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원칙적으로 자본소득에 10% 원천징수)와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이동규 외 2018).

〈표 5-1〉 프랑스의 주요 농업법인 유형 비교

	공동농업경영법인 GAEC	유한책임농업법인 EARL	농업경영조합 SCEA
법인격	민법상 조합		
회사 자본	최소 1,500유로 (1구좌 균등, 7.5유로 이상)	최소 7,500유로 (1구좌 균등,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구성	- 2~10인 미만 - 개인, 성년자[법인 불가] -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 가능 (2010년부터 허용) - 참여자 전원이 법인 영농 종사자여야 함	- 1~10인 미만 - 개인, 성년자[법인 불가] - 최소 1인 이상 영농 종사자 출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자 50% 미만) - 본인, 배우자로 구성 가능	- 최소 2인 이상 - 본인, 배우자로 구성 가능 - 비농업인 및 법인도 참여 가능
책임 한도	출자한도의 2배	출자자본 이내	출자비율에 따른 무한 책임
의결권	1인 1표	출자 지분에 비례	출자 지분에 비례
농업 노동 참여	모든 구성원의 농업노동 참여가 의무임	농업노동 참여자가 자본 50% 이상 출자해야 함.	의무 없음
임금 등	- 출자자(참여자) 월급여 지급 의무 - 최저임금 1~6배로 제한	- 제한 없음 - 경영자, 출자자 및 노동자로서 통상적인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	제한 없음
보조금	- 투명성 원칙 적용(법인참여 농업인은 개별 농가와 동일한 권리 가짐. 구성원 수에 따라 보조금 수혜)	- 법인이 단일 경영체로서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됨 - 단, 법인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은 개별창업과 동일한 창농 보조를 받음	

자료: 장민기(2019); 나채준 외(2017) 등을 기초로 수정·보완.

1.3. 농업법인 현황 및 성과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중 농가 비중이 줄고 농업법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표 5-2>. 1988년 101.7만 개 농업경영체 중 농가가 94.9만 개로 93.3%를 차지하였는데, 2016년에는 29.6만 개로 급격히 감소하고 그 비중도 65.0%로 떨어졌다. 반면 농업법인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유한책임농업법인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공동농업경영법인은 1988년 3.8만 개로 농업경영체에서 3.7%를 차지하던 것이 2016년에는 4.3만 개로 증가하여 비중이 9.4%가 되었고, 유한책임농업법인은 1985년 새로 도입된 이후 2016년에는 8만 개로 전체 농업경영체에서 17.5%, 농업법인경영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유한책임농업법인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은 경영주의 배우자에게도 직업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만으로도 법인구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영주 단독으로도 법인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동농업경영법인이 경영 이양 시점에서 유한책임농업법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수석·박석두 2006).

〈표 5-2〉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별 현황

경영체 종류	1988		2000		2010		2013		2016	
	경영체 수 (천 개)	%	경영체 수 (천 개)	%	경영체 수 (천 개)	%	경영체 수 (천 개)	%	경영체 수 (천 개)	%
농가	948.7	93.3	538.0	81.0	341.7	69.5	295.9	65.5	296.1	65.0
EARL	1.6	0.2	55.9	8.4	78.6	16.0	84.8	18.8	79.7	17.5
GAEC	37.7	3.7	41.5	6.3	37.2	7.6	38.2	8.5	43.0	9.4
기타	28.8	2.8	28.4	4.3	33.9	6.9	32.7	7.2	36.5	8.0
합계	1,016.8	100.0	663.8	100.0	491.4	100.0	451.6	100.0	455.4	100.0

자료: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2016).

프랑스 농무부의 농업구조조사 조사 결과(2016)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전체 농업인력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59.9%, 농지는 63.3%, 생산액은 69.5%에 이르고 있어 개인 농가와 차이가 컸다<표 5-3>. 경영체별 노동력을 보면 농가는 1AWU, 유

한책임농업법인은 1.55AWU, 공동농업경영법인은 4.17AWU로 차이가 있었다. 농지 개별 농가는 평균 경지면적이 33.7ha, 유한책임농업법인은 81.8ha, 공동농업법인은 182.0ha로 농업법인이 2.5~6배가량 많았고, 그에 따라 생산액도 차이가 컸다.

〈표 5-3〉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별 농지, 생산액 현황(2016년 기준)

구분	개소 수		노동력(AWU)		농지		생산액	
	천 개소	%	천 명	%	천 ha	%	백만 유로	%
농가	296.1	65.0	296.0	40.1	9,979.6	36.7	18,742.3	30.5
EARL	79.7	17.5	124.1	16.8	6,519.0	24.0	12,325.3	20.0
GAEC	43.0	9.4	179.4	24.3	7,828.1	28.8	19,694.6	32.0
기타	36.5	8.0	138.6	18.8	2,880.7	10.6	10,754.2	17.5
합계	455.4	100.0	738.2	100.0	27,207.3	100.0	61,516.3	100.0

주: AWU = Annual Work Unit 농장의 연중 전일종사 인력 1인 해당치.
자료: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2016).

1.4. 최근 동향

프랑스는 가족 중심의 농업법인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2010년 유한책임농업법인 이외에도 공동농업경영법인도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유한책임농업법인은 다소 감소하고 공농농업경영법인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는 법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고, 농업인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투명성의 원칙'(법인참여 농업인도 개별 농가와 동일한 권리 가짐)을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법인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가 최근 직접지불 대상자를 '농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자(ceux quisontactivement engagss dans les activités agricoles)'(또는 농업 전임자)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인 중에서도 비농업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공동농업경영법

인의 경우 전면적으로 공동경영을 실시하는 경우(전면적 GAEC, GAEC total)에만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법인에 대한 허가 절차도 대폭 엄격화 하였다.

2. 독일

2.1. 농업법인 도입 배경 및 변화

독일의 현 농업경영체들의 근원은 협동조합과 독일 통일 전 동독의 집단농장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농업인들은 농장 규모가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19세기부터 협동 조합을 결성하였다. 독일은 산업화 과정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늦게 시작되어 1840년대에 이르러 수공업에서 대공장공업으로 전환된다.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농민층이 주체가 되어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봉건적 토지소유자가 지배 권력자와 결탁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진 결과, 도시의 영세 독립 소생산자들과 농촌의 소작농들은 상업자본가의 고리채에 의존해야 했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였다. 고리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라이파이젠(Frederich Wilhelm Raiffeisen, 1818~1888), 슐체 델리치(Hermann Schulze-Delitzsch, 1808~1883), 윌리엄 하스(William Hass, 1839~1913)와 같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에 의해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이것이 독일 협동조합의 모태가 되었다. 이들 농촌 운동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태생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 및 판매, 안정된 시장가로 비료 구입, 농업 생산된 제품에 대한 새로운 판매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렇게 발전된 농촌의 협동조합회사들은 오늘날 독일 농업 전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53)]

53) 농업 관련 사업에서의 구매 및 판매, 종자, 비료, 농약 및 사료의 조달뿐만 아니라 농업 기술 등은 신용협동조합이 다룬다. 우유협동조합은 축산농민들 마케팅을 위해 생산한 우유를 수집하여 유통을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동독에서는 자영농민의 협동조합인 농업생산조합이 있었다. 동독에서는 100ha를 초과한 토지부터 국유화시켰고, 자영농민은 각각 10ha에 이르는 토지를 지급받았다.[54] 이러한 토지개혁 이후 1952년 공산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농업생산조합(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55] 결성을 의결함으로써 집단농장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농업생산조합(LPG)의 지분으로 내놓고 조합원이 되었다. 조합지분인 농지는 더 이상 농민들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조합소유물로 바뀌게 되었다.[56]

통일 후 동독체제하의 집단농장들은 서독의 법적 체계에 부합하는 농업경영체로 전환되어야 했다. 1990년 제정된 「농업조정법」(Lanwirtschaftsanpassungsgesetz)에서 농업생산조합의 전환과 관련한 각종 사항[57]을 규정하였다. 동독 지역 농지의 사유화는 구 체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은 인정하되, 집단농장화는 완전 무효로 하는 원칙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집단농장인 농업생산조합(LPG)에서는 집단농장화하면서 농민들이 내놓았던 지분을 반환하고, 지분을 되찾은 농민은 제1차 토지개혁 이전의 원소유주에게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하였

담당, 우유 자체를 가공하여 치즈, 버터 및 기타 유제품을 생산한다. 축산 육류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한 축산 관련 마케팅을 담당하여, 도축을 하고 가공하여 시장에 판매까지 운영한다. 과일, 야채 및 원예 협동조합은 회원 농업인들로부터 신선한 계절 상품들을 유통한다. 포도 재배자와 와인 생산 협동조합은 포도 재배자와 협동조합에서 수확한 포도를 수집하여 연간 수확량의 대부분을 자체 와이너리에서 양질의 와인으로 가공하여 도매 및 소매업에 저장 및 유통한다(박동수 2020).

54) 독일 분단 이후 구 동독에서는 토지개혁을 하였다. 1945년 9월 동독공산당과 소련군정의 주도하에 100ha 이상 규모의 경작지(임야 포함)를 가진 토지소유주의 토지가 전부 무상으로 몰수되고(나치당원 및 전범의 토지는 소유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몰수), 국유지 또한 개혁대상농지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농지는 320만 ha였고, 이 중 220만 ha의 농지가 약 56만 명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국가로 귀속되었다(김수석 2001).

55)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련의 집단농장인 '콜호스(Kolkhoz)'에 대응되는 농업생산조직 체제를 갖추게 된다.

56) 집단화 과정에서 국가 소유 농지는 인민농장(Volkseigene Güter: VEG)이라는 이름의 국영농장으로 바뀌었다(김수석 2001).

57) 조합원들의 소유권 확정, 법 형태 전환의 조건과 절차, 집단농장의 분리·합병·청산 절차, 개인 선택에 따른 조합으로부터의 탈퇴 절차, 토지 교환의 방법 등.

다.[58] 구 동독 집단농장의 사유화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관계의 확립뿐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영체의 민영화를 통해 당초 독일 정부는 가족 경영체로의 전환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새로이 가족경영체를 창업하기보다 기존의 공동경영방식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가장 선호된 경영조직이 법인 형태의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등록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과 유한회사(GmbH)였다(김수석 2001). 이에 따라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등록 협동조합 형태의 영농조합이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농업경영체 조직이 되었다.

2.2.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독일의 농업경영체[59] 유형은 크게 농가 경영체(Einzelunternehmen),[60]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en), 사법상의 법인(Juristische Personen)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와 비교할 때 독일의 인적회사와 사법상 법인이 우리의 농업법인 경영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인적회사와 사법상 법인은 구성원의 무한책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적회사는 무한책임 구성원들의 연합체로서 이윤은 적립되지 않고 바로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며, 사법상 법인은 구성원들이 유한 책임을 가진다.

인적회사 유형에는 민법상의 조합(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GbR),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가 있고, 사법상 법인 경영체 유형에는 등록 협동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주식회사

58) 국영농장인 인민농장(VEG)의 토지는 반환받을 제1차 토지개혁 대상자가 구 동독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독일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원소유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단계별 임대 및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김수석 2001).

59) 독일에서는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만 하는 경영체는 농업경영체로 분류하지 않는다.

60) 독일에서는 개인경영체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설립 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Aktiengesellschaft: AG) 등이 있다<표 5-4>. 이 중 우리나라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한 것이 등록 협동조합이다. 농업생산활동에 종사[61]하는 등록 협동조합은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구 동독체제하의 집단농장인 농업생산조합(LPG)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영농조합은 법인경영체 중에 경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특히 구 동독지역의 농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법인 형태이다. 등록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경영체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지위로서, 조합 설립에는 최소 3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운영에는 총회와 상임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반드시 하나의 협동조합협회에 소속되어야 하는데,[62] 영농조합은 독일라이파이젠협회(Deutscher Raiffeisenverband: DRV)에 가입한다. 협동조합협회는 회원조합이 ① 조합원 이해에 부합하여 설립되는지, ②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③ 경영 상태는 정상인지를 심사한다. 또한 협동조합협회는 회원조합의 경영 및 조세문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상담을 수행하고,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조합에게 필요한 상담도 제공한다(김수석·박석두 2006).

61) 등록 협동조합에는 영농조합 외에 일반 농업협동조합과 신용조합도 있다.

62) 협동조합협회는 기업협동조합협회인 기업조합중앙회(Zentralverband Gewerblicher Verbandgruppen: ZGV), 신용조합협회인 독일폴크스은행 및 라이파이젠은행 연방협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Volksbanken und Raiffeisenbank: BVR), 소비조합협회인 독일소비조합중앙회(Zentralverband deutscher Kosumgenossenschaft: ZdK) 등이 있다. 이들 협회의 통합조직으로 독일협동조합 및 라이파이젠협회(Deutscher Genossenschaftsund Raiffeisenverband: DGRV)가 있다.

〈표 5-4〉 독일 농업 조직경영체 유형

	인적회사			사법상 법인		
	민법상 조합 (GbR)	합명회사 (OHG)	합자회사 (KG)	등록 협동조합 (eG)	자본회사	
					유한회사 (GmbH)	주식회사 (AG)
근거법	민법	상법	상법	협동조합법	상법	상법
설립	2인 이상		2인 이상 (유한+무한)	3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책임	무한 책임 (회사자산 +개인자산)		무한 유한	조합원 지분 내 유한책임	최소 2.5만 유로까지 유한책임	최소 5만 유로까지 유한책임
대표	전 사원 공동	사원 1인 단독	무한책임사원 단독	이사회	대표	이사회
이사회	-			조합원 21인부터 3인 이상의 이사회 의무	임의 감독이사회	최소 3인으로 구성
세제 혜택	- 법인세 면제 - 농업 생산 활동은 영업세 면제 - 소득세는 개인 귀속분에 한해 부과(축산의 경우 별도 기준 준수 시 특례)			- 법인세(15%) 부과 - 영업세 면제(농림업 서비스 또는 회원 생산 농산물의 가공 판매) - 소득세		

자료: Dammholz(2011: 20) 재인용; 이동규 외(2018) 재편집.

독일의 인적회사는 농가 경영체와 더불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세 혜택이 주어진다. 조직 경영체이지만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득세는 회사의 이윤이 사원의 지분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어 과세된다. 모든 작물 생산 활동과 조건(면적당 사육두수를 준수)[63]을 만족하는 축산 활동(이동규 외 2018: 61), 그리고 농산물 유통·가공 및 서비스 활동은 생산 활동에 비해 비중이 낮거나 일부분에 해당할 때,[64] 농업경영체의 경영 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농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Gewerbesteuer) 면제, 구입· 판매에 따른

63) 20ha 이하는 10VE/ha, 20~30ha 이하는 7VE/ha, 30~50ha 이하는 6VE/ha, 50~100ha 이하는 3VE/ha, 100ha 초과 시 1.5VE/ha.

64) 농업경영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하는 경우, 가공할 경우 그 일부(1단계 가공은 전체를, 2단계 가공은 연간 10,300유로 범위 내)를, 유통할 경우 생산 매출의 40% 이하일 때만 농업으로 인정한다. 타 경영체 생산 농산물 구입의 경우 구입 금액이 경영체 매출의 30% 이하일 때 그 전체를 농림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농기계수탁 수입은 경영체 매출의 1/3 범위 및 51,500유로 내에서 인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초과하는 농업활동 부분이 발생하면, 전체 활동이 비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부가가치세율(9%) 정산을 통한 면세, 근로소득세 정산 시 저세율 적용, 소득세 특별 공제 적용 등의 과세 우대가 주어진다<표 5-5>.[65] 반면, 법인 경영체는 법인세(15%), 영업세(Gewerbesteuer)를 납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정산에 의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이점을 경영체 내부(경영 효율화, 생산성 제고 등)에서 찾아야 한다.

〈표 5-5〉 독일의 농업 관련 조세특례

세목	주요 특례
소득세	· 농업 소득에 대한 특별공제(1인 900유로, 부부 1,800유로). 단, 소득이 한도(1인 30,700유로, 부부 71,400유로)를 초과하면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규모(자영 농지 20ha 이하) 농업경영체에 대한 표준율에 의해 소득 계산
법인세	· 협동조합 또는 협회 형태의 농업생산단체에 대해서는 설립 후 9개년에 걸쳐서 15,000유로 공제
영업세	· 농림업에 대한 서비스 또는 회원이 생산한 농림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
부가가치세	· 대부분의 농산물은 7%로 저율과세됨(일반세율은 19%) · 농업경영체는 평균치에 근거하여 간이과세의 대상이 되며, 통상 10.7%가 적용됨
부동산세	· 농업경영체에 자기책임이 아닌(예: 가뭄 또는 홍수 등의 사유) 상당한 총소득(Rohertrag) 감소가 있는 경우 세액 감면(50% 이상 생산 감소의 경우 25% 세액 감면, 100% 생산 감소의 경우 50% 세액 감면)
상속증여세	· 농업경영체는 상속 후 15년간 농업경영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경영수익 또는 임차료를 자산화하여 과세표준으로 함(통상적인 거래가액 기준에 비해서 우대되는 결과가 됨)
자동차세	· 농업전용 동력이동기 및 부속기(Anhänger)는 면세
에너지세	·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에 대해서 전기세 면세 · 제조업과 농림업에 대해서는 전기세율 25% 감면(기본세율 MWh당 20.5유로를 15.37유로로 인하) · 제조업과 농림업에 대해서는 난방유, 가스, 액체가스에 대해서 저율과세 · 디젤유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보험세	· 보험액 4천 유로 이하의 경우 면세, 우박, 바람, 서리, 폭우, 범람보험에 대해서 세액 감경. 세액은 보험액의 0.03%

자료: BMEL(2018) 재인용; 홍범교·이명헌(2019).

65) 농업 정책 차원에서는 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활동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농업생산 활동이 경영체 총매출의 25%를 초과한 경우이다(김수석·박석두 2006).

2.3. 농업법인 현황 및 성과

독일의 농업경영체는 2016년 현재 27.5만 개로 이 중 농가가 88.7%, 인적회사가 9.3%, 사법상 법인이 1.8%를 차지하고 있다<표 5-6>. 경영체 수 변화를 보면 농가는 지속적으로 줄고, 인적회사는 증가 추세이고, 법인경영체는 유지되는 추세이다. 농가 수 변화를 보면 1999년 약 45만 호에서 2016년에 약 24만 호로 거의 반 정도 줄었지만, 같은 기간에 인적회사는 1.61만 개에서 2.57만 개로 늘어났다. 인적회사 중에는 민법상 조합(GbR)이 가장 많이 늘었다(1999년 13,777개에서 2016년 21,274개로 증가). 사법상 법인은 1999년 4.5천 개에서 2016년 5.1천 개로 소량 증가하였다. 영농조합(등록조합)은 2016년 현재 1,027개로 1999년 1,366개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999년 2,407개에서 2016년 3,287개로 증가).[66]

〈표 5-6〉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단위: 천 개소, %

구분	1999		2005		2010		2016	
	경영체 수	%	경영체 수	%	경영체 수	%	경영체 수	%
농가	450.4	95.4	371.4	93.9	273.0	91.3	244.2	88.7
인적회사	16.1	3.4	18.8	4.8	21.0	7.0	25.7	9.3
- 민법상 조합	13.7	2.9	15.5	3.9	17.6	5.9	21.3	7.7
- 합명회사	0.1	0.0	0.1	0.0	0.1	0.0	0.1	0.0
- 합자회사	0.9	0.2	1.2	0.3	1.0	0.3	2.1	0.8
- 기타 회사	1.3	0.3	2.0	0.5	2.3	0.8	2.3	0.8
사법상 법인	4.5	1.0	4.6	1.2	4.6	1.5	5.1	1.8
- 등록조합	1.4	0.3	1.2	0.3	1.1	0.4	1.0	0.4
- 유한회사	2.4	0.5	2.6	0.7	2.8	0.9	3.3	1.2
- 주식회사	0.1	0.0	0.1	0.0	0.1	0.0	0.1	0.0
- 기타 법인	-	0.0	0.6	0.2	0.6	0.2	0.7	0.2
공법상 법인	0.9	0.2	0.7	0.2	0.4	0.1	0.4	0.1
전체	472.0	100.0	395.5	100.0	299.1	100.0	275.4	100.0

자료: 김수석·박석두(2006)의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현황자료(BMVEL(각 연도). Agrarpolitischer Bericht) 보완 작성.

66) 특히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유한회사의 증가가 두드러짐.

경영체당 경작지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 농가가 64.1%, 인적회사가 18.6%, 사법상 법인이 17.1%를 차지하여 조직경영체가 35.7%를 차지한다<표 5-7>. 평균 경지면적은 농가가 44ha, 인적회사가 120ha, 사법상 법인이 560ha로 농가에 비해 인적회사가 2.7배, 사법상 법인이 12.8배 컸다. 영농조합의 평균 경지면적은 1,248ha로 모든 유형의 농업경영체 중에 가장 규모가 컸다.

〈표 5-7〉 독일의 농업경영체별 경지 규모

구분	1999		2005		2010		2016	
	경지 비율 (%)	평균 경지면적 (ha)	경지 비율 (%)	평균 경지면적 (ha)	경지 비율 (%)	평균 경지면적 (ha)	경지 비율 (%)	평균 경지면적 (ha)
농가	69.9	26.6	68.9	31.6	66.4	41	64.1	44
인적회사	12	127.7	13.5	122.6	15.9	127	18.6	120
- 민법상 조합	9.5	118.8	10.9	120.1	12.4	118	14.4	113
- 합명회사	0	34.6	0	77.9	0.1	108	0.1	145
- 합자회사	2.4	430.3	2.4	333.9	1.2	203	1.4	115
- 기타 회사	0.1	14.9	0.2	13.6	2.3	162	2.6	193
사법상 법인	17.8	676.9	17.3	647.5	17.4	631	17.1	560
- 등록조합	10	1,251.6	8.9	1,289.8	8.3	1 301	7.7	1,248
- 유한회사	7.1	506.7	7.6	488.8	8.3	488	8.6	434
- 주식회사	0.6	874.3	0.6	968.3	0.6	870	0.6	870
- 기타 법인	-	-	0.2	51.6	0.2	70	0.3	68
공법상 법인	0.3	64.8	0.3	76.6	0.3	99	0.2	97
전체	100	36.3	100	43.1	100	56	100	60

자료: 김수석·박석두(2006)의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현황자료(BMVEL(각 연도). Agrarpolitischer Bericht) 보완 작성.

독일 농업경영체 유형별 표준산출(SO)[67]을 보면, 농가의 경우 5만 유로 미만이 50.8%, 10만 유로 이상이 34.1%인 반면, 인적회사는 각각 16.0%, 75.0%, 사법상

67) 표준산출(Betriebe mit Standardoutput von)은 총생산의 표준가치로 농장가격 기준 농산물의 평균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EU 회원국은 5개년 조사기간 동안의 각 품목의 평균 가치로 지역 표준산출물계수를 구하는데, 매출액, 농가사용, 농가소비와 저장량 변화, 주요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포함한 것으로 직접지불금과 부가가치세, 상품의 세금을 제외한다(김한호·이태호 2015: 67-68).

법인이 20.9%, 71.3%로 조직경영체가 농가보다 많았고, 조직경영체 중에서도 특히 인적회사가 많았다<표 5-8>. 경영체 유형별 경지 규모를 고려할 때 인적회사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2년까지 독일 정부가 발표하던 농업경영체 유형별 노동단위당 소득 자료에서도 확인된다(김수석·박석두 2006: 66).[68] 노동단위당 소득을 보면 인적회사의 노동단위당 소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법인, 개인경영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독일 농업경영체별 표준 산출

표준산출 (1000EUR)	농가		인적회사		사법상 법인		전체	
	경영체	%	경영체	%	경영체	%	경영체	%
8 미만	28.5	11.7	0.6	2.5	0.3	5.2	29.4	10.7
8~15 미만	32.3	13.2	0.9	3.3	0.3	4.7	33.4	12.1
15~50 미만	63.2	25.9	2.6	10.1	0.6	11.0	66.4	24.1
50~100 미만	37.0	15.1	2.3	9.0	0.4	7.9	39.7	14.4
100~500 미만	72.0	29.5	13.0	50.6	1.3	23.2	86.2	31.3
500 이상	11.3	4.6	6.3	24.4	2.6	48.1	20.2	7.3
전체	244.2	100.0	25.7	100.0	5.5	100.0	275.4	100.0

자료: 김수석·박석두(2006)의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현황자료(BMVEL(각 연도). Agrarpolitischer Bericht) 보완 작성.

2.4. 최근 동향

독일의 경우 농업법인은 당초 일반 법인과 구분되는 특수 법인이 아니기에 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 해택을 누릴 수 없고,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이점을 경영체 내부(경영 효율화, 생산성 제고 등)에서 찾았어야만 했다(김수석·박석두 2006). 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농림업 경영체에 대한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품의 가공 및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협동조합(「영업세법」 제5조 1.14

68) 독일은 2003년부터는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를 포함한 주업농(Haupterwerbsbetriebe)과 동독 지역의 법인경영체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한다(김수석·박석두 2006: 67).

항, 이동규 외 2018)과 공동 축산을 하는 인적회사 및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고(동법 3조), 농업 생산활동만을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농용지나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영업세를 면세(동법 제3조)받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세율 인하(25%→15%)(2008년)와 더불어 등록 협동조합에 대해서 특정 서비스만 행하는 협동조합은 법인세를 면제받고(제5조 1.14항), 농업생산만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농업생산협업체는 법인세를 설립 후 9년 동안 연간 15,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25조)(2009년 개정)(이동규 외 2018).

3. 일본

3.1. 농업법인 도입 배경 및 변화[69)]

일본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민간 차원에서 절세 방안으로 규모화된 농업인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농업법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1959년 「농업기본법」 제정 추진과 동시에 농업법인 문제를 포함하여 농업 정책의 방향을 구상하면서 가족경영의 협업화, 경영과 가계의 분리 및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등 농업경영 합리화 관점에서 농업법인 제도 도입을 고려하다가, 1962년 「농지법」과 「농협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김수석·박석두 2006).

1962년 개정 전까지 일본 「농지법」에는 법인의 농지 취득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농사조합법인은 경작자 원칙, 자작지 원칙, 자가노력(노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민에 의한 법인으

69) 김수석·박석두(2006), 김정호·최은아(2015), 장민기 외(2019), 장민기(2019) 등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정리하였다.

로 규정되었다. 농업법인은 크게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법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으로 구별되며, 이는 다시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된다. 농사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사업 분야에 따라 1호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2호 법인과 1호·2호 겸영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70]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거한 합명회사·합자회사와 「유한회사법」에 의거한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주식회사는 제외하였다. 농업생산법인은 「농지법」에 의해 구성원은 농지 제공자와 법인 상시종사자로 제한하고, 농지제공면적과 구성원의 노동력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도록 하였으며, 의결권은 상시종사자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이익배당은 종사분량에 따른 배당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농사조합법인은 농민에 의한 법인으로서 ① 농민(경작자) 원칙 ② 자작지 원칙 ③ 자가노력 원칙 등 3가지 원칙하에 규정되었다. 자작농주의에 입각하였던 제도설립 요건이 고용노동을 통한 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70년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의결권, 농지면적, 노동력, 수익배당 요건을 삭제하고, 농지제공자인 동시에 상시종사자인 구성원이 업무집행 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여 경작자주의에 입각한 제도로 개정하였다(김수석·박석두 2006).

1993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신농정' 기조 아래 농업법인 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다.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요건을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가공 농산물의 저장·운반 등 농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및 농협, 농업생산법인으로부터 물자 또는 노무 등을 제공받는 개인이 추가로 포함되어 농업관계자 이외의 개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신농정 단계에서 나타난 법인화 유형은 ① 1호(戶) 1법인, ②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협업형, ③ 겸업농가 등 마을의 구성원이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지역공동형, ④ 농협·시정촌 주도형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여러 농가로 법인을 구성하여 일부 농업부문(예를 들면, 미작

70) ① 1호(號)법인: 「농협법」 제72조 8항 1호에 명시된 "농업에 관계되는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농작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업", 즉 기계·시설의 공동 이용이나 공동작업만을 하는 조합법인. ② 2호 법인: 「농협법」 제72조 8항 2호에 명시된 "농업의 경영"을 하는 조합법인. ③ 1호·2호 겸영 법인.

부문, 육우 부문)만을 법인경영으로 하고 그 외의 채소·화훼·양돈 등은 개별 경영에 맡기는 혼합형 등이 있다. 신정책에서는 가족농업경영에 대해서 그 경영관리 측면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1호 1법인화를 촉진함으로써, 가족 내의 노동관계나 역할분담의 명확화, 가계·경영 및 생활자산·경영자산 분리 등 경리의 명확화, 고용노동자의 복지 증진, 경영관리능력, 자금조달력, 거래비용력의 충실 등을 기대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세제 혜택을 보도록 하였다(김수석·박석두 2006). 또한 마을 단위로 농업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경영하는 마을영농(集落営農)을 활성화시켰다. 마을영농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나 후계인력부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것에 유용한 형태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특정농업법인 제도'로 규정하고, 후계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 그 지역의 농용지를 이용집적하는 대상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장민기 2019).[71]

1999년에 일본 정부는 농업법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회의소 산하에 '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를 설립하게 하고, 이 협회로 하여금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은 물론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컨설팅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정호 외 2015). 2000년 농업생산법인의 활성화 및 법인 경영관리 능력 향상, 경영의 다각화를 위해 농업생산법인의 법인격으로 주식회사를 추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2002년 임대차를 활용하여 일반 법인의 농업참여를 자유화하는 등 기업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였다. 2006년 유한책임회사로 농업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72] 2009년에는 관련 사업자의 구성원당 의결권 제한(1/10 이하)을 폐지하

71) 마을영농은 '특정농업단체'를 거쳐 '특정농업법인'으로 이행하는 것으로써 제도화되었다. 2007년도에 도입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2008년도부터는 논·전작경영소득안정대책)에 있어서, 지원의 대상은 마을영농조직으로, 인정농업자가 된 법인이 '특정농업단체' 또는 '특정농업단체'와 같은 요건을 만족한 조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을영농조직이 급증하여 법인화도 진전되었다.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생산법인의 구성원 요건이 완화되어 '농작업의 위탁을 하고 있는 개인'이 의결권 제한이 없는 구성원에 추가되었지만 이것은 마을영농조직의 종래 멤버인 작업위탁자도 포함한 형태로 원만히 법인화가 진행되도록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장민기 외 2019).

72) 일본의 회사법 변경에 따른 조치였다.

여 기업의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 「농지법」 개정에서 임대 방식에 의한 진입을 전면 자유화하여,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73]을 충족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농지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6년 개정 「농지법」에서 '농업생산법인'의 명칭을 '농지소유적격법인'으로 변경하고, 농지 소유 요건을 완화하였다. 농지소유법인이 6차산업화 등을 통해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지법」의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소유법인의 요건을 더욱 유연화하였다<그림 5-1>.

〈그림 5-1〉 일본 농업법인 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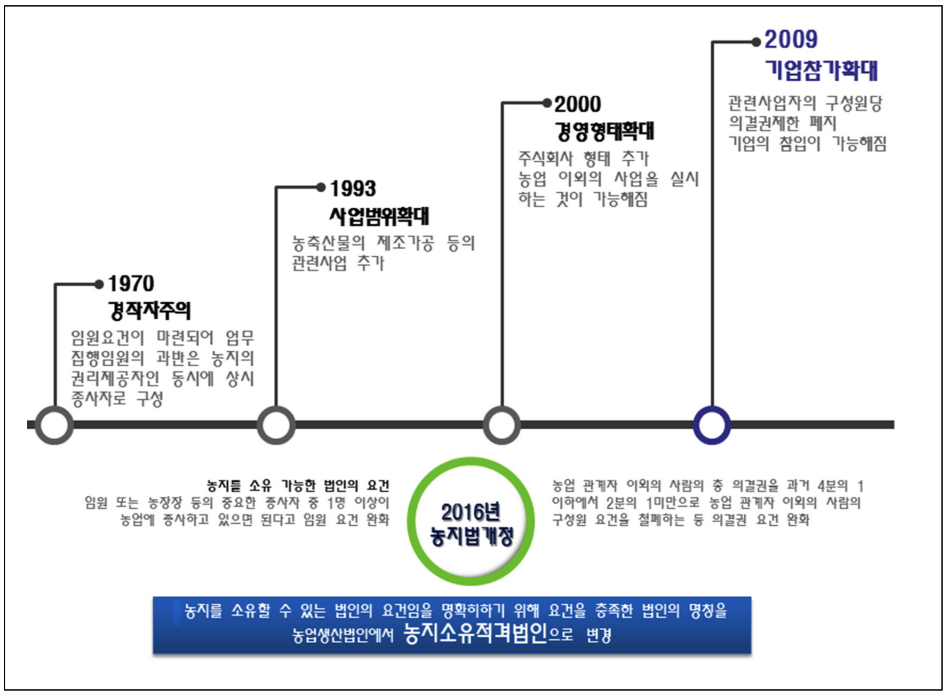

자료: 장민기(2019).

73) ① 대차계약에 해제조건이 부가되어 있을 것(해제조건의 내용: 농지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것), ② 지역에서 적절한 역할분담하에 농업을 할 것(역할분담 내용: 취락에서의 대화 참가, 농도와 수로의 유지활동 참가 등), ③ 업무집행임원 또는 중요한 사용인이 1인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할 것(농업의 내용: 농사에 한정되지 않고 마케팅 등 경영이나 기획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

3.2.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일본의 농업법인은 크게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나뉘고,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생산분야 경영을 하는 2호 법인과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공동이용시설 등을 하는 1호 법인으로 나뉘고, 회사법인은 형태에 따라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가 있다<그림 5-2>.

〈그림 5-2〉 일본 농업법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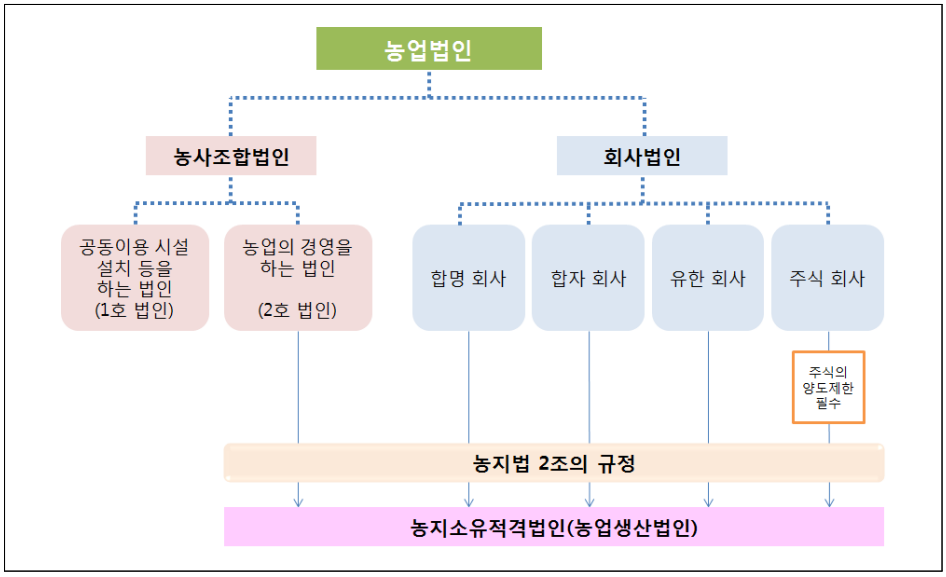

자료: 日本 農業法人協會(2020).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합명·합자·유한책임 회사 등이 농지 소유 권리가 있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된 사업이 농업과 농업 관련 사업이어야 하는데, 농업 및 농업 관련 사업이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절반을 초과해야 한다. 농업 관련 사업은 ① 농축산물을 원료·재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 ② 농축산물의 저장·운반, ③ 농축산물의 판매, ④ 농업생산자재의 제조, ⑤ 농작업 수탁 등이 해당된다. 누구나 농지 소유 자격이 되는 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만, 의결요구사항으로 법인의 총의결권 또는 총사원의 과

반수는 ① 농지를 제공한 사람, ② 그 법인의 농업의 상시 종사자(원칙적으로 연간 150일 이상 종사), ③ 기간적인 농작업을 위탁한 개인, ④ 농지 중간 관리기구 등을 통하여 그 법인에 농지를 대출하는 개인, ⑤ 농업 협동 조합, 농업 협동 조합 연합회, ⑥ 지방 자치단체(시정촌)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임원은 ① 농지소유자격 법인의 이사 등의 과반은 법인의 농업(관련 사업 포함)에 상시 종사(원칙 연간 150일 이상)해야 하고, ② 그 법인의 이사 등 또는 법인의 농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직원 중 1명 이상의 사람이 법인의 농사에 종사(원칙 연간 60일 이상)해야 한다(Yamato 2020)<표 5-9>.

〈표 5-9〉 일본의 농업법인 주요 법적 형태별 특징

항목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개인회사)	합동회사
근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회사법	
목적	협동이익의 증진	영리 추구	
구성원	농민 3명 이상	1명 이상	
임원	이사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업무집행사원 (선택)
배당	종사 분량 배당, 이용 분량 배당, 출자 분량 배당 중에 선택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정관에 따라 출자에 의하지 않고 배당도 가능)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함
의결	1인 1표	1주 1표	1인 1표
의사결정	총회에 의한 의결	주주 총회	원칙 만장일치
영업세	농업은 비과세 축산업은 제외	있음	있음
법인세	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법인 - 소득 800만 엔 이하: 15% 소득 - 800만 엔 초과: 19%	자본금 1억 엔 이상: 23.4% 자본금 1억 엔 이하 - 소득 800만 엔 이하: 15% - 소득 800만 엔 이상: 23.4%	
등록 면허세	비과세	자본금 7 / 1,000 (최저 15만 엔)	자본금 7 / 1,000 (최소 6만 엔)
조직 변경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합동회사로 직접변경 불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가능 농사조합법인으로 변경 불가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농사조합법인으로 변경 불가

자료: Yamato(2020).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농업법인경영체를 5만 개로 증가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법인 형성을 지원한다(日本 農林水産省 2018).

농지와 관련하여서는 도도부현마다 1개의 농지중간관리기구를 두어 지역 내 분산 이용되는 농지를 정리하여 집약화된 농지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농지중간관리기구는 경작포기지 등을 임차하고, 주요 농업 담당자(법인 경영, 대규모 가족, 마을 영농 등)가 정리된 형태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는 역할을 한다.

경쟁력 있는 농업 및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 지원 교부금 지급을 통해 기계와 시설 정비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산지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경영 발전을 위한 도도부현 교부금과 국가가 직접 채택하는 생산사업 모델 육성 지원이 있다. 도도부현 교부금은 집·출하 저장시설, 도매시장 시설 등의 산지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유형과 선진 농업 경영 확립을 위해 경영 고도화에 필요한 농업용 기계·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유형, 지역 농업인을 육성 및 경영 기반 확립을 위한 공동 이용 기계·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새로운 생산 사업 모델의 확립은 생산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거점이 되는 사업자가 협력하는 생산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실현하는 새로운 생산 사업 모델의 육성을 지원한다.

6차산업화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식량산업 6차산업화 추진 교부금을 지급하고, 6차산업화 시설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B2B 수요 대응, 신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대응을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성과 창출을 이끈다. 농림어업자 등이 다양한 사업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도자금 등의 융자 또는 출자를 활용하여 6차산업화에 진출할 때 필요한 가공·판매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한다.

농업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해 농업 고용사업을 통해 신규 농업법인 등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목적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지원한다. 고용 창출 및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신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지원, 2년간 보조금 120만 엔을 지급한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연수를 지원, 처음 2년간은 보조금 120만 엔, 이후 2년간은 보조금 60만 엔을 지원한다. 차세대 경영자 육성을 위해 법인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파견 연수를 지원, 2년간 보조금 120만 엔을 지원한다. 또한, 산지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의 새로운 업무 방식 구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 새로운 업무방식 지구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산지 간의 연계, 다른 산업에서의 노동력 융통, 육아 세대나 실버 인재의 활용 등의 근로 방식 개혁을 실시한다.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이 목표로 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한 농업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능력 있는 농업인이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기 자금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운 농업 경영 개선 관련 자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농업근대화 자금과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이 있다.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과 경영체육성강화자금, 농업개량자금, 청년 등 취농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금 차입의 절차 및 양식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각 자금을 세트로 빌릴 수도 있다.

일본은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 농사조합법인 중 농지소유적격법인에 대해 사업세를 비과세한다. 농사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로 조합원에 대한 종사분량배분[74]을 손비(損費)처리한다. 세율은 일반세율 23.2%가 아닌 19%로 하고, 800만 엔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도 적용되는데, 농용지(農用地) 구역 내의 농지를 지역 내의 의욕 있는 농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농지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에서 특별 공제를 인정해 준다(이동규 외 2018). 자본금 1억 엔 이하 법인 등이 콤바인, 트랙터 등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한 경우 통상적 감가상각에 더해 30%를 특별 상각하거나 취득액의 7%를 소득공제 받는다. 농지소유적격법인은 영업세(事業稅)를 비과세한다.

74) 종사분량배분(從事分量配分)은 이용분량배당 및 출자배당과 더불어 농사종사법인이 잉여금을 배당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농사조합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한 종사분량배분은 급료, 임금, 상여금과 같이 손비처리한다.

3.3. 농업법인 현황 및 성과

농업경영체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일본 농업경영체 중 조직경영체는 3만 6천 개소(전체의 2.9%)이다<표 5-10>. 농업경영체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조직경영체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직경영체 중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가 3만 3백 개소(84.2%), 농사일을 수탁하는 경영체가 5천 7백 개소(15.8%)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 중에서도 법인경영체는 2만 3천 4백 개소(77.2%)이다. 조직경영체 중에서는 법인경영체가 2만 6천 1백 개소(72.5%)로 가장 많다. 법인경영체 중에서도 회사법인이 1만 4천 5백 개소(55.6%)로 가장 많다.

〈표 5-10〉 일본의 조직 형태별 농업경영체 변화

단위: 천 개소

			2005	2010	2015	2017	2019
농업경영체 ①+②			2,009.4	1,679.1	1,377.3	1,258.0	1,188.8
가족경영체 ①			1,981.2	1,648.0	1,344.3	1,223.1	1,152.8
조직경영체 ②			28.1	31	33	34.9	36
농산물 생산 여부	농산물 생산 조직경영체		-	-	-	28.8	30.3
		법인경영체	8.7	12.5	18.9	21.8	23.4
	농작업 수탁 조직경영체		-	-	-	6.2	5.7
법인화 여부	법인경영체 합계		8.7	12.5	18.9	24.8	26.1
		농사 조합 법인	1.7	3.1	5.2	7.1	7.9
		회사	6	8.4	12.1	13.7	14.5
		각종단체	0.6	0.7	0.8	3	2.7
		기타 법인	0.4	0.4	0.8	1	1
	비법인 조직경영체		19.4	18.5	15.1	10.2	9.9

주: 농산물 생산 조직경영체는 "농산물의 생산만을 실시하는 경영체" 및 "농산물의 생산과 농작업 수탁경영체"를 말함. 법인경영체는 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 중 판매목적의 것으로, 1호 1법인은 포함하지 않음. 회사는 "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합동회사 및 "보험업법"에 따른 상호회사를 말함. 2005년 이전에는 유한회사를 포함. 각종 단체는 농협, 농업공제조합이나 농업관계단체, 또는 삼림조합 등의 단체를 말함.
자료: 日本 통계포탈(e-stat); 日本 農林水産省(農林業センサス).

2019년 농지소유적격법인수는 19,213개소로 2010년 11,829개소에 비해 1.6배 가량 증가하였다<그림 5-3>. 2009년 「농지법」이 개정되어 일반 법인의 참여가 가

능해지면서 농업에 진입하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에 진입하는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성장세가 가장 빠르며, 농사조합법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5-3〉 일본 농지소유적격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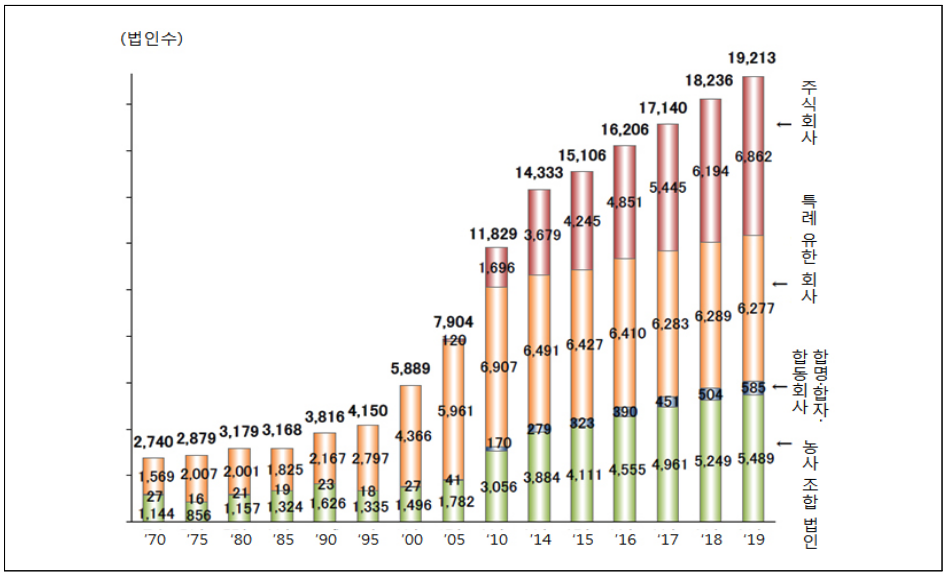

주: '특례 유한회사'는 2005년 이전에는 유한회사의 법인수이다.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農業経営統計調査)(https://www.maff.go.jp/j/tokei/kouhyou/noukei/, 검색일: 2020. 8. 15.).

농업생산법인 가운데 가족농업경영이 법인화한 것을 구분한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2010년 농림업 센서스에 따르면 법인화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를 포함하여 17,033개이고, 이 중 가족경영체(1호1법인)는 4,558개로 약 30%를 차지한다. 2015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동부 3개 현(岐阜, 愛知, 三重)에 대한 조사 결과, 농가가 주식회사화하거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을 통해 법인화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日本 農林水産省 2015). 농가 법인 경영체 수는 1,690개로 2005년 대비 10년 동안 30% 증가하였는데, 이 중 주식회사가 1,062개(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장민기 외 2019).

일본의 마을영농 수는 2019년 기준 14,949개로, 이 중 법인 마을영농 수는

5,301개(법인화 비율 35.5%)였다<그림 5-4>. 마을영농 수는 2005년 10,063개에서 증가해 오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다소 증가세가 꺾였지만, 법인화율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다. 마을영농 조직을 구성하는 마을 수 규모를 보면, 하나의 마을로 구성된 경우가 73.2%이고, 2개 마을이 10.4%, 3~4개 마을이 8.9%, 5개 이상 마을인 경우는 7.4%였다. 마을영농을 구성하는 농가 수 규모로 10~19가구인 경우가 26.6%로 가장 많고, 9가구 이하 19.1%, 20~29가구 19.1%, 30~49가구 18.5%, 50가구 이상이 16.8%였다. 마을영농이 법인화된 경우 평균 참여농가가 41가구로 비법화 경우(30가구)보다 많았다. 마을영농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기계의 공동소유·공동 이용'(80.6 %), '농산물 등의 생산·판매'(77.5 %), '재배 지역의 단지화 등 마을의 토지 이용 조정'(56.8 %), '공동 농작업(농기계 이외)'(50.7%), '방제·수확 등 농작업 위탁'(43.5%), '마을의 영농을 일괄 관리·운영'(28.0%) 등이 있었다(日本 農林水産省 2019).

〈그림 5-4〉 일본의 마을영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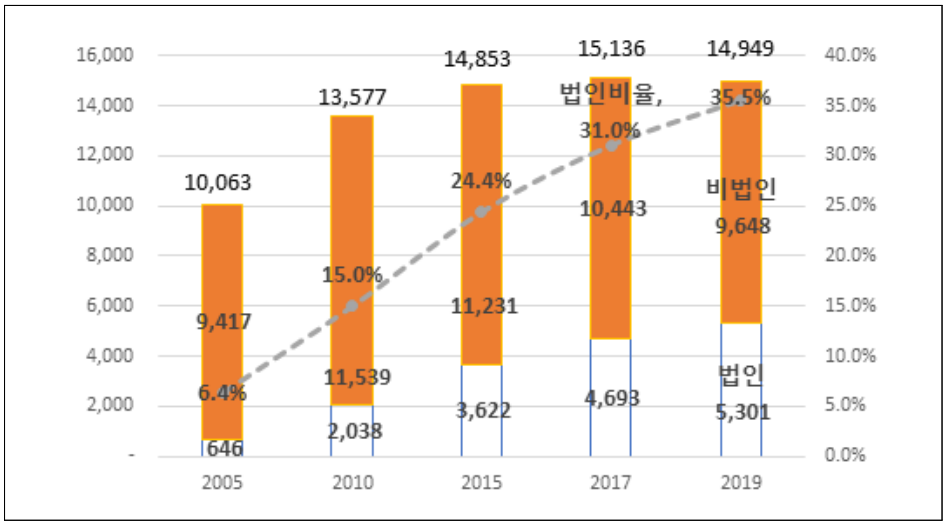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2019).

2009년 이후 기업의 농업 참여가 가능해지면, 기업참여법인이 증가하고 있다.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 경영을 실시하는 일반 법인은 2018년 12월 말 기준 3,286개

로, 2009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임대 방식에 의한 진입을 전면 자유화하고 개정 전에 비해 약 5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日本 農林水産省 2018)<그림 5-5>.

〈그림 5-5〉 일본의 농업 분야 기업 진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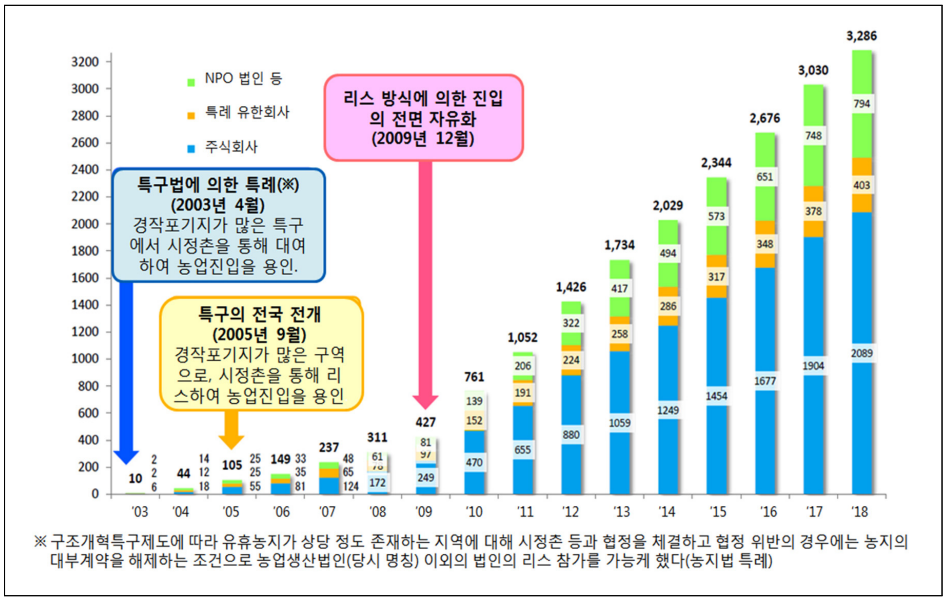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農業経営統計調査)(https://www.maff.go.jp/j/tokei/kouhyou/noukei/, 검색일: 2020. 8. 15.).

법인화의 성과로 일본의 농업경영체 유형별 경지면적과 매출 규모를 보면(2015년 기준), 법인에 의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지 규모를 보면, 10ha 이상이 대규모 경영체가 전체 경영체의 3.9%인 데 비해, 법인경영체는 30.7%였다. 가족경영체에서도 일반 농가는 10ha 이상이 3.0%였지만, 법인화된 가족경영체는 36.6%가 10ha 이상이었다<표 5-11>. 매출 규모를 보면, 연매출 5천만 엔 이상이 전체 경영체의 1.3%인 데 비해 법인 경영체는 28.6%를 차지하였다. 가족 경영체에서도 일반 농가는 연매출 5천만 엔 이상이 0.8%였지만, 법인화된 가족경영체는 31.7%였다.

〈표 5-11〉 일본 농업경영체 유형별 경지면적과 판매액 규모(2015년 기준)

	경지 규모				
	1ha 미만	1~5ha 미만	5~10ha 미만	10~50ha 미만	50ha 이상
전체	741,363 (53.8)	530,890 (38.5)	52,229 (3.8)	45,073 (3.3)	7,711 (0.6)
법인경영체	10,171 (37.5)	5,270 (19.4)	2,567 (9.5)	6,813 (25.1)	1,519 (5.6)
가족경영체	727,812 (54.1)	525,483 (39.1)	49,167 (3.7)	36,587 (2.7)	4,476 (0.3)
- 가족경영체 중 법인	1,063 (24.6)	1,134 (26.2)	422 (9.8)	1,223 (28.3)	359 (8.3)
조직경영체	13,551 (41.1)	5,407 (16.4)	3,062 (9.3)	8,486 (25.7)	1,645 (5.0)
- 조직경영체 중 법인	9,108 (40.0)	4,136 (18.2)	2,145 (9.4)	5,590 (24.5)	1,160 (5.1)
	매출규모				
	500만 엔 미만	500만~1,000만 엔 미만	1,000만~5,000만 엔 미만	5,000만~1억 엔 미만	1억 엔 이상
전체	1,154,303 (83.8)	97,416 (7.1)	108,547 (7.9)	10,451 (0.8)	6,549 (0.5)
법인경영체	8,623 (31.8)	2,398 (8.8)	8,346 (30.8)	3,215 (11.9)	4,519 (16.7)
가족경영체	1,139,430 (84.8)	94,630 (7.0)	99,926 (7.4)	7,781 (0.6)	2,520 (0.2)
- 가족경영체 중 법인	869 (20.1)	366 (8.5)	1,719 (39.8)	776 (18.0)	593 (13.7)
조직경영체	14,873 (45.1)	2,786 (8.4)	8,621 (26.1)	2,670 (8.1)	4,029 (12.2)
- 조직경영체 중 법인	9,108 (40.0)	4,136 (18.2)	2,145 (9.4)	5,590 (24.5)	1,160 (5.1)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농림업 센서스).

3.4. 최근 동향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기업의 농업 참여 촉진을 통해 농업생산법인의 활성화 및 법인 경영관리 능력 향상, 경영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

업생산법인의 법인격을 추가하고, 임대차를 활용하여 일반 법인의 농업참여를 자유화하였다. 「농지법」 개정에서 임대 방식에 의한 진입을 전면 자유화하여, 농지 소유적격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농업 분야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져 여성 노동자가 가사와 농사일을 부담함으로써 과중화되어 있는지, 가족 노임의 적정한 평가와 지불을 하고 있는지, 농약과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는지가 주 관심사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 및 경영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농업법인 투자육성사업)을 실시하여, 투자 주체(주식회사 또는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였다. 민간금융기관 등은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등을 설립하고 농업법인투자육성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출자를 받아 투자리스크를 분산하여 농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日本 農林水産省 2020b). 이 밖에 농업법인에 대한 인력공급 지원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취농희망자를 새로 고용하여 연수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연간 최대 120만 엔, 최장 2년간)를 지원하는 농업고용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도도부현별로 농업경영상담소를 운영하여 경영 의욕이 있는 농업인의 창의적 연구를 활용한 농업경영을 지원하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해 농업경영 상담체제를 정비하고, 경영 상담, 전문가 파견 등의 대응을 지원해 법인화 등을 촉진하였다. 또한 '사업 승계 세제'를 확충하여 사전의 계획 책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승계하는 주식과 관련되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100% 유예·면제하였다. 2018년도부터 10년간은 후계자가 증여·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증여세·상속세의 100%가 유예·면제되고, 이후에는 약 53%가 유예·면제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300명 이하의 비상장 중소기

업자(농사조합법인은 제외)이며, 자산관리회사[75]가 아니어야 하고, 사전에 '특례 승계계획'을 책정한 후 광역자치단체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주요 시사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은 1950~196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농 경영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을 도입하였다. 제도 실시 이후 그동안의 각국 농업법인 변화 동향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가의 법인경영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제도 초기부터 가족 중심의 농업법인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고, 1980년대 1인으로도 법인 구성이 가능한 유한농업경영회사의 도입,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모든 형태의 법인에서 유한책임하에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993년 신농정 체제 이후 가족 내의 노동관계나 역할분담의 명확화, 가계와 경영의 분리, 생활자산과 경영자산의 분리, 고용노동자의 복지 증진, 경영관리능력, 자금조달력, 거래비용 감소 등을 위해 1호 1법인화를 촉진하고 있다(장민기 외 2019).

둘째, 가족농 확장 형태로서의 지역 단위 공동농업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가족농들의 결합체인 공동농업경영법인(GAEC)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농사조합법인에 더해 1990년대 신농정 체제하에 마을 단위로 하여 농업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경영하는 마을영농(集落営農) 법인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영농 후계자 부족 문제 대응 차원에서 지역 농업과 농촌 사회 유지 차원의 협업적 경영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

75) 자산 중 임대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비중이 70% 이상인 회사(자산보유형 회사) 또는 이들의 운용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인 회사(자산운용형 회사).

동독 체제하의 농업생산조합(LPG)이 통독 이후 가장 규모화된 농업법인인 영농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들 경영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농업인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농업법인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관리하고, 전면적으로 구성원들이 농업생산 활동에 공동참여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한다.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농지소유적격법인)과 일반생산법인으로 구분하고, 농업생산법인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도 농업 생산 활동과의 연관성 정도에 따라 정책 지원 및 조세 혜택에 대상이 되는 농업활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넷째,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 기구를 두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은 농업회의소 산하 '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뿐만 아니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은 농지권리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위원회의 확인과 상담이 필요하여 법인 설립자는 설립 시 농업위원회를 반드시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은 농가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발전된 형태의 농업경영체이며 인정농업자이기 때문에 시·정·촌 당국은 우수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해 더하여 농업경영상담소를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하여 농업법인의 농업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협회에서 회원조합의 경영 및 조세 문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상담을 하고,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조합에 대해서도 필요한 상담을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협회에서는 법인 설립과정에서부터 회원조합이 조합원 이해에 부합되는지를 보고, 이후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 경영 상태는 정상인지를 심사한다(김수석·박석두 2006).

다섯째, 비농업인의 농업참여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유한책임농업법인, 농업경영조합 등의 법적 형태를 통해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농업 활동의 다각화·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일본은 농업생산법인 활성화 및 법인 경영관리 능력 향상, 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기업의 농업 참여 촉진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임대차를 활용하여 일반 법인의 농업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제6장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

제6장

농업법인 내실화 방안

앞선 장에서의 농업법인 제도 현황 및 변천의 시사점, 농업법인 현황과 경영 실태 분석,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 고찰과 더불어, 비농업 분야 기업 육성 정책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토대로 농업법인 관련 문제점을 종합하고,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1. 농업법인 내실화의 방향

1.1.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발족 이후 설립의 규제 완화, 목적 사업의 다양화 및 정책 지원 등으로 농업법인의 외연적 성장이 이뤄졌다. 2000년 대비 2018년 기준, 농업법인 수는 대략 6배, 출자자 수는 4배, 종사자 수는 5배, 매출은 10배로 증가하였고, 농업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 비율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에 의한 고용은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대비 10%를 넘어섰고, 생산은 15% 정도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농민의 조직화, 다각화된 농업 경제활동의 촉진, 소득·일자리 창출, 농업경영체의 과학적·합리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법인은 급격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구조 개선에 일정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면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농업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가공·유통 및 서비스 분야의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출자자 공동운영보다는 대표자 단독 운영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인당 출자자·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법인 운영의 수익성·성장성은 점차 악화되고, 산출 대비 성과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었다(대다수 법인이 자원이 과소 투입되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규모수익 체증 상황).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지원이 늘면서, 정부 지원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되지 않는 부실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업 목적, 구성, 농지 소유 등의 관점에서 농업법인 조직 형태(영농조합, 농업회사)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조직 형태별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 농업 생산 분야 법인이 위축되고 있었고, 최근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1.2. 내실화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 상황에서 고질적인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의 증가로 경영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 환경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농촌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법인 경영체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제도 발족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농업법인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 이면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내외적으로 다양한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서 농업법인”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기반하여 농업 구조 정책 및 농촌 정책에 있어 농업법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질적인 내실화와 더불어 양적 내실화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단위 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농업경영체 법인화, 청년세대의 농업법인 창업을 통한 유입 활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련한 관리체계와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농업법인이 개별 경영체 단위 성과뿐 아니라 농촌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2. 세부 추진과제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농업법인 내실화 방향 및 육성 목표·계획 수립하에 농업법인을 통한 농가·지역 조직화 및 창업 활성화라는 양적 내실화 방안과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의 차별적 육성, 농업법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세제 지원 개선 등 질적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 농업법인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농업법인 지원체계 구축, 농업법인 설립·운영 관리체계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그림 6-1>.

〈그림 6-1〉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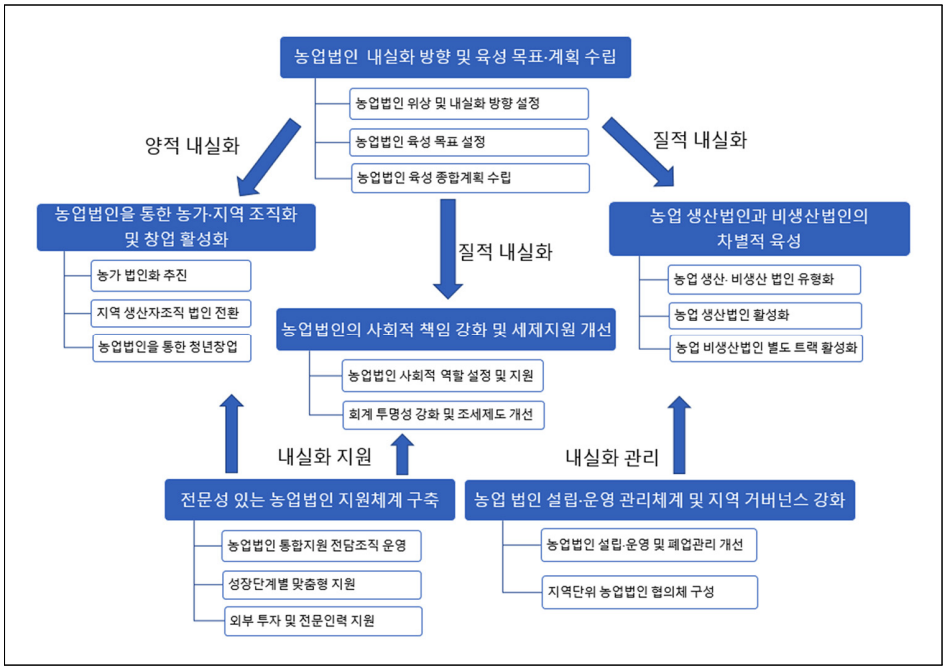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1. 농업법인 내실화 방향 정립 및 육성 목표·계획 수립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농업법인 위상 재정립 및 내실화의 방향

농업법인 제도 발족 이후 30년이 지났고, 2만 개 이상의 농업법인 경영체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활동하며 전체 농업 종사자와 농업 총생산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한 제대로 된 종합적인 육성 목표와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한 육성

목표나 계획은 농가 경영체 육성의 부수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 왔다. 농가 경영체의 경우, 1980년대부터 농어민 후계자 육성 계획에서 마을당 1명 이상의 후계농 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을 시작했고,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정예농업 20만 호(쌀 전업농 7만 호, 원예 11만 호, 축산 2만 호)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잠재인력 확보, 성공적 정착 지원 방안,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경영 개선·위기관리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방안 등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마상진 외 2013). 하지만 농업법인경영체의 경우 별도의 육성 목표나 체계적 지원 방안 없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현재 농업법인이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하였지만, 질적으로 내실이 부족한 이면에는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그에 따른 종합 육성 목표와 계획이 부재한 데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 볼 수 있다. 농업법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육성한다면 어떠한 발전방향을 지향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농업법인에 대한 현 단계의 농업 정책은 1990년대 중반 대대적 설립 지원을 통해 부실 농업법인이 양산되자, 이후 정책사업 자격 및 사후관리기준 강화 등 소극적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다(김수석 2014). 부실 농업법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 농업법인 내실화의 방향을 기존 법인들의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확대를 등한시하는 수세적 접근을 취한다면, 자칫 농업법인 경영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영체·지역·국가 차원의 다양한 농업·농촌의 변화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요 농업국에서 농업법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얻으려는 성과는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우리 농업에도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농업법인 육성 통해 우리 농업경영체에게 취약한 경영관리능력 향상, 대외 신용도 향상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 개선,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과 임원 보수의 비용처리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 다양한 인력 (직원) 확보를 통한 경영의 다각화 등 사업 전개의 가능성을 넓혀 경영 발전가능성 확대, 농업 종사자의 후생 증대, 경영승계를 통한 경영체의 지속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농업법인을 통한 취업 형태로 경영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의 유입이 확대되고, 지역 농업 조직화·규모화가 이뤄지고 이

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경영체, 지역 차원의 성과에 힘입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역량 있는 우수 인력들에 의한 농업법인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고, 기존 농가 경영체 및 생산자 조직의 과학적 경영을 위해 농업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경영자 또는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법인경영체의 전문성을 확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세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혁신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업법인경영체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언제까지 어떤 농업법인을 얼마나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

〈표 6-1〉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경영체, 지역, 국가 차원의 기대 성과

차원	기대 성과	
경영체	경영관리능력 향상	- 경영 책임에 대한 자각을 촉구, 경영자로서의 의식 개혁을 촉진 -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 관리가 철저
	대외 신용도 향상 및 자금 조달 용이	- 재무 제표 작성을 기반으로 금융 기관이나 거래처의 신용이 증가 - 각종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한 보조·융자 사업 수혜
	유한책임 및 비용 절감	-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 - 임원 보수의 비용처리 - 다양한 세제 혜택(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
	경영 발전가능성 확대	- 다양한 인력(직원)을 확보하여 경영의 다각화 등 사업 전개의 가능성을 넓혀 경영의 발전을 기대
	농업종사자의 복리 후생 증대	- 사회 보험, 노동 보험의 적용에 따른 종사자의 복리 증진 - 노동 시간 등의 취업 규칙의 정비, 급여 제 실시 등에 의한 취업 조건의 명확화
	경영승계 원활화	- 후계자가 없는 농가는 직원 중에서 의욕 있는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
지역	신규 취농 용이	- 농업법인에 취농하여 초기 부담없이 경영 능력, 농업 기술을 습득
	지역 농업 조직화·규모화	- 생산자 조직, 마을 공동사업 등을 발전시켜, 지역 농업의 조직화·규모화로 농업의 규모·범위 경제성 달성
	지역 소득·일자리 창출	- 지역 농가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해 소득 창출 - 지역 주민들에게 상용 또는 단기 일자리 제공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농작업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 해소에 기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 농업법인의 각종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
국가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전문 경영체를 통한 위기 관리 능력 증대 및 농업의 가격, 품질 경쟁력 증가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유지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자료: 김수석·박석두(2006); 장민기(2019); 日本 農業法人協會(2020) 등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

농업법인 육성 목표 설정

농가의 법인화와 더불어 작목반, 마을 공동사업 조직의 법인화, 기존 농업법인의 경영 내실화 등을 통해 어떤 농업법인을 어느 정도까지 육성하고, 이들 농업법인을 통해 우리 농업 생산 활동 및 비생산 활동에서 어느 정도를 담당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육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업경영체 대비 농업법인 수는 아직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프랑스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의 35%(2016년 기준 전체 농업생산의 70%), 독일은 11.7%[76](2016년 기준 전체 농업경지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프랑스,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농산물 생산 조직경영체가 전체 농업경영체의 2.5% 수준으로 매년 농업경영체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농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기준[77]으로 보면 0.7% 수준(2019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체는 169만 9,048개로 이중 농업인 경영체는 168만 6,068개, 농업법인 경영체는 1만 2,980개임)에 불과하다.

우선, 농업 경영을 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농업경영체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통계[78]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육성법」상에는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누고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경영체 개념과 농업 종사자 개념이 혼용[79]되어 있어 제대로 된 농업경영체 통계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 농업국의 사례처럼,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한 경영 단위로서의 농

76) 인적회사와 법인을 합한 조직경영체 기준.

77) 통계청 통계상으로 농업법인(2018년 기준 2만 1,780개)과 농가(2019년 기준 100만 7,158농가)는 동일한 경영체 개념하에 분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두 경영체 유형의 비중을 비교할 수 없다.

78)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행정자료일 뿐이지 정부 정책 형성,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통계라 할 수 없다.

79) 현행법상에 농업인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농을 농업경영의 주체로 보고 농업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체험 등으로의 확장을 고려하여 농업법인 종사자까지 농업인으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업경영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80]와 더불어, 과학적 영농을 실시하는 법인경영체 비중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2018년 기준 생산액 기준으로는 작물재배(식량작물, 원예특작) 11.1%, 축산은 22.4%를 차지). 농업법인 육성과 관련한 양적 목표[81]와 더불어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평가·지원 등의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질적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본의 농업법인화 지원 종합사업

○ 일본 정부는 2013년 일본재흥전략[82]에서 2023년까지 농업법인 수를 2010년 대비 4배(총 5만 개)로 증가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법인 형성을 지원한다(日本 農林水産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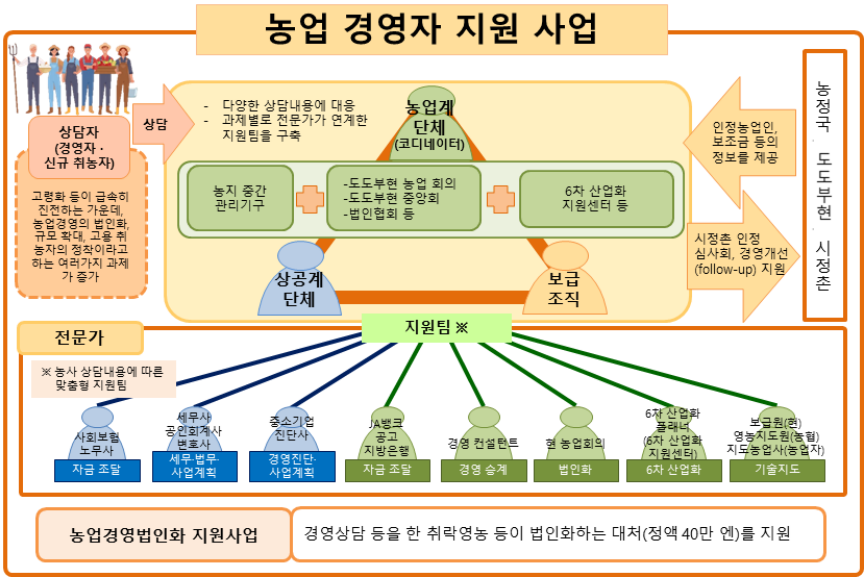

80) 농업경영체를 '농업인 (운영) 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나누고, 농업인 경영체는 기존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고려하여 1천 ㎡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81) 농업법인 육성을 통해, 최근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목표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농림수산성에서는 도도부현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화 추진 체제의 정비나 세무사와 중소기업진단사 등의 법인화·경영 상속에 관한 전문가 파견, 상담 창구 설치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농업경영 상담·진단을 실시한 후 법인화(정액 40만 엔)와 법인설립 이전 조직화(정액 20만 엔) 활동을 지원한다.
○ 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와 국가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 산업 기술 종합 연구기구(이하 "농업 연구소")는 생산 현장과 농업 경영 역량 강화를 연계·협력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농업법인협회원들의 기술상담에 농업연구소가 지원하고 또한 농업연구소기구의 최신 연구 성과를 농업법인협회를 통해 재빨리 농업 생산 현장에 도입하고 있다.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2018).

농업법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농업법인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13년 일본재흥 전략에서 2023년까지 농업법인 수를 2010년 대비 4배(총 5만 개)로 증가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농업법인화 지원 종합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법인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日本 農林水産省 2018, 농업법인화 지원 종합사업 글상자 참조). 우리나라의 타 부처에서는 소관 법인체 육성을 위한 중장기 육성 계획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1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83]을 수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 및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

82)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아베정권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6월 일본재흥(再興)전략(JAPAN is BACK)(日本 內殼部 2013)을 발표하였다.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조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시책방향을 제시하였다.
83) 2020~2022년 계획이 수립·실시되고 있다.

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84]을 수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4053호)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그림 6-2>.

〈그림 6-2〉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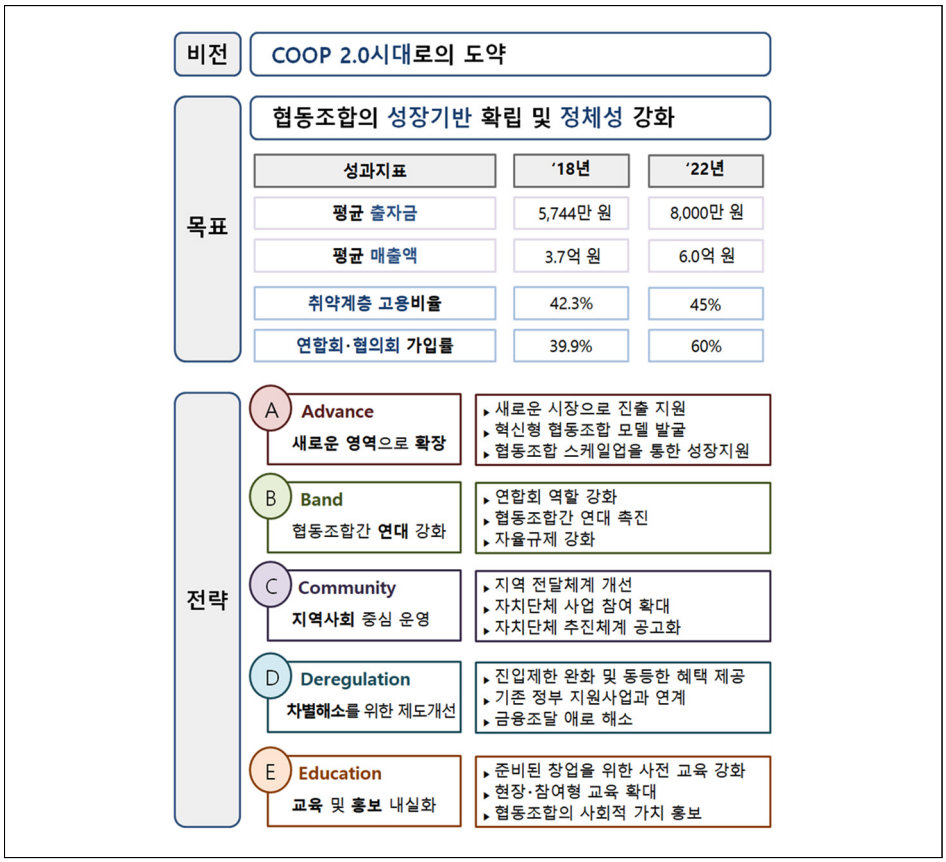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84) 현재 제3차 계획(2018~22)이 실시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육성 정책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3조와 제20조와 제22조[85]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경영체 육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은 대부분 농가경영체 중심으로 수립·추진되다 보니 농업법인 육성과 관련한 체계적인 종합 육성계획이 없다. 앞선 <표 2-7>에서 정리된 바와 같은 다양한 농업법인 관련 정책을 포괄하면서도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의 비전 달성에 기여하는 농업법인 고유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기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법에 농업법인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주체와 추진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진된 정책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2. 농업법인을 통한 농가·지역 조직화 및 창업 활성화

기존 농가의 법인화, 지역 단위 생산자조직의 법인화, 청년세대의 법인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중에 농업법인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5)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 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체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가의 법인화 추진

농업경영체의 경영 합리화 및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농은 법인 경영체에 비해 취약하기에, 주요 농업국에서는 가족농의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법인 제도는 농가인 가족농의 법인화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조직 및 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영체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경영체를 특수 경영체로 인정받고, 가족농을 법인화해서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법인의 유한책임으로 농업경영체가 가지는 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나아가 부모 자식 간의 법인경영을 통해 승계농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농업법인 제도를 통해 가족농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협업경영을 지향하였으나, '신농정' 개혁 이후 가족농을 법인경영체로 개편하는 쪽으로 목표를 전환하였다. 즉 영농 규모의 확대보다 농업경영의 내용과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농업법인이 가족농업경영의 보완적 형태보다는 발전적 형태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김수석·박석두 2006).

경영 승계자 부족[86] 등으로 인하여 영농 주체로서 향후 가족농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농가의 법인화를 통해 경영체의 지속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9) 조사에 따르면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 농가의 8.4%였다.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정책 추진에 따라 많은 농가들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9)에 따르면, 31,926개 농가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에서 농업법인 불참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농업법인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향후 농업

86) 농촌진흥청(2019) 조사에 따르면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8.4%였다. 이는 2014년 9.4%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법인을 설립 또는 참여하고 싶다는 비중이 31.5%였다. 경영주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농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일수록 향후 농업법인 참여 의향이 높았다. 향후 생산 규모 확대 또는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 증대를 꾀하고 있는 청년농을 중심으로 농업법인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의 농가 단위 법인화·활성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도 높았는데,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업법인 불참 농가의 과반(54.5%)이 찬성을 하고 있었다<표 6-2>.

〈표 6-2〉 농업인의 농가 단위 법인화·활성화에 대한 태도

단위: %

법인 참여	사례 수 (명)	농가 단위 법인화·활성화에 대한 태도				
		절대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불참 농가	762	2.8	13.0	29.8	44.9	9.6
참여 농가	287	2.1	16.7	19.5	45.6	16.0
전체	1,049	2.6	14.0	27.0	45.1	11.3

주: 결측치를 제거한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실문조사.

농가의 법인 참여에 정부 지원사업은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바,[87]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족 중심 농업법인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의 큰 두 축은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인데, 여기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가족농 육성'과 같은 가족농의 장점과 가치를 담는 농업법인 취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가족농은 식량 안보,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뿐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측면에서 규모화된 농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한다(임송수 2014). UN에서는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지정한 것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족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계와 경영의 분리, 가족 내 농업 노동관리나 역할 분담의 명료화, 경영관리 능력 향상, 자금 조달력 제고 및 소득이 높은 경우 세제

87)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활동 목적의 32.8%가 정부 지원사업 수혜였다.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농업법인으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가 대상으로 법인경영체제의 장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하고, 좀 더 손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농업법인 설립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88] 대다수가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89] 주식회사 설립은 농가 단위에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상당수 농가들에게는 농업법인 설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90] 최근에 농업회사법인의 회사 형태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가족 중심의 농업법인에게 매우 적합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등 경직된 조직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책임회사는 농업인 1인만으로 이사와 감사의 선임없이 설립이 가능하고 유한책임의 이점을 가질 수 있다<표 2-4>. 유한책임농업법인(EARL)이 도입되면서 가족 농업법인이 급격히 확장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2018년 새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가족 중심의 농업법인화 지원을 통해 기존의 농가 경영체보다 정책 및 세제 혜택 측면뿐 아니라 경영 확대 및 경영 위기 관리에도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법인 설립 여력이 안되는 농가의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출자를 통해 농가 차원의 농업 생산 이외 가공·유통 활동 참여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림 6-3>.

88) 출자자 구성 조사 결과 가족만이 출자한 법인 비율은 22.7%였다.

89) 이 연구의 농업법인 조사 결과 가족 출자 법인의 73.4%가 주식회사 형태로 이는 가족 외 출자자가 있는 경우(38.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90) 이 연구의 농가 조사 결과 농업법인 불참 농가 중 14.3%가 절차나 구성요건의 까다로움을, 13.2%가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무지를 법인 참여의 장애 요인이라 응답하였다.

〈그림 6-3〉 농업법인을 통한 농가·지역 조직화와 창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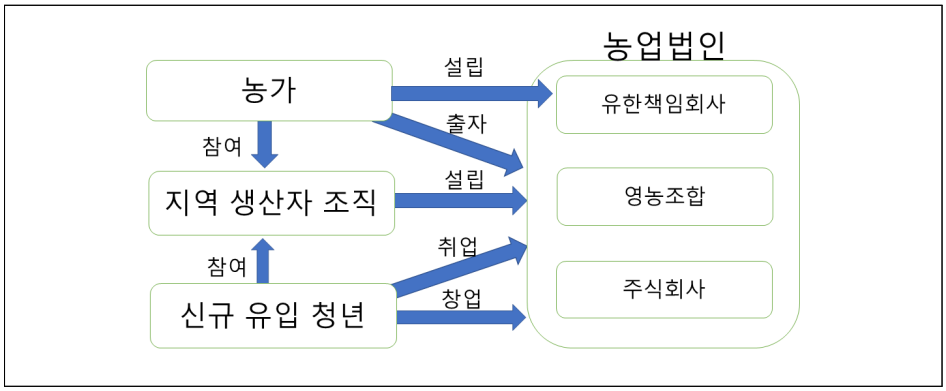

주: 농업법인 중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는 비중이 매우 적고, 영농조합,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에 비해 책임 및 설립 용이성 등에서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농업법인 설립 경로에서 삭제함.
자료: 저자 작성.

지역단위 생산자 활동 조직의 법인 전환

농업법인은 가족농의 영농조직에서 더 나아가 지역 농업·농촌의 공동경영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그림 6-3>. 우리나라 초기 농업법인들은 당초 작목반,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등이 생산자 활동의 조직화에서 태동된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생산자 조직 활동이 중요한 농업법인 설립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재 활동하는 농업법인의 30.9%가 생산자 조직에서 발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였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후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농지 이용의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영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농업법인체 중 영농조합(Agrargenossenschaft)은 집단농장인 농업생산조합(LPG)에서 전환된 것으로 법인경영체 중에 경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특히 동독지역의 농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09년 이후 전업농의 경영 규모 확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개별농가의 집합인 지역농업을 하나의 경영 단위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경영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2009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2016년) 등 공동경영체를 중심으로 고품질·저비

용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 교섭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더딘 수준이다.

마을 단위 농가 조직화 사례: 운암영농조합법인

운암영농조합법인은 후계농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생산자들과 공동영농경영을 통한 소득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 5명의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농기계를 운영하여 고령화된 마을의 농가가 작업하는 농지의 생산활동을 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아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이 농업법인의 매출로는 기록되고 있지 않으며 구성원 간 개인적 노임 및 지원활동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촌마을의 고령화로 인하여 영농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 농지의 이양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경작을 포기하는 농지가 늘어나거나 고령자의 경우 경작은 하지만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운암영농조합법인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공동경작, 공동방제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마을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도 대행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경작 활동을 통하여 기존 개별농가 단위의 경작에 비해 생산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어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영농장비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고령화되는 농촌마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마을 단위 공동영농을 통하여 전문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규모 마을별 생산조직의 법인화 모델로 향후 발전 목표를 두고 있다.

자료: 이 연구의 사례조사.

공동경영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마을 단위 지역농업의 공동경영시스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산간지역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생산 기반 정비도 미흡하여 농지가 황폐화되고 농촌 사회가 활력을 잃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농업법인 설립 추진 지원이 필요한데, 2015년 농업총조사의 지역조사에 따르면 농촌 마을 중에 농업법인이 있는 마을은 7.2%[91](영농조합법인 5.8%, 농업회사법인 1.9%)로

아직까지 마을 단위에서 농업법인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작목반이나 공동 선별, 공동 출하회 활동이 있는 마을은 30.3%[92]로, 이들 생산자 조직 활동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다면,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농가 설문조사 결과, 농업법인 불참 농가 상당수(56.4%)도 마을 농업법인 활성화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어, 이들 조직에 대한 체계적 법인 지원 시 활성화 가능성도 높다<표 6-3>.

〈표 6-3〉 농업인의 마을 단위 법인 활성화에 대한 태도

단위: %

법인참여	사례 수	마을 법인 활성화에 대한 태도				
		절대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불참 농가	761	5.0	15.2	23.3	46.6	9.9
참여 농가	285	5.6	17.5	15.4	44.6	16.8
전체	1,046	5.2	15.9	21.1	46.1	11.8

주: 결측치를 제거한 값임.
자료: 이 연구의 농가 실문조사.

마을 단위 농업 조직화에는 특히 역량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93]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다수인 농촌 마을 자체적으로 농업법인 경영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법인 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의 호응도가 높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94]을

91) 36,786개 마을 중에 2,664개 마을에 농업법인이 있었다(통계청 2015).
92) 11,161개 마을에 작목반과 공동선별·출하회가 있었다(통계청 2015).
93) 이 연구의 농업법인 조사 결과, 지역 생산자 조직에서 출발한 농업법인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없는 경우가 47.1%였다.
94) 농업법인의 부족한 경영 역량의 확보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지역 내 신규 고용을 확대하고자 2007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채용 지원금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원 분야 및 연차에 따라 1인 월 180만 원 이내 에서 경영체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활용해 본 법인체 중 61%가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되고, 인력 부족 문제 해결(87.0%), 이직률 감소(59.7%)에 도움이 되었다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마상진 외 2016).

더 확대하여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과 중간관리자를 확보하고, 청년인턴 채용 지원 사업(농업법인 인턴)[95]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경상북도가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아래 글상자 참조)과 같은 사업을 중앙 정부 사업화하여, 청년세대가 마을 단위 법인 조직을 통해 유입·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북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 사업 목적: 고령화 및 청년인구의 감소로 농촌공동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세대융합 및 농촌 활력 증진, 청년 유입을 통한 아이디어 기반 첨단 농정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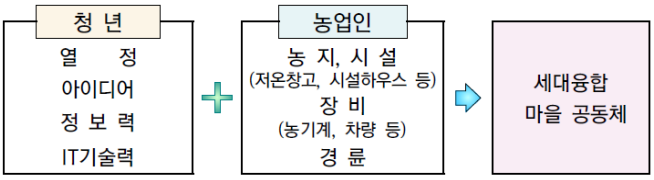

○ 사업 규모: 2019년 7개소, 2020년 3개소, 2021~22 10개소(개소당 3억 원 이내)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융자) 20%)

○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독립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지역공동체) 동일 행정리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5~1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영농회, 마을기업, 농업법인,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사업 완료 후 단체 등록 또는 법인화 의무)

자료: 경상북도(2020).

95)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40세 미만)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100만 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 원(6개월 기준)까지 지원(법인당 1~3명)한다.

법인을 통한 청년세대 농업 창업 활성화

최근 귀농 인구 증가와 더불어 청년세대의 농업 분야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영농 정착과 관련하여 농가경영체뿐 아니라 농업법인체 창업 역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농업 분야 종사자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농업 종사자가 증가[96]하고 있는데, 특히 30대 이하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97] 도시 및 비농업 분야 고용 사정의 악화, 농촌에서의 대안적 삶에 대한 지향성 증가로 인해 당분간 이러한 농업 분야 신규 유입 규모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마상진 외 2019). 하지만 신규 유입자들은 농촌 정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영농과 관련하여서는 초기 자본 마련 및 영농기반 마련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이 가진 전문성,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 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와 팀을 구성하여 농업법인 형태로 창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마상진 외 2017).

창업 초기 생각이 같은 동료의 발견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창업 품목이나 지역과 관련해 창업자에게 인적 네트워크나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때 개인 창업보다는 공동 창업(팀창업)이 권장된다(김종진 외 2018). 공동창업자로서의 팀원은 창업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 무보수로 함께 버텨 줄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도 하고, 투자 유치나 외부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장점이 있다(황보윤 2015). 농업 분야도 공동창업자가 각자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 자금 규모가 더 클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체를 설립할 경우에는 훨씬 큰 규모의 창업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혜택을 볼 수 있다(마상진 외 2017).

96) 1970년대 중반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6년 551.4만 명이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3.6%씩 감소하여 2017년 127.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7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1만 명 증가한 이후 9분기 연속(2019년 3분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2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음('17년 이후 3년 연속 연 변화율이 플러스: '17 0.47%, '18 4.66%, '19(p) 4.33%)(마상진 외 2019: 51).

97) 연령대별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증가하고, 40~50대는 기존의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영농 기반이 없지만 기존 농업인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접근하고자 할 경우, 특히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창업의 경우, 청년들에게 농업법인체 창업은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는 록야, 만나씨이에이(CEA) 등 창농 성공사례 다수는 청년들이 농업법인체를 통한 공동 창농 형태이다. 청년 창업농 법인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농업법인 지원 요건 완화, 투자 활성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대책[98]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재 여러 유관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법인화 지원을 단일 전담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 창업농 대상으로 농업법인 창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99] 농업계 학교 교육지원 사업[100]과 영농창업특성화 과정,[101] 한국농수산대학 교육과정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법인 운영·성공

98) 정부는 2인 이상의 청년농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신규 법인에 농업 분야 지원이 확대되도록 농업법인 지원 제한요건(운영 실적 1년 이상)을 완화하였다. 농고·농대 졸업생, 벤처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 지방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60% 이상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 펀드 등을 신설하였고, 6차산업화 펀드를 활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6차산업화에 투자하는 청년 창업농에 대하여 경영 다각화를 지원한다. 연령이 40세 미만이며 영농에 2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와 전문가 자문그룹의 개별 컨설팅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거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마케팅 비용 등)한다. 또한 청년 창업농의 기술 개발을 위해 청년농 운영 농업법인에 대해 농식품 벤처 창업 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0b).

99) 농업·농촌·농식품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2019년부터 농업계 및 비농업계 대학생(3~4학년)에게 영농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농촌 소재 업체에 취업과 창업을 조건부로 매 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농어촌 희망재단 2020)

100) '농고·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 분야 진출 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교육부의 지원체계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교육을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2019년 현재 총 33개 학교(고등학교 18개, 대학교 15개)가 현장실습, 진로탐색, 취·창업동아리, 국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마상진 외 2020).

101) 영농창업특성화과정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한 체계적 농업교육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갖춘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농고의 경우 '미래농업선도고교', 농대의 경우 '영농창업특성화대학' 등으로 추진된다.

사례 교육, 농업법인과의 산학협력 강화 및 농업법인 창업의 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수 농업법인, 청년농 설립 농업법인 등을 선별하여 농업법인 인턴 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현재 200명 규모 → 1,000명)하고, 법인취업 전(학교와 농업법인 간 산학협력 강화), 취업 중(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확충), 취업 이후 창농 사업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102] 수혜 대학생들의 재학시절 농업법인에서의 경험을 확대하여 많은 청년 세대가 농업법인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진로를 탐색하도록 의무교육[103]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의 농업법인 창업 사례

○ 농업회사법인 '록야'는 강원대에서 농업자원경제학, 원예학을 전공하고 2006년 농대 영농정착과정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청년이 강원도의 대표적 작물인 감자로 성공한 농업기업을 만든다는 계획하에 2011년 설립하였다.이들은 감자 중에서도 한입에 먹기 좋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꼬마감자'를 눈여겨봤다. 당시만 해도 농민들은 면적당 생산량이 일반 감자에 비해 적은 꼬마감자 생산을 기피했다. 두 사람은 육묘장을 이용하여 꼬마감자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들은 계약한 농가에 새로운 꼬마감자 재배법을 전수했고 2013년 특허도 받았다. 이후 대형 편의점 업체와 협업해 꼬마감자를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가정식 제품을 개발했다. 2명으로 시작했던 '록야'의 임직원은 현재 10여 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60억 원을 넘어섰다.

○ '만나씨이에이'는 카이스트 출신 두 청년이 2013년 설립한 수경재배 방식(아쿠아포닉스)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하여 농장 자동화 기술로 혁신에 성공한 농업벤처기업이다. 친환경 농장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과 제어 설비를 직접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인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유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을 통해 농장설치 비용 단가를 낮추고,

102) 농업·농촌·농식품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2019년부터 농업계 및 비농업계 대학생(3~4학년)에게 영농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농촌 소재 업체에 취업과 창업을 조건부로 매 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농어촌 희망재단 2020).

103) 장학금 수혜자들은 학기당 25시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노지방식보다 최대 15배 높은 생산성을 거두었다. 크라우드펀딩을 재원으로 하는 팜잇을 신규 설립하여, 농업인과 일반 투자자가 모두 투자하여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영농조합 상생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재배한 채소뿐 아니라 협력 농가에서 선별한 과일, 채소, 육류, 수산 등 다양한 신선식품을 소비자에게 정기 배송해 주는 '만나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약 5만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200억 원에 직원 120명을 고용하고 있다.

○ 해맑음팜은 광주에서 고흥으로 내려간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벼농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의 미래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2009년 법인을 설립하였다. 5명이 공동 출자하고 40여 명의 회원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귀리, 밀, 보리, 메밀, 콩 등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원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영농을 확대하여 경영비 절감 및 국내외 다양한 판로처를 확대하였다. 곡물 원물 형태와 단순 소포장 형태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단순 원물 생산·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공뿐만아니라 농업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을 활용하여 곡물바 만들기, 장류 담그기 체험, 팜 파티 등을 연계하여 융복합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19); 동아일보(2018); 이 연구의 사례조사.

2.3.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적 육성

농업법인 제도의 태동 시 영농조합은 협업적 농업경영, 농업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추구하는 조직 형태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후 비농업인 참여, 농지 소유 자격, 사업 내용이 확대되면서 두 조직 형태 간 차별성이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제도 태동의 근간이었던 영농조합보다는 적은 참여자로 설립이 용이한 농업회사법인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농지 등 영농 기반 확보가 필수적인 농업 생산 중심의 법인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선 장에서의 농업법인 운영 실태와 관련 요구 분석 내용을 보면 농업법인 조직 형태보다는 사업 분야, 특히 농업 생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농업법인을 농업 생산 법인과 농업 비생산 법인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육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을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으로 분화하게 되면, 농업 생산 법인은 농업(생산)경영체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과 동일한 농업생산자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농산물 유통 등을 담당하는 농업 비생산 법인은 농업생산자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법인의 경영과 출자에서 농업인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된다(김수석·박석두 2006). 이 연구의 농업법인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농업법인의 지나친 사업 다각화는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사업 유형 개수가 적을수록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높았는데,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은 농업법인의 사업 분야 특화 관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 유형화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의 구분은 농업 생산 활동 비중이 비생산 활동을 포함한 경영체 전체 활동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농업 생산 매출이 경영체 총매출에 일정 수준[104] 이상이어야 하고, 프랑스와 일본은 구성원이 일정 비중 이상일 경우 농업생산법인 자격 또는 농지 소유 자격을 부여한다.[105] 김수석·박석두(2006)는 조직 형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따른 차별적 정책 추진을 제안했지만, 이미 많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생산이 중심이 아니며, 일부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생산이 중심인 경우가 있다.[106] 따라서 조직 형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인증을 통해 생산·비생산 법인을 구분해야 한다. 이미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우 별도의 인증제[107]를 운영하여 해당 사업자를 구별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도 농업경영체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104) 생산 매출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105) 프랑스 공동농업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영농종사, 유한책임농업법인은 출자자의 50% 이상, 일본의 농지소유자격법인은 구성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106) 2018년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63.8%가 가공·유통·서비스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농업회사법인의 30.1%가 농업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107)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정관,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인증제 심사위원회(7명)를 통해 심사(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

농업인 참여 규모, 농지, 품목별 재배면적, 사육 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그림 6-4>(농업 생산·비생산 법인 규모 추정은 글상자 참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기적으로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6-4〉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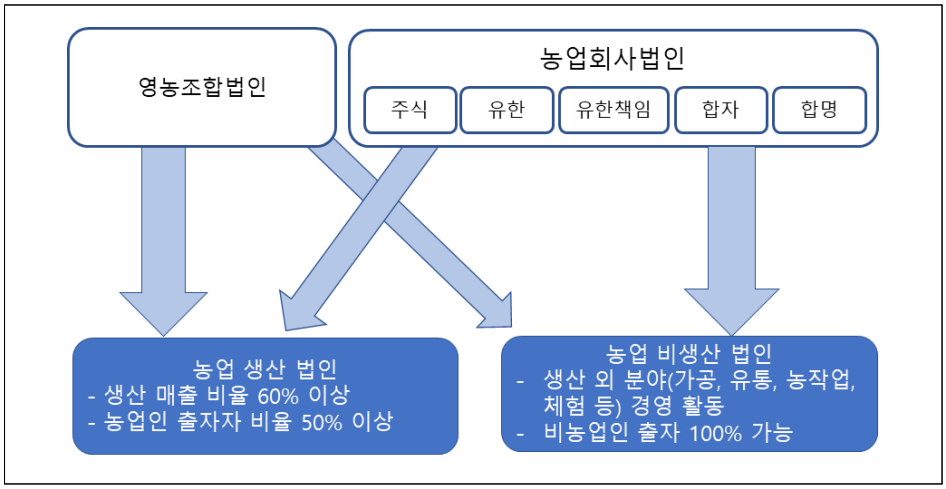

농업 생산·비생산 법인 규모 추정

주요 농업국(프랑스, 독일, 일본)의 농업 생산 관련 법인 기준(독일 농업생산매출의 60% 이상, 프랑스 유한책임농업법인 농업인 출자자 비중 50% 이상, 일본 농지소유자격법인 총의결권의 50% 이상)을 토대로 농업 생산매출 60%, 출자자 50%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법인(2018년 기준)을 구분한 결과 농업 생산 법인은 전체 농업법인의 29.5%였다. 영농조합법인 중에는 33.4%, 농업회사법인 중에는 25.8%가 해당되었다.

농업생산매출	농업인 출자자						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전체		
	50% 미만	50%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2.0%	63.9%	12.2%	58.9%	7.3%	61.3%	68.6%
60% 이상	0.7%	33.4%	3.0%	25.8%	1.9%	29.5%	31.4%
전체	2.7%	97.3%	15.3%	84.7%	9.3%	90.7%	100.0%

자료: 통계청(2018).

농업 생산 법인 활성화

농업 생산 법인은 엄밀한 의미의 농업경영체로서 농업인에 의해 주도되고, 농업생산이 주가 되고, 유통·가공 및 서비스 활동은 하더라도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업 생산 법인을 기업적 농업경영체의 전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내부 조직구조를 생산 분야에 집중된 단일한 경영체 구조로 변모시키고 영농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다수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법인이었다. 2018년 현재 농업법인 중에 생산 매출이 없는 법인이 60.7%를 차지하는 정도이고, 법인당 경지 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108] 농업 생산 법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근본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농업 생산 법인의 경영활동과 별도로 조합원별 개별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법인 내적 구조에 변화를 유발하고 법인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한다. 농업 생산 법인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프랑스의 농업법인(GAEC) 경우처럼 지원금액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다만 동일한 농업인에 대해 법인과 개인으로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김수석·박석두 2006). 또한 농업생산 및 지역 연계 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보조), 세제 감면혜택을 농업 비생산 법인과 차별화해야 한다.

농업 생산 법인의 농지 취득 및 임차를 수월하게 하고, 조합원의 현물 출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이후 조세제도 개선 부분 참조). 이 연구의 농업법인 효율성 분석 결과 농업 생산 법인 중에서도 작물 생산법인의 효율성이 특히 낮은데, 이는 충분한 자원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경작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그 중 중요한 요인이다. 농업법인 설문조사에서도 작물재배 법인들의 제도 개선 요구 중에 농지 소유·임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농업법인의 농지 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4년부터 농지와 관련하여서는 도도부현마다 1개의 농지중간관리기구를 두어 지역내

108) 통계청 농업법인 조사에 의하면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2000년 13.8ha에서 2018년 9.5ha로 축소되었다.

분산 이용되는 농지를 정리하여 집약화된 농지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작포기지 등을 임차하고, 법인 경영체, 대규모 가족농, 마을 영농 등이 집약된 형태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며 농지은행사업으로서 농지의 매입/임차, 매도/임대 업무와 부채농가 경영회생, 농지연금, 농지정보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신고나 허가 및 관리, 농지이용조정을 통한 농지 이용 집적 등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지관리기구는 없는 실정이다(박석두 2020). 우리도 농지관리기구를 도입하여, 모든 농지의 매매·임대차 등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법인에게 농지 이용이 집적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 비생산 법인 별도 트랙 활성화

농업 생산이 연계되지 않는 농업 비생산 법인은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농업법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가공 분야 농업법인, 규모가 큰 농업법인일수록 외부 투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농업 비생산 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자와 경영에서 농업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비농업인만으로 출자와 경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농업 비생산 법인은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법인 내에서의 농업생산 활동은 구성원들의 개별 생산으로 환원하든지, 별도의 농업 생산 법인을 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해결하도록 유도한다(김수석·박석두 2006). 농업 비생산 법인 제도를 운영할 경우 사업 범위 확장도 훨씬 유연해진다. 그동안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산물 생산 외에 가공·유통, 서비스 그리고 농촌 관광 휴양까지 넓혀 왔다. 2008년 이후 농정에서 식품 정책까지 포괄하면서 농업의 범위는 종자, 비료, 사료, 농약, 농기계·장비 등의 농업투입재산업뿐 아니라 식품의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식품 산업까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도심 내 식물공장, 농촌 태양광 사업 등이 농업의 범위 경계에 서 있다. 이들 사

업들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 농업경영체와 동일선상에서 각종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향후 새롭게 확장되는 농업 관련 사업의 경우는 농업 생산과 분리해서 비생산 법인의 사업 범위로 분류하면 된다.

2.4. 전문성 있는 농업법인 지원체계 구축

농업법인의 창업 및 경영 관련 애로사항(시설·장비 확충 지원, 외부 펀딩 유치, 신기술 및 상품 연구 개발, 교육·컨설팅, 전문인력 공급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운영하여, 경영, 투자, 인력 등에 대해 농업법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농업법인 통합 지원 전담 조직 운영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경영 부실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법인 설립으로 관리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농업법인 경영체들의 내실 있는 설립 준비, 설립 이후 각종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이 연구의 농업법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직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농업법인들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농업국과 국내 타 산업 분야에서는 법인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농업회의소, 독일은 농업회의소와 협동조합협회가, 일본은 농업법인협회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농업회의소 산하에 '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로 하여금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 상담과 더불어 경영 개선 지도와 컨설팅을 담당하도록 지원한다. 최근엔 도도부현별로 농업경영상담소를 운영하여 경영 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창의적 연구를 활용한 농업경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농업자의 경영과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절하게

조언하는 농업경영상담체제를 정비하고 경영상담, 전문가 파견 등의 대응을 지원해 법인화 등을 촉진하고 있다(일본 농업경영상담소 글상자 참조).

일본 농업경영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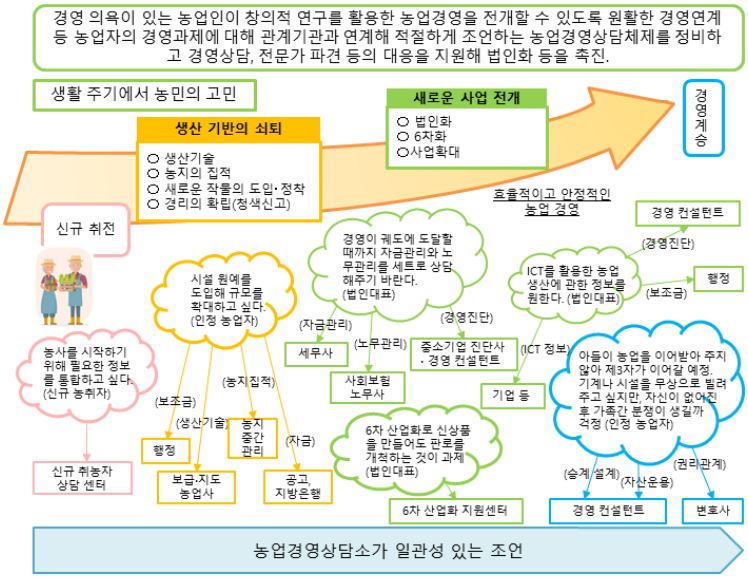

일본은 농업경영법인화 지원과 더불어, 2018년부터 농업 경영의 법인화, 원활한 경영승계 사업 계획 작성, 규모 확대 등 농업경영체가 안고 있는 경영상의 과제에 대해 경영상담·경영 진단과 전문가의 파견·순회지도 등의 반주형 지원을 실시하는 '농업경영상담소'를 도도부현 단계에서 정비하고 있다.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2020a).

우리나라의 타 산업 분야도 법인 경영체의 경영 애로사항 통합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분야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법[109]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애로사항 통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광역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 정보 등의 제공, 종

10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현재 지역마다 운영되는 각종 중소기업진흥원[110]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활동하고 있다(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글상자 참조). 한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분야는 경영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인증 지원뿐 아니라 창업 지원, 성장 지원, 생태계 조성(인식 확산, 인재 양성, 네트워크 구축, 정책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단위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전문적 지원 사례[111]가 등장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 (사)농식품법인연합회에서 일부 농업법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속 법인들의 범위, 협회의 규모나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 정부 산하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미래인재실의 담당자 한 명이 농업경영컨설팅업무와 함께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법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우선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 조직을 광역 단위(6차산업지원센터)[112]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과도기적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이 조직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융복합사업체를 포괄하는 농업법인 경영체에 대한 광역 단위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법인들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113]

---

110)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1)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지원센터(www.15445077.net),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wse.or.kr).

112) 현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113) 전담 지원조직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보다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가 그 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기술·경영 연수사업
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료: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 경영체에 대한 선행연구(김선화·서정대 2009; 장영순·김주미 2007)들은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혁신활동, 애로 요인, 요구가 차이가 있기에 단계별 차별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경종수 2012). 농업법인의 경우 내부에 보유한 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 경영주 개인의 인적자본에 많이 의존한다. 이 연구의 농업법인 조사 결과에서도 농업법인의 운영기간에 따라 경영 애로사항과 정책 요구에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농업법인이 내부에 타 분야 경영체라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영루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과 인적자원의 투입, 그리고 적절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농업법인에 대한 획일적 지원보다 성장단계별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 준비, 창업 초기(예비~3년), 도약·성장기(3~7년)로 나

업에 대해서 더 잘 알 뿐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점차 관련 전문성과 책무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고, 더 크게는 정부의 정보 및 정책 독점에 따른 관료주의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Mill 1859).

누어 창업 준비 단계에선 창업교육·멘토링, 창업문화확산, 창업교육·멘토링,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예비·초기사업화 지원, 민관협력·글로벌 진출, 투자·융자 등의 사업을, 도약·성장기 단계에서는 창업도약 패키지, 예비유니콘 발굴 육성, 혁신 분야 창업패키지 등의 성장 지원을 하고 있었다(중소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글상자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창업 전 잠재적 사업가 유입활성화, 창업초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사무공간 등 물적 인프라 제공, 창업 후 이력조사를 통한 성장 현황, 지원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 연계 및 컨설팅 제공을 하고 있었다. 또한 창업실패기업에 대한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화비용 제공, 경영 악화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프로젝트[114]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별도로 전국 9개 권역의 성장 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 임팩트펀드 및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금융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분야 창업-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자료: 중소기업벤처부(2020).

114) 경영 악화 원인 분석, 자금 조달 지원, 마케팅 지원, 역량강화·멘토링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거나 적합한 유형 변경을 통한 재창업 연계 등 지원.

앞서 언급한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전담 지원 조직 구성을 통해 추진해야 할 일은 농업법인의 성장 단계(예: '창업 및 전환 단계 → 설립 초기 단계 → 안정화 및 성장 단계')를 나누고[115]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투자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시설·장비 확충 관련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이었는데, 농업 경영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비 창농자 및 기존 농업인, 생산자 조직에 대한 농업법인 창업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설립 초기(3년 이내)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농업법인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대한 아이템 실증 검증, 투자 연계,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부 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성장 단계의 농업법인들에게는 외부 투자 유치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이 연구의 농업법인에 대한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대다수 농업법인이 자원이 과소 투입되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규모수익 체증 상황이었다. 또한 운영기간과 출자금, 종사자 수는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외부 투자를 많이 받고 종사자 중에 청년비율이 높을수록 농업법인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농업은 날씨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고, 수익성이 낮아 투자 회수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사업 특성이 있다. 반면 농업법인의 자기자본은 취약하고 대외적 신용력은 낮고, 자금의 조달 방법이나 조달처도 한정적이다. 농업법인이 내실 있게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발전을 도모하도록 농업법인이 외부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게끔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투자육성제도,[116] 인력공급 지원을 위해 농업고용 지원사업[117]을 운영

115) 2018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의 운영기간을 보면, 3년 이하가 34.1%, 4~7년이 32.7%, 8~11년이 18.3%, 12년 이상이 15.0%였다(통계청 2018).

116) 일본 정책금융공고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 제정)에 근거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또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식품산업과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주고, 농업 자체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박준기 외 2017).[118] 또한 농업법인의 인력 지원을 위해 2005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경우 높은 현장 호응도에도 불구하고, 적은 사업량과 사업홍보 부족으로 상당수 농업법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마상진 외 2016).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 촉진 활성화 차원에서 농식품 모태펀드의 경우 현재까지 투자가 미진한 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함과 동시에, 식품산업에 집중되어 있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여 농업 생산 및 농업 서비스 법인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박준기 외 2017). 특히 농식품 모태펀드 형성에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진천군 '센트럴생거진천투자조합' 사례 글상자 참조).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 민간 투자운영사의 투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농협과 지자체가 연계한 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NH농협캐피탈과 같은 농업유관 투자사를 투자조합 운영사로 지정하고, 지역의 주요 농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는 광역 단위에서 투자하고 광역 내 경영체 연계), 지역 농협, 지역 농업법인 경영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

해 농업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 및 경영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농업법인 투자육성사업)을 실시하는 투자 주체(주식회사 또는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 등은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등을 설립하고 농업법인투자육성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출자를 받아 투자리스크를 분산하여 농업법인에 출자가 가능하다(日本 農林水産省 2020b)

117) 농업법인 등이 취농희망자를 새로 고용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 지원(연간 최대 120만 엔, 최장 2년간)한다.

118) 2014년 현재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식품산업(32.2%)과 농업 관련 사업(21.7%) 투자 비중은 높지만, 농업자체의 투자(3.5%) 비중은 낮다(박준기 외 2017).

정하고, 지역 농협은 지자체에 부족한 금융전문성을 지원하고, 경영체의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마상진 외 2016).

진천군 '센트럴생거진천투자조합' 사례

○ 펀드 조성
- 2014년 캐피탈 회사(CL인베스트→ 센트럴투자파트너십)의 제안에 따라 진천군 농업지원과에서 펀딩 진행하여, 캐피탈 회사 10억 원 + KU 5억 원 + 지자체 15억 원 + 모태펀드 70억 원 ⇒ 센트럴생거진천투자조합(5년에 거쳐 조성 2014년 20억 원 조성) 결성

○ 투자
-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투자회사에 의해 투자 심사를 통해 최종 2개사에 15억 원 투자
- C 농업회사법인: 친환경 채소 유통. 진천의 친환경 영농조합 참여, 향후 체험활동까지 연계
- H 사(외지에서 신규로 유입): 관내 농산물 가공 이후 유통. 지역의 농업계 특수목적고인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와 인재육성·취업을 위한 산학협력

자료: 허덕 외(2015).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 및 귀농자들이 농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 여건 확보가 중요하다. 농업법인 취업 전 고등학교·대학 단계에서 현장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법인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지역 단위 농업법인 일자리 정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사업을 보강해야 한다. 농업법인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임금 확보, 여가 및 자기계발의 기회 등 교육·복지·문화 여건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같은 인건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건비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유사 업무인데 타 산업 분야보다 현저히 임금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근무지가 격오지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

교통비나 주거비를 지자체와 매칭해 추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 참조). 또한 교육·문화·복지와 관련된 여건은 대부분 농업법인 경영체 단위로 충족시키기 힘들기에 지역 단위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 농업법인 협의회를 통해 개별 업체의 요구를 모아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교육·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 단위로 농촌 사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지역 단위 농촌 사업체 근로여건 개선 사례 글상자 참조)과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근로복지서비스[119](문화·여가 지원, 산재근로자복지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선진기업복지도입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120] 공단운영 어린이집, 직장보육지원센터, 융자사업, 신용보증 지원, 퇴직연금 등) 그리고 재직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훈련제도[121](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마상진 외 2016).

지역 단위 농촌 사업체 근로여건 개선 사례

○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강원도는 2018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행사를 통해 농공단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20년 물류보조금 지원 계획을 시작으로 기업활동의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는 2005년 설립된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와의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 자금, 기술, 판로 확보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금산 추부농공단지: 금산군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체의 안정적인 근로 제공을 위해 추부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한다(농공단지 부지 내에 위치).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735㎡,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숙

119)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종합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120)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 직무성과 영향 요인(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 업무과다, 건강관리, 정서·성격, 자녀양육·부부관계, 신용관리, 법률, 학업, 이직·전직, 성폭력 등)에 대하여 상담이나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이다(근로복지공단 2020).

121)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 33실에 북카페, 공동취사장, 기계실, 통신 관리실 등을 갖췄다. 28개사의 가동업체에 44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추부농공단지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간이숙소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370여 명의 근로자 중 64명이 신축 기숙사에 입주하였다.

○ 구례 자연드림파크: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은 2011년 구례군과 MOU를 맺고 군 농공단지터를 매입하여 자연드림파크 조성을 시작하여 2014년 개장 이래 14개 생산법인이 17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1,286억 원에 520명의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15개 지역농산물을 연간 107억 원 규모로 구매하여 지역농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직원 평균 연령이 38세로 2014년 250명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채용인원이 92% 증가하였다. 직원 중에 85%를 구례 지역에서 직접 채용을 하였고, 나머지는 서울 등 외지에서 구례로 들어와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젊은이가 돌아오는 지역'을 모토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임금을 지급해 주고, 보육(어린이집), 문화(영화관, 커피숍, 스포츠센터 구비), 주거(사원아파트), 의료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도록 복지여건을 제공한다. 전남자연과학고(옛 구례농고)와 연계하여 아이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강사 파견, 현장실습 지원,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 실습생 전원 채용 등의 산학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남자연과학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와 농식품 생물소재산업 인력육성 협의체를 마련하여 식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농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분야별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마상진 외(2019).

2.5. 농업법인 설립·운영 등 관리체계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법인 중 설립만 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보조금 부당 수령의 문제 등은 농업법인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초 지자체는 지역 내 농업법인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법인 설립·운영 및 폐업관리 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농업법인 주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농업법인 설립·운영 및 폐업관리 개선

농업법인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농업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신고·검토 과정과 폐업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등기소 설립 등기 후 주무관청에 설립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확인증을 받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은 등기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협동조합은 이런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법인도 법인격이 형성되기 이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한 번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에 관리 감독의 재량을 부여하고, 설립과 관리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나채준 외 2017: 79-80).

현재 운영되지 않거나, 여러 원인으로 청산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농업법인들의 폐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법」(제520조의 2)의 해산간주제를 농업회사법인뿐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에도 적용하여 일정 기간 영업활동이 없는 법인에 대해 법원에 영업활동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일정 기간 내 미신고 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폐업하지 못한 농업법인들의 청산의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한국농어민신문 2020)

농업법인 설립·운영 및 폐업 등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광역단위 농업법인 통합 지원조직의 관련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농업법인 경영체 관리 차원에서 법인 등록 시 심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소속 회원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에 부합되게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매년 심사를 통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경영 상태는 정상인지를 심사하고 있다. 광역 단위 농업법인 통합 지원 조직을 통해, 기초 지자체와 협력으로 지역 내 농업법인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더불어 심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 단위 농업법인 협의체 구성

설립 신고, 감독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한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더

불어 농업법인 관련 지역 단위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농업법인 정책 참여를 기반으로 한 좀 더 능동적 차원의 농업법인 관리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 실패와 더불어 시장 실패가 나타나 새로운 대안적 해결 방식이 모색되는 분야에서는 시민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공재나 기타 재화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제도적 능력으로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강병준 2014). 농업법인 역시 다양한 정책 및 세제 지원이 주어지는 농업·농촌이라는 공공재를 다루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단위로 100여 개,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1,000개 이상의 농업법인이 존재하는데, 이들 간의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통해 농업법인 정책의 투명성, 대표성, 책무성 등을 제고시키고 관련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제안한 농업법인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 외부 투자 유치, 전문인력 확보 및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분야에 대한 공동노력이 이 협의체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분야는 농업법인보다 전체 법인 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122] 법(기본법 11조, 시행령 제4조)에서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시·도 협동조합협의회를 두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법인도 지방자치단체-지역 법인연합회-전담 지원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광역 단위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

2.6. 농업법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세제 지원 개선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경영체 차원의 경영 역량 강화, 지속성 제고 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신규 농업인의 유입 촉진, 지역 농업의 조

122) 협동조합은 2018년 현재 14,526개이다(기획재정부 2018).

직화·규모화, 지역 주민의 소득·일자리 기회 증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역할을 하고, 국가적으로는 농업 경쟁력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식량 안보뿐 아니라 생태·유전 자원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즉 농업법인은 타 산업의 경영체에 비해 그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지역적인 조직 경영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업법인 관련 부정 행위 사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축산 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악취 문제, 가축 질병, 농약 남용 및 안전하지 못한 농산물 유통과 환경 및 경관 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역 차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확대된 공익적 기여와 회계투명성을 근간으로 세제 지원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의 사회적 역할 설정 및 지원

농업법인은 경영체 차원의 기업적 전문 경영뿐 아니라, 농촌 지역 사회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농업법인상 설정이 필요하다. 일반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이라 정의하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다(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글상자 참조). 이 밖에 명문장수기업,[123] 자상한 기업[124] 등 사회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로 확산시키

123)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인정되는 기업,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중소기업진흥법」 제 62조의 4).

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면서 농업법인의 사회적 책임회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협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업체를 선정하여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농축협윤리경영대상'[125]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축산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에서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 국민 인식이 나빠지자 시민적, 생태·환경적, 윤리적 책임[126]을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이행 실태와 제도적 뒷받침은 초보적 수준이다(우병준 외 2019).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농업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127]과 거점농장 사업[128]을 지속적

124)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125) 농협은 2017년부터 조합장의 실천 의지와 윤리경영 실천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 농·축협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상생적 책임 등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지속적으로 이행한 농·축협을 선정하여 윤리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다(부천신문 2020).

126) 우병준 외(2019)는 축산의 사회적 책임을 ① 시민적 책임(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하며, 사회공헌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 ② 경제적 책임(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축 사육방식 향상이나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가축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며,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③ 생태·환경적 책임(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거나 기존의 관행적 사육에서 벗어나 유기축산으로 사육하며, 지역사회와 공존을 위하여 축산농장 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 ④ 윤리적 책임(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동물복지축산을 실천)으로 나누고 있다.

127)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한다(최대 5년)(농림축산식품부 2019b).

128)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2020년 4개소),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교육 및 인근 농가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거점농장과 네트워크를 맺은 복지·교육·보건 기관 등과 신규 사회적 농업 활동 희망 농장들 간에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고, 사회

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평가하고 인증을 하여,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및 농업법인의 사회적책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CSR)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0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CSR 도입을 지원할 외부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CSR 아카데미를 제공하여 내부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사례를 발굴·지원하고,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를 보급하고, 업종·규모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CSR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료: 중소기업벤처부(2018).

회계 투명성 강화와 조세제도 개선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의 정당성에 대해 조세당국은 농업 분야가 '시장 실패'의 영역에 놓여 있고, 이 상황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분야이기에 정책적으로도 정당하고, 더불어 소득 증대 효과도 있다는 평가이다(이동규 외 2018). 농업법인의 사회적 역할 강조를 통해 정책적 지원 타당성을 더 확고히 하고, 회계투명성을 바탕으로 농업법인 세제 지원이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세제 지원에 앞서 농업법인의 농업회계와 관련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소득세법」[129]에서는 농업법인의 복식부기 도

적 농업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의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여 소관 지역 내 사회적 농장과 매칭 등을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b).

129)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농업의 경우 3

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130] 「농어업경영체육성법」(제21조)에서는 농업경영의 투명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회계 확산 노력을 하도록 하고, 보조 융자 사업 지원 시, 회계 작성 시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법인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비중은 80%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마저도 최근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의 농업법인 조사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회계 관리를 전담 인력이 아닌 법인 대표나 출자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20% 정도였고, 이는 법인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농업법인에 대한 회계 인력 지원 또는 교육·컨설팅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기업경영자와 자금공여자 간 정보비대칭을 줄임으로써 투자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높은 회계품질은 기업에 투입되는 각종 자본비용을 줄여 주고, 외부의 직접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과세소득이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 만큼,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있다(전규안 외 2020). 농업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농업법인 경영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농업부문의 조세정의(租稅正義)[131]실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계투명성을 바탕으로 농업법인 세제 지원과 관련한 몇 가지 불합리하고,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를 막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들은 조세제도에 대한 여러 요구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인세 부문이었다.[132] 특히 개인 농가의 농업법인 전환의 측면에서는 현 조세제도가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법인 설립을 통한 규모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농업인 개인으로 받을 경우와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받는 경우의 세제 감면 규모가 최소한 동등해야 하는데(조세상의 무차별), 현재는 농업법인

억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3억 원 이상의 경우 농업 분야도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130)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131) 국민 누구나가 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방승주 2009).

132) 이 연구의 농업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세제 지원 관련 법인세 개선 요구가 37.5%로 가장 높았다.

설립 시 더 불리한 상황이고, 농업인 참여율이 낮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이다(이동규 외 2018).

농업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최소한 소득세 수준과 동등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의 농업인에게는 개인 영농과 법인 설립 간에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소득의 공제한도를 조합원 1인당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입 10억 원 이하에서는 농가든 법인이든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하고, 10억 원 초과 시 법인 설립이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임소영·원은송 2019).

농업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5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농지의 출자가 많았지만, 2015년 이후 1년에 2억 원, 5년에 3억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졌다. 따라서 양도 차액이 상당히 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물 출자가 힘들게 되었다.[133] 양도세 면제한도를 1억 원으로 유지하되, 면제 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과세[134]를 적용하는 것이 농업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는 이월 제도가 없어 큰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35] 이월과세 제도는 작물재배·축산·임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나중에(지분을 50% 이상 매각할 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물출자 시 현금이 아

133) "농촌에 있는 농지는 상속받은 것이 많고, 예전에 취득하여 계약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취득 가격을 취득 시점의 개별 공시지가(취득 가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짐)로 계산하여 현물출자 시의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처럼 양도 차액이 매우 커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을 쉽게 넘어서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지의 경우 현물출자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이 연구의 김태용 회계사 인터뷰)(2020. 5. 27.).

134)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지 및 초지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③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35)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5억 원일 경우 1억 원은 면제를 받지만 4억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닌 주식을 받게 되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축소도 현물 출자 위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업법인이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던 것이, 2005년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되고, 2019년부터는 2년간 75% 면제(청년창업 농업회사법인은 4년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이 부동산 규모를 늘릴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면서 부담이 늘어났다. 제조업은 2년 이후에도 50%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농업법인의 생산시설 현물출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시점에 세제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유형화 및 차별화 지원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인에 준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혜택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 생산 법인에게만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업 비생산 법인의 경우 조세상의 혜택보다는 농업 관련 정책 지원 사업 및 외부 투자 사업의 참여 자격 부여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실태 조사지

1. 귀하는 농업이외 비농업 분야 경험이 있습니까?

① 비농업 분야 경험 없음 ② 사업체 근무 경험
③ 사업체 운영 경험 ④ 사업체 근무 및 운영 경험

2. 귀 농가에서 하는 농업관련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농축산물 생산(작물재배, 축산) ② 농축산물 가공
③ 농축산물 유통·판매 ④ 농촌체험·관광·휴양
⑤ 농업서비스업(위탁영농, 농작업 대행)
⑥ 기타(농기자재,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등)

3. 귀 농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다음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전체 합이 100% 되게 기입하고, 해당 부분이 없으면 0을 기입)?

- 농축산물 생산(작물재배, 축산) ( )%
- 농축산물 가공·유통·판매 ( )%
- 농촌체험·관광·휴양 ( )%
- 농업서비스업(위탁영농, 농작업 대행) 및 기타 ( )%

4. 귀 농가는 주 품목(매출액이 가장 많은)에 대해 시설 재배나 가축사육을 하십니까?

① 노지 재배를 주로 함 ② 시설(하우스, 온실) 재배를 주로 함
③ 가축 사육을 주로 함

5. 귀 농가의 경영 규모는 주변 농가와 비교시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① 소규모 ② 중소규모 ③ 중규모 ④ 중대규모 ⑤ 대규모

6. 귀 농가의 지난 한해(2019년) 농업 매출 규모는?

① 1백만 원 미만 ② 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③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④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⑤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⑥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⑦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⑧ 1억 원 이상

7. 귀 농가의 소득 구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농업소득만 있고 농외소득은 거의 없음
②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음
③ 농외소득이 농업소득 보다 많음
④ 농업소득은 거의 없고 농외소득만 있음

8. 귀 농가는 경영체를 승계할 후계자가 있습니까?

① 후계자가 있고 현재 농업 종사중
② 후계자가 있지만 현재는 다른일 종사
③ 없음

9. 귀 농가는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회계 장부를 작성하십니까?

① 단식 부기로 작성
② 복식 부기로 작성
③ 영농일지, 가계부 등 다른 형태로 작성
④ 작성하지 않음

10. 귀 농가는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확장 계획 없음(축소 계획 또는 현상태 유지)
② 농축산물 생산 분야 확장 계획
③ 농축산물 가공 분야 확장 계획
④ 농축산물 유통·판매 분야 확장 계획
⑤ 농업서비스(위탁영농, 농작업대행) 확장 계획
⑥ 농촌 체험·관광·휴양 분야 확장 계획
⑦ 농기자재,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분야 확장 계획
⑧ 기타(적을 것: _____)

11. 귀 농가가 출자하여 참여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이 있습니까?

① 참여 법인 전혀 없음
② 출자하지는 않지만 일부 이용하는 법인 있음
③ 본인 주도하여 운영하는 법인이 있음
④ 다른 농민과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있음
⑤ 과거 참여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탈퇴
⑥ 과거 설립·참여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도산, 휴업, 해체(현재는 미운영)

※ 다음 질문은 농업법인 미참여자만 응답해주세요. 참여자는 14번부터 계속 응답해주세요.

12. 귀 농가는 향후 농업법인을 설립 또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직접 설립할 의향 있음
② 이미 운영중인 법인체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 있음
③ 설립 또는 참여 의향 없음

13. 귀하가 아직 농업법인에 설립 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법인 설립·참여할 이점이나 필요성을 못 느낌
② 법인을 같이 설립할 동료(이웃 농가)가 없음
③ 법인 설립 절차 및 요건 충족이 까다로움
④ 법인 운영 또는 참여해서 활동할 자신이 없음

⑤ 기존 법인의 폐쇄성 (새로이 끼어주지 않음)
⑥ 농업법인에 대해서 잘 모름

※ 다음 질문은 농업법인 운영·참여자만 응답해주세요. 미참여자는 21번부터 계속 응답해주세요.

14. 귀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의 출자자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가족
② 지역내 농업인
③ 지역 단체 (농협,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⑤ 비농업인, 소비자
⑥ 기타 법인/기업
⑦ 기타(적을 것: _____)

15. 귀 농가가 법인을 통해서 주로 하는 활동은?

① 농축산물 생산(작물재배, 축산)
② 농축산물 가공
③ 농축산물 유통·판매
④ 농촌 체험·관광·휴양
⑤ 위탁영농, 농작업 대행
⑥ 기타(농기자재,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등)

16. 귀 농가의 법인 결성·참여 목적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생산 규모화(경지규모 및 가축 사육두수 확대)를 위해
② 농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확대
③ 지역 내 농가·품목별 조직화를 위해
④ 마을 공동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⑤ 원활한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⑥ 정책 지원 사업 수혜 자격을 갖추기 위해
⑦ 매출 증가에 따른 절세 혜택을 위해
⑧ 기타(적을 것: _____)

17. 귀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의 설립 이전에 관계된 생산자 활동이 있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작목반
② 품목연구회
③ 품목 협회
④ 농업인 단체 활동
⑤ 마을 공동사업
⑥ 기타(적을 것: _____)
⑦ 없었음

18. 귀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의 운영 주체는?

①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
② 출자자 중 대표자가 단독으로 운영
③ 출자자들이 개인별로 운영

19. 귀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의 연 매출(2019년) 규모는?

① 1천만 원 이하
② 1천~3천만 원
③ 3~6천만 원
④ 6천만 원~1억 원
⑤ 1억~5억 원
⑥ 5억~10억 원
⑦ 10억 원 이상

20. 귀 농가의 농업 매출 중에 농가 활동을 통한 매출과 농업법인 활동을 통한 매출 중 어느것이 많습니까?

① 개인 농가 매출이 법인을 통한 매출보다 많음
② 농가 매출과 법인을 통한 매출 비중이 서로 비슷
③ 법인을 통한 매출이 농가 매출보다 많음
④ 법인 매출이 곧 농가 매출임

※ 다음 질문은 농업법인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주세요.

21. 귀하는 본인 참여 또는 주변의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들이 성과를 내거나 지역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지역 농민 조직화 또는 지역 농업 규모화
② 경영체의 기업적·과학적 운영
③ 농가의 다각화된 농업활동(생산 외 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촉진
④ 지역 농민의 소득·일자리 창출
⑤ 기계화를 통한 농촌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⑥ 후계 인력, 전문인력 확보 촉진
⑦ 기타 (적을 것: _____)
⑧ 성과를 내거나 기여하고 있는 부문 없음

22. 귀하는 향후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 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보통(잘 모르겠음) ④ 찬성하는 편 ⑤ 매우 찬성

23. 귀하는 농가 경영의 과학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농가 단위 법인화 (1농가 1법인, 가족 법인) 설립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 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보통(잘 모르겠음) ④ 찬성하는 편 ⑤ 매우 찬성

24. 귀하는 고령화된 농가와 농촌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마을 단위 법인 설립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 반대 ② 반대하는 편 ③ 보통(잘 모르겠음) ④ 찬성하는 편 ⑤ 매우 찬성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농업법인 경영 실태 조사지

1. 귀 법인의 회사 형태는 무엇인지 다음에서 말씀해주십시오.

① 영농조합법인 ② 주식회사 ③ 합명회사
④ 합자회사 ⑤ 유한책임회사 ⑥ 유한회사

2. 귀 법인의 회사 형태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2-1. [BASE : 문2=1 응답자]회사 형태를 어떻게 변경하였습니까?

①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② 농업회사법인 내 회사 형태 변경
③ 일반 주식회사에서 농업법인으로 ④ 기타(적을 것:_____)

2-2. [BASE : 문2=1 응답자]귀 법인이 회사 형태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세제상 혜택 ② 정책 지원 사업 수혜 ③ 유한 책임 문제
④ 사업 영역 확대 ⑤ 기타(적을 것:_____)

3. 귀 법인의 대표 경영자는 농업인입니까? 비농업인입니까?

① 농업인 ② 비농업인

4. 귀 법인의 대표(또는 경영자)는 비농업 분야 사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근로자로 근무
③ 사업체 경영 ④ 근무/경영 둘다 경험

5. 귀 법인의 설립 목적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1개 응답 후) 그리고 또 없습니까?

① 경지규모 및 가축 사육두수 확대를 위해
②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확대
③ 지역 내 농가·품목별 조직화를 위해 ④ 마을 공동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⑤ 원활한 외부 투자유치를 위해 ⑥ 정책 지원사업 수혜자격을 갖추기 위해
⑦ 절세 혜택을 위해 ⑧ 기타(적을 것: _____)

6. 귀 법인을 설립할 때 정부의 지원 사업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8로 갈 것

6-1. [BASE : 문6=1 응답자] 법인설립에 영향을 미친 정부사업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농기계구입자금 사업 ② 영농규모적정화사업
③ 농기업경영자금 사업 ④ (원예, 축산)시설 현대화 관련 사업
⑤ 들녘경영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⑥ 6차 산업화 사업(농촌융복합산업)
⑦ 농촌개발 및 농촌관광 사업(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체험마을,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
⑧ 농어촌 공동체 회사 ⑨ 로컬푸드 사업
⑩ APC 및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 ⑪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⑫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업 ⑬ 스마트/ICT 융복합 관련 사업
⑭ 농식품 수출 촉진 관련 사업 ⑮ 식품 가공산업 육성 관련 사업
⑯ 기타(적을 것: _____)

7.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귀 법인과 관련된 품목 연구회, 작목반, 협회, 마을 공동사업 등의 생산자 조직 활동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7로 갈 것

7-1. [BASE : 문6=1 응답자] 귀 법인과 관련된 생산자 활동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작목반 ② 품목연구회 ③ 품목 협회
④ 농업인 단체 활동 ⑤ 마을 공동사업 ⑥ 기타(적을 것: _____)

8. 귀 법인의 출자자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가족 ② 지역 내 농업인
③ 지역 단체 (농협,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④ 비농업인, 소비자
⑤ 기업/법인 ⑥ 기타(적을 것: _____)

9. 귀 법인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출자자들이 노동력 제공과 더불어 경영에 공동참여하여 운영
② 출자자 중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③ 출자자 각자 별도 운영하여 이윤분배 없이 명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

10. 귀 법인의 주주, 출자자가 참여하는 회의(이사회, 총회 포함)는 얼마나 자주 개최·운영 됩니까?

① 거의 개최·운영되지 않음 ② 연 1회 정도
③ 분기당 1회 정도 ④ 필요할 때 수시로

11. 귀 법인의 회계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① 법인 대표가 관리 ② 대표외 출자자중의 한명이 관리
③ 경리·인사 담당직원이 회계도 관리 ④ 회계 전담인력이 관리

12. 귀 법인은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축소 계획 또는 현상태 유지) → 문13으로 갈 것

12-1. [BASE : 문12=1 응답자]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는 분야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농축산물 생산 분야 ② 농축산물 가공 분야
③ 농축산물 유통·판매 분야
④ 농업서비스(위탁영농, 농작업대행) 또는 농기자재, 농기계 임대·수리 분야
⑤ 농촌 체험·관광·휴양 분야 ⑥ 농업 컨설팅 분야
⑦ 기타(적을 것: _____)

13. 법인경영을 통해 성과를 내거나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부문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① 지역 농민 조직화 또는 규모화 ② 경영체의 기업적·체계적 운영
③ 생산이외 다각적 분야의 농업 활동 촉진 ④ 지역 농민의 소득·일자리 창출
⑤ 기계화를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 ⑥ 후계 인력, 전문인력 확보 촉진
⑦ 기타 (적을 것: _____) ⑧ 성과를 내거나 기여하고 있는 부문 없음

14. 귀 법인의 활동을 통해 소득이나 일자리 등 수혜를 보는 농가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없음 ② 10호 미만 ③ 10~19호 ④ 20~29호
⑤ 30~49호 ⑥ 50~99호 ⑦ 100호 이상

15. 귀 법인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① 운영·시설확충 자금 확보 ② 제품 및 기술 개발의 어려움
③ 안정적 판로 확보 ④ 경영 및 회계 관리 능력 부족
⑤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⑥ 단순 노무인력 확보
⑦ 인허가 등 각종 규제 ⑧ 조합원간의 의견 불일치
⑨ 기타(적을 것: _____)

16. 귀 법인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17로 갈 것

16-1. [BASE : 문16=1 응답자] 귀 법인이 받은 정부 지원 사업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시설·장비 관련 정부 보조·융자 지원 ②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
③ 교육·컨설팅 지원 ④ 전문인력, 고용인력 채용·활용 지원

⑤ 마케팅 지원 ⑥ 원물 계약재배·매입 관련 지원
⑦ 기타(적을 것: _____)

17. 정부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책 자금 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자금 지원	1	2	3	4	5
2) 신 상품·기술 개발 지원	1	2	3	4	5
3) 교육·컨설팅 지원	1	2	3	4	5
4) 인력 지원	1	2	3	4	5
5) 세제 지원	1	2	3	4	5
6) 경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	1	2	3	4	5

18. 농업법인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법인 변경·해산 ② 설립 자격·발기인수
③ 출자 한도 및 책임 한계 ④ 비농업인 출자 (기업 참여) 확대
⑤ 사업 범위 ⑥ 농지 소유·임대 완화
⑦ 기타(적을 것: _____)

19. 농업법인 조세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①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③ 부동산 취득세
④ 재산세 ⑤ 양도소득세 ⑥ 배당소득세
⑦ 기타(적을 것: _____)

20.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정책 방안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요?

① 농업법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지원
②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③ 농업 생산 법인의 농지 확보 대책 마련
④ 농업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⑤ 전문 경영인 활용 및 인력 고용 지원 강화
⑥ 신 상품·기술 개발 및 교육·컨설팅 강화
⑦ 미활동 법인, 부실 법인 등 해산·정리
⑧ 목적외 사업을 수행하는 가짜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⑨ 기타(적을 것: _____)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감사원. 2016.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강병준. 2014.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분석: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4(3): 5-46.

경상북도. 2020.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지원 사업시행지침.

경종수. 2012. “지역산업진흥정책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방안: 기업성장단계와 포트폴리오 관점의 적용.” 『지역경제』 28호: 200-220.

고길곤. 2017. 『효율성 분석이론』. 문우사.

관계부처합동. 2018.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관계부처합동. 2020.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권오상·김한호. 2009. “확률 DEA-FDH 기법을 이용한 산지유통 및 수급안정 조직의 경영성과와 그 결정요인 분석: 산지유통종합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50(2): 69-95.

권용덕·신지연·김현수. 2008. “경남지역 농업법인의 육성방안.” 경남발전연구원.

금태환·송재일·왕승혜. 2018.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농업현대화를 위한 국제농업규범의 법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재정부. 2018.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김동신·조덕호·여창환. 2016.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직 참여가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161-184.

김선화·서정대. 2009. “중소기업 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1(2): 239-238.

김수석. 2001. 『통일이후 동독지역의 농업농촌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2007.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해외농업 시리즈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2014. “농업법인,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인 신문(2014. 6. 30.).

김수석·박석두. 2006.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우석·서범·임인섭. 2017. “한국 농업법인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한 실증연구.”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135-142.
김일곤. 2019. “농업법인의 재무적 특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김정호. 2008.『가족농연구－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2020.『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의 변천 과정 및 시사점 고찰』(미발간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박문호. 2010.『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정영환·최은아. 2015.『농업법인 통계조사 개선방안』. (사)환경농업연구원.
김정호·최은아. 2015.『농업경영체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김종인·조남욱. 2018.『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 농림·수산·식품 분야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한호·이태호. 2015.『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농가 유형별 특성 분석 및 DB 구축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나채준·왕승혜·김수홍. 2017.『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노미현. 2014. “DEA를 이용한 외부감사 대상 농업법인 기업의 경영효율성 분석.” 『상업교육연구』 28(5): 469-489.
농림수산식품부. 201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016.『농업법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2019a.『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2019b. 2020년 신규 사회적 농장·거점농장 선정결과 발표(보도자료 2019. 12. 18.).
농림축산식품부. 2019c.『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2020a.『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2020b. 청년창업농 법인화. <https://www.mafra.go.kr/young/967/subview.do>. 검색일: 2020. 10. 15.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9.『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및 분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0.『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농어촌 희망재단. 2020.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9.『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마상진·오내원·김경덕·남기천. 2013.『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허주녕·김경인. 2016.『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엄진영·김태후·박진우. 2019.『농업분야 고용동향 분석 및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박대식·엄진영·하인혜. 2020.『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규동. 2012.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동수. 2020. "독일 농업 XIV, 농업협동조합." <http://m.blog.daum.net/dspark4/8582605>. 검색일: 2020. 9. 14.
박문호·임지은. 2014.『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호·전익수. 2000.『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호·허주녕·오정태. 2016.『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석두. 2020. "농지제도,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가." 한국농어민신문(2020. 8. 22.).
박준기·김미복·엄진영·한보현. 2017.『농식품산업 투자 초기시장형성 및 농식품모태펀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방승주. 2009. "헌법과 조세정의."『헌법학연구』15(4): 1-41.
서종석·김인석·서정원·이연옥·김다혜. 2017.『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에 관한 기초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 전남대학교.
신인식·이선신·박민선·목상훈·장기건·양정희. 2005. "지역농협 합병의 성과와 과제."『농협대학 농협경영연구소 연구보고』제150호.
안상돈·강병규·안진용. 2009. "DEA 모형을 이용한 지역농협 가공식품 사업의 경영 효율성 분석."『한국협동조합연구』26(2): 43-66.
우병준·김현중·석준호·김명수. 2019.『축산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준상·김성록·김현상·김두순. 2017.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 조직 형태와 주민 참여율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1): 15-25.
이동규·김승래·성명재·이명헌. 2018.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명헌·황수철. 2015. “부트스트래핑과 절단회귀를 이용한 과수농가의 기술효율성분석.” 『식품유통연구』 32(2): 67-85.
이상호. 2010. “농업유통법인 효율성 분석.” 『농업경영 · 정책연구』 37(1): 15-29.
이상호·김충실·권경섭. 2011. “농업생산법인의 경영효율성 분석: 부트스트래핑 기법 활용.” 『벤처창업연구』 6(4): 137-152.
이정동·오동헌. 2012. 『효율성 분석이론』. 지필미디어.
임소영·원은송. 2019.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2014. 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 『세계농업』 163: 167-187.
임인섭·이상래. 2017.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농업법인의 부채비율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축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2): 600-608.
장동헌. 2009. “품목농협의 경영효율성 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 26(2): 89-101.
장민기. 2019. “미래농업을 위한 농업법인 제도의 활용: 한국·일본·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농정연구』 69호: 171-200.
장민기·홍지영·유리나·정성웅. 2019. 『농업법인의 실태분석 및 경영진단·평가 모형 개발』. 농정연구센터·농촌진흥청.
장영순·김주미. 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른 애로요인의 실증적 연구.” 『IE Interfaces』 20(3): 418-426.
전규안·박성동·이영한·이동규. 2020.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 2020년 한국세무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전익수. 2018. “단양군 농가들의 농업생산조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52(2): 133-142.
정양헌·이충섭. 2006. “농업법인의 환경특성과 정부지원이 균형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1(2): 75-92.

정양헌·이충섭·문정훈·최영찬. 2007. “농업법인의 시장 및 기술환경 특성과 균형 성과.” 『농촌계획』 13(1): 51-62.

정재원·이인규·김성섭. 2018.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계획』 24(3): 55-62.

조가옥·송춘호·장동헌. 2015.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 분석-농축산물유통업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농업생명과학연구』 46(1): 1-6.

중소기업벤처부. 2018.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공고.

중소기업벤처부. 2020.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통계청. 2000~2018. 농업법인조사.

통계청. 2000~2015. 농업총조사.

통계청. 2019.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2001~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기업데이터. 2010~2018. 농업법인 경영실태자료.

한국은행. 2019. 2018년 기업경영분석.

홍범교·이명헌. 2019.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윤. 2015. “팀빌딩과 엘리베이터 피치(강연자료).” <http://edu.koef.or.kr/팀빌딩>. 검색일: 2017. 10. 4.

황의식·정호근. 2008.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마상진·이동소. 2015. 『FTA 확대에 따른 축산기반 강화대책: 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대책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日本 內閣部. 2013. 日本再興戦略.

日本 農林水産省. 2015. 法人化している農業経営体.

日本 農林水産省. 2018. 農業経営法人化等の促進.

日本 農林水産省. 2019. 集落營農現況.

日本 農林水産省. 2020a. 농업경영상담소. <https://www.maff.go.jp/j/keiei/soudanjyo.html>. 검색일: 2020. 8. 15.

日本 農林水産省. 2020b. 농업법인투자육성제도. <https://www.maff.go.jp/j/keiei/kinyu/toushiikusei/toushiikuseiseido.html>. 검색일: 2020. 8. 15.

日本 農業法人協會. 2020. 農業法人とは？

Yamato. 2020. 農業法人形態による制度の比較.

Bundesministerium füf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BMEL). 2018. “Wichtige steuerliche Regelungen für die Land- und Forstwirtschaft.”

Bundesministerium füf Verbraucherschutz,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BMVEL). 2006. *Agrarpolitischer Bericht 2006 der Bundersregierung*. Bonn.

Cordellier, S. 2014. Una historia de la cooperación agrícola de producción en Francia. *Revue internationale de l'economie sociale.* vol. 331, pp. 45-58.

Dammholz, G. 2011. ‘Passt das Kleid?: Rechtsformwahl für landwirtschaftliche Unternehmen. Neue Landwirtschaft, 2011/3: 18-21.

GAEC & Societes. 2020. *Les GAEC ont 50 ans*.

Mill, J. S. 1859. *On Liberty*. (ed.) Currin V. Shields(Indianapolis: Bobbs-Merrill Education Publishing, 1982). (역) 서병훈(책세상, 2005).

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Enquête sur la structure des exploitations agricoles. 2016. *Caractéristiques générales des exploitations par orientation, taille économique et statut juridique*.

Notaires.fr. 2020. *Agricultural Companies*.

Simar, L., and P. W. Wilson. 1998. “Sensitivity Analysis of Efficiency Scores: How to Bootstrap in Nonparametric Frontier Models.” Management Science 44(1): 49-61.

<웹페이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gwse.or.kr>. 검색일: 2020. 10. 15.

국가기록원. 식량증산. <http://theme.archives.go.kr/식량증산>. 검색일: 2020. 4.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0. 4.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4. 1.~2020. 5. 2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육성법)」,「농업·농촌기본법」,「농지법」,「민법」,「법인세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협동조합기본법」.
근로복지공단. 2020. 근로복지넷. <https://www.workdream.net/>. 검색일: 2020. 10. 15.
사람인. 농업회사법인 썸머힐상사(주). <www.saramin.co.kr>. 검색일: 2020. 10. 15.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www.15445077.net>. 검색일: 2020. 10. 15.
직업훈련포털. <hrd.go.kr>. 검색일: 2020. 10. 15.

日本 통계포탈. <https://www.e-stat.go.jp/>. 검색일: 2020. 8. 15.
日本 農林水産省(農林業センサス). <https://www.maff.go.jp/j/tokei/census/afc/>. 검색일: 2020. 8. 15.
日本 農林水産省(農業経営統計調査). <https://www.maff.go.jp/j/tokei/kouhyou/noukei/>. 검색일: 2020. 8. 15.

<보도자료>
국민일보. 2020. 11. 18. “제주 농업법인 탈법 온상으로...농지 취득·매매 위해 제도 악용.”
농민신문. 2020. 6. 24. “버섯재배사·축사?…실제로는 편법 ‘태양광 발전’.”
동아일보. 2018. 10. 4. “‘감자’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7년, 록야 박영민 대표.”
부천신문. 2020. 11. 9. “오정농협, 농·축협 윤리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쾌거!”
인천일보. 2020. 8. 19. “양봉 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농지법 악용 꼼수” 주민 반발.”
장강신문. 2016. 1. 16. “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법인 김강민 대표 산업포장 수상.”
충북일보. 2020.6. 10. “음성군,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첫 시행.”
한겨레신문. 2016. 3. 10. “‘부동산 투기꾼’으로 변질된 농업법인들... 농림부는 수수방관.”
한국농어민신문. 2016. 7. 29. “대기업 농업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농어민신문. 2020. 5. 29. “농업법인 특공대.”
한국일보. 2016. 10. 12. “농업법인 보조금 줄줄 샌다.”
KBS. 2020. 6. 22. “불법 싹틔운 특혜 온상...영농법인의 비밀.”

KREI

www.krei.re.kr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How to Advanc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93520
9 791161 494234
ISBN 979-11-6149-423-4